

세계의 영토분쟁 DB와
식민침탈 사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세계의 영토분쟁 DB와 식민침탈 사례

배진수 · 윤지훈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시아 지역은 예로부터 문화와 사상 그리고 문자를 상당 부분 공유하면서도 때로는 서로 역사적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오랜 교류를 통한 선린우호의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문화적 자부심과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앞세우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의 역사를 훼손하고 민족적 자존심까지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역사 갈등 등이 그 예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문제 대응을 위해 2005년 4월 바른역사정립기획단이 설립되었으며, 2006년 9월에 동북아라는 보다 큰 틀에서 인접 국가의 역사침탈과 왜곡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동북아역사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 영토·역사현안에 대하여 종합적, 체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국제적 공신력을 갖는 연구와 정책개발의 싱크탱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깊은 연구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바람직한 정책안을 만들어 내는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립 이후 꾸준히 새로운 연구과제를 발굴함으로써 학계의 연구 폭을 확대하고 연구 성과를 홍보하여 국민들의 역사인식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발간되는 『세계의 영토분쟁 DB와 식민침탈 사례』 연구과제도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중요한 연구결과로서, 우리 재단의 연구역량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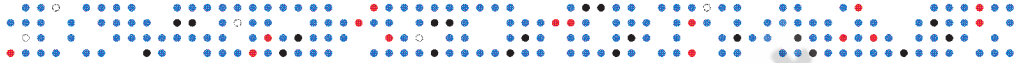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침탈과 왜곡 등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재단 자체의 연구뿐만 아니라 학계의 우수한 연구도 모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가 해를 거듭하여 업적이 쌓이게 되면 이는 영토·역사 갈등의 해소를 넘어 우리 학계의 학문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합니다.

이 업적을 출간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훌륭한 학문적 결실을 내어놓는 여러 연구자들에게 축하와 함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북아역사재단은 영유권 공고화를 위해 영토 및 역사 왜곡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동북아 영토·영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학계의 귀중한 학문적 역량이 저희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하여 높아지고 알려지기를 바라 마지 않으며, 이 연구결과가 우리의 영유권 공고화를 위해 밑알의 기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8년 3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응덕



I. ICOW 프로젝트 소개


1. ICOW 프로젝트 개괄 _ 016
2. ICOW 데이터 유형 _ 017

II. 연구자료 : ICOW 영토분쟁 DB

1. 영토분쟁 DB 개관 : 유형별 영토분쟁(ICOW Data, 2007 기준) _ 020
2. 분쟁종결 유형 _ 021
3. 평화적 해결 시도 _ 032
4. 무력충돌 _ 050

III. 연구방법 : 식민침탈 영토분쟁 사례 추출

1. 연구개관 _ 054
2. 연구진행 _ 054
3. 연구결과 _ 059



CONTENTS

IV. 연구결과 : 식민침탈 영토분쟁 사례

1. 후벤투드 섬(Isle of Pines) _ 063
2. 산후안 섬(San Juan Islands) _ 076
3. 로스몬세스 섬(Los Monjes Islands) _ 085
4. 친차 섬(Chincha Islands) _ 091
5. 카렐리아와 페차모(Karelia & Petsamo) _ 098
6. 관타나모 만(Guantanamo Bay) _ 102
7. 세인트크루아(St. Croix) 강 _ 111
8. 오리건 지역 분쟁(Oregon Country dispute) _ 120
9.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_ 130
10. 알래스카 경계선(Alaska Boundary) 분쟁 _ 142
11. 산안드레스 섬(San Andres Islands) _ 148
12. 세로팡 섬(Serpent Island/Snake Islands) _ 154

맺음말 _ 164

부 록 _ 167

책머리에

전 세계적으로 국제분쟁 사례를 정리한 데이터뱅크로는 COW Correlates of War, ICB International Crisis Behavior Project, MID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 등 여러 데이터가 있지만, 영토분쟁만 집중적으로 정리해온 데이터뱅크는 폴 헨슬 Paul Hensel 교수가 2000년경부터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시작한 ICOW The Issue Correlates of War 데이터뱅크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데이터뱅크는 영유권분쟁, 해양경계획정 분쟁, 강분쟁 등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1816년 이래 또는 1900년 이래 발생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전 세계의 영토분쟁 관련 사항들을 북·중남미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대륙별로 DB를 구축해 나가는 중이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영토분쟁 DB는 2008년 현재 아직 구축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뱅크는 전 세계 국가들의 식민지역사 Colonial History Data 관련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서에서는 독도의 경우처럼 식민침탈로 초래된 세계의 영토분쟁 사례들을 추출해내는 작업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주로 활용한 데이터는 2007년 말 현재 데이터 구축이 완료된 서유럽 및 북·중남미 대륙의 영유권분쟁 188건, 서유럽·아메리카·중동 지역의 해양경계획정 분쟁 143건, 유럽·아메리카 지역의 강분쟁 82

건 등 총 413건의 영토분쟁 사례뿐만 아니라 별도의 전 세계 식민지 역사 데이터까지 망라한 것으로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소개하는 내용이다.

이 데이터뱅크 덕분에 본서에서는 그동안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았던 식민침탈과 관련된 세계의 영토분쟁 사례, 즉 도서 영유권분쟁 6건을 포함한 총 12건을 추출해낼 수 있었으며, 독도와 관련된 새로운 시사점을 파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테면 식민침탈 과정에서 비롯된 영토분쟁과 관련하여 당시 식민국가가 피식민국가의 영토를 되돌려준 몇 가지 바람직한 사례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 사례들은 일본의 독도 침탈사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본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듯이 중남미지역의 ‘후벤투드 섬’ 영유권분쟁과 관련하여 1900년대 초 미국은 쿠바의 영유권을 인정해주면서 분쟁 대상 섬을 쿠바에게 되돌려준 사례가 있고, 1872년에는 영국과 미국 간의 ‘산후안 섬’ 도서 영유권 분쟁 시 제3자인 독일 빌헬름 1세의 중재로 영국이 미국의 도서 영유권을 단순히 인정하면서 영국 군대까지 철수함으로써 영유권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 사례도 있다. 그리고 분쟁이 종결된 세계의 영토분쟁 318건의 분쟁종결 유형 중 ‘도전국의 포기’ 유형이 71건으로서 두 번째로 많다는 점은 우리의 영유권 공고화 차원에서 도전국의 포기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을 밝혀내는 데 아주 유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식민지배의 외교권 박탈 상태에서 영유권이 부당하게 침탈당하였다고 주장되는 니카라과 - 콜롬비아 간 ‘산안드레스 섬’ 영유권 분쟁 및 루마니아 - 우크라이나 간 ‘세르팍 섬’ 영유권분쟁 사례는 2008년 현재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계류 중이어서 그 결과가 매우 주목되는 도서

영유권 분쟁 사례들이기도 하다.

본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몇 가지 개념적인 사항부터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토(領土) territory’와 ‘국경(國境) boundary or border’은 개념상 약간 다른데, 통상 ‘영토’는 어느 특정국의 주권과 관할권이 행사되는 지역을 뜻하며, ‘국경’은 영토 개념의 일부로서 영토의 외곽경계지역만 의미한다. 그리고 ‘국경’과 ‘변경(邊境) frontier’도 엄밀한 의미에서 구별이 되는데, ‘국경’은 선(線)·1차원적·인공적·정치적·법적 개념인 반면 ‘변경’은 면적·2차원적·자연적·지리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영토분쟁(領土紛爭)’은 크게 ‘영유권분쟁(領有權紛爭) territorial dispute’과 ‘국경분쟁(國境紛爭) boundary or border dispute’으로 구분한다. ‘영유권분쟁’은 영토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정치적 결정을 둘러싼 분쟁을 말하며, ‘국경분쟁’은 이미 정치적으로 결정된 국경지역의 경계선 획정을 둘러싼 분쟁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본토를 둘러싼 ‘본토 homeland territory 분쟁’과 식민영토를 둘러싼 ‘식민영토 colonial territory 분쟁’, 또는 분쟁 당사국 정부의 개입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양국 정부가 직접 개입한 ‘공식적 분쟁’과 스웨덴-핀란드 간 Aaland 도서분쟁과 같이 양국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해당 도서주민이 영유권문제를 제기하는 ‘비공식적 분쟁’ 등의 유형이 있다.

사례 기준으로 할 때 지금까지 국제사법재판소 ICJ를 통해 해결된 영유권분쟁은 10여 건 이상이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세계 영토분쟁도 약 60~70건 정도로 추정되고,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아메리카-아시아-유럽-중동 등이다. 특히 한반도가 속한 아시아 지역 분쟁의 대부분

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인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주로 발생했으며, 그 근원 또한 주로 식민지배와 전후처리에 관련된 영토분쟁들이므로 나타난다. 이들 아시아 지역에 산재해 있는 20여 건의 영토 관련 분쟁 중 3분의 1 이상은 해양경계선 및 해양도서 영유권분쟁이라는 특징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독도분쟁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양영토분쟁에는 ‘도서 영유권분쟁’ 과 ‘해양경계획정 분쟁’ 이 있다. 일반적으로 해양경계획정에는 영해,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경계선이 포함되나 엄밀한 의미에서 영해의 경계선을 제외한 나머지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 등은 영토분쟁이라기보다는 관할권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의 해양경계획정 분쟁은 1940년 이래 1990년대 초반까지 총 137건이 해결된 상태이지만, 아직 이보다 더 많은 건수가 해결되지 않은 실정이다. 해양경계획정 분쟁 중 적어도 10여 건 이상이 국제재판소나 중재기관에 회부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 이래 매년 4~5건 정도씩은 해결되는 추세이다. 한편 지금까지 발생했거나 진행 중인 세계 도서 영유권분쟁 사례는 대략 30여 개 지역으로 집계되며, 도서 수로는 남사군도·서사군도의 수십여 개 도서를 제외하더라도 총 7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영토 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된 주요 근원은 역사적으로 세계 국가의 영토가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식민지배 또는 전후(戰後)처리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역사적으로 1816년 이래 1980년까지 이루어진 영토 변경 사례만 해도 총 770건에 달하며, 이 중 거의 3분의 1은 무력충돌을 수반한 경우였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영토가 변경된 세 시기는 식민지배 과정인 1888년 베를린회의 때와 전후처리 과정인 제1차 및 제2차 세

계대전 직후 시기이다. 그리고 이 중 영토 변경 총면적이 두드러진 시기는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 후이고, 국가 간 영유권 이전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1888년과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이다. 요컨대 1888년과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영토처리 과정은 영토분쟁의 역사적 배경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영유권 개념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영토분쟁과 역사문제는 어느 정도 서로 맞물려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영유권 개념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오늘날의 영토주권 개념으로 발전한 시기는 14세기 유럽이 등장하면서부터였으며, 이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래 영토주권의 개념은 국제법적 테두리 내에서 고유영토의 개념으로 보호받기에 이르렀다. 즉, 이때까지 영유권 개념은 역사적 권원 및 고유영토를 강조했으며, 여기에 새로운 개념이 추가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17세기 말과 18세기 초에 등장한 자연법 철학의 영향을 받은 '자연국경'의 개념이었다. 바로 이 개념으로 인해 산맥, 하천 등 자연적 지리여건이 영토주권으로 연계되기 시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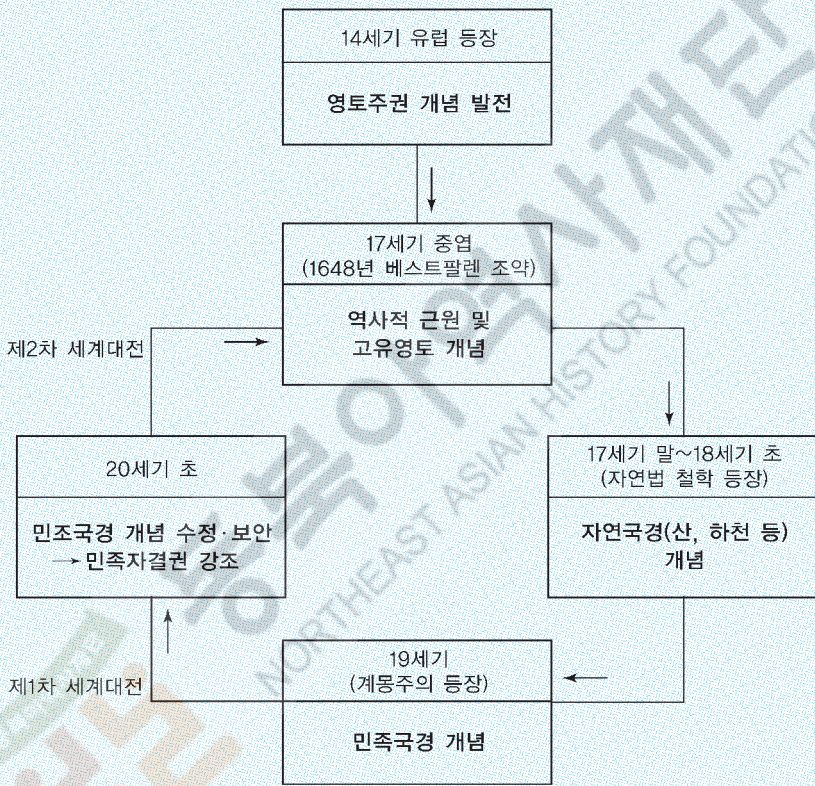
그러나 19세기 계몽주의의 등장과 발로로 인해 그동안 영유권 개념의 골간을 이루어온 역사적 권원 및 자연국경의 요소는 민족이라는 요소로 대체되기 시작하여 민족국경의 개념으로 일대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즉, 영유권과 영토주권은 민족구성원에 기초하여 동일 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은 같은 영토주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민족국경의 개념이 제1차 세계대전을 초래한 것이라는 비판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의 자결권을 존중하는 경향으로 다소 수정이 되었다.

하지만 민족자결권을 빌미로 한 부작용이 심해 마침내 히틀러의 제2차 세계대전이 야기되었고, 그 이후로는 민족국경의 개념 대신 역사적 권원 및 고유영토 요소를 보다 강조하는 영유권 개념으로 다시 환원되어 왔다. 민족국경이 강조되던 시기에 제국주의 열강들은 영토를 침탈한 후 자국민을 새로운 영토에 이주시키는 작업부터 했는데, 그 이후 민족국경의 개념이 약화되고 다시 고유영토 개념이 강조되면서 ‘땅 따로 민족 따로’ 현상이 보편화되었다. 이때 생겨난 새로운 유형의 영토분쟁이 바로 20세기에 빈번하게 발발하고 있는 ‘분리·독립 분쟁’이며, 이로써 세계의 영토분쟁은 더욱 복잡한 양상이 되었다.

2008년 3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저자 배진수



〈영유권 개념의 변천 과정〉

I

ICOW 프로젝트 소개





1. ICOW 프로젝트 개괄¹⁾

ICOW The Issue Correlates of War 프로젝트는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Florida State University의 정치학부 폴 헨슬 Paul Hensel 교수가 진행하는 세계 영토분쟁 리서치 프로젝트로서, 1997년 봄 미국국제정치학회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연례학술대회의 논문 발표를 계기로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ICOW 프로젝트는 과거에 발생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전 세계 영토분쟁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는데, 영토분쟁 DB는 영유권분쟁, 해양경계획정 분쟁, 강분쟁 등 세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데이터 수집의 범위는 영유권분쟁의 경우 1816~2001년, 해양경계획정 분쟁과 강분쟁의 경우 1900~2001년까지 발생한 모든 분쟁 데이터 자료를 포함한다. 지리적으로는 아메리카Americas,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오세아니아 5개 지역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영토분쟁 DB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ICOW 데이터뱅크는 데이터 분석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영토분쟁 데이터 자료 외에 세계 국가들의 명칭 변경 데이터, 평화적 해결의 다자조약 데이터 및 식민지역사 데이터 등 여러 가지 보완적인 데이터 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1 <http://garnet.acns.fsu.edu/~phensel/icow.html>

이 중에서도 특히 ‘세계 국가들의 식민지역사 데이터’는 독도문제의 식민침탈사를 감안할 때 우리에게는 아주 유용한 자료이다.

2. ICOW 데이터 유형

1) 영토분쟁 데이터

1999년부터 시작된 ICOW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07년 6월 4일에 자료가 추가된 바 있다.

2007년 말 현재 영유권분쟁은 아메리카와 서유럽의 영토 분쟁 데이터 구축이 완료된 상태이며, 해양경계획정 분쟁은 아메리카·서유럽·중동 지역, 강분쟁은 아메리카와 전 유럽 지역의 데이터뱅크 구축이 완료된 상태이다. 데이터뱅크의 분쟁 사례 수는 총 413건으로서 188건의 영유권분쟁과 143건의 해양경계획정 분쟁 및 82건의 강분쟁이 망라되어 있다.

데이터에는 각 영토분쟁 사례별로 분쟁의 발생일과 종결일 및 점유국과 도전국 같은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분쟁해결 유형, 무력충돌 여부, 평화적 해결시도의 여부와 유형 및 횟수, 분쟁지역의 중요도 등과 같은 38개 내외의 세부적인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2) 세계 국가 명칭 변경 데이터

본 데이터는 지난 200년 동안 각 국가가 사용한 모든 국가명에 관한 자료로서 기존의 국가명 표기, 또 다른 방식의 철자법, 외래 철자법, 그리고 식민지 기간의 국가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간혹 오래된 사료에서 지금은 사용

하지 않는 국가명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영토분쟁 분석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집되었다. 그 결과 연구자들은 ‘뉴 그라나다 New Granada’ 라는 국가명이 오늘날의 ‘콜롬비아’ 라는 것을 이 데이터뱅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 평화적 해결의 다자조약 데이터

이 데이터 자료는 지역기구 또는 국제기구 회원 국가들이 서명하고 비준한 조약들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연합 UN, 국제사법재판소 ICJ 등과 같은 기관에서부터 1920~1930년대의 비교적 애매한 남아메리카 조약까지 다양한 조약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 자료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 지역기구 또는 국제기구가 분쟁 당사국의 해결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 조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30개 이상의 지역기구 또는 국제기구의 조약이 망라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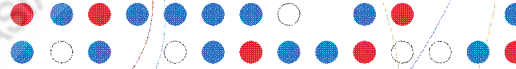
4) 세계 국가의 식민지역사 데이터

이 데이터는 지난 200년 동안 전 세계 국가의 식민지역사 또는 이와 유사한 경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식민국가와 피식민국가, 식민기간, 무력분쟁 여부, 식민종식 유형 등과 같은 세부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데이터는 본서에서 독도의 경우처럼 식민침탈사에서 초래된 세계의 유사 영토분쟁 사례들을 추출해내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II

연구자료 :

ICOW 영토분쟁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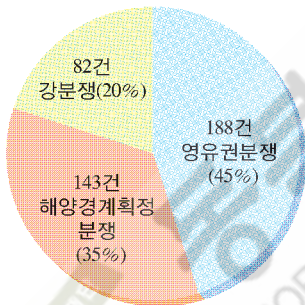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영토분쟁 DB 개관 : 유형별 영토분쟁 (ICOW Data, 2007년 기준)

〈표 2.1〉 유형별 영토분쟁 사례 수

| 분쟁 유형 | 영유권분쟁 | 해양경계획정 분쟁 | 강분쟁 |
|------------------|-------|-----------|-----|
| 사례 수 (총 413건) | 188 | 143 | 82 |



〈그림 2.1〉 유형별 영토분쟁 사례 수(ICOW Data, 2007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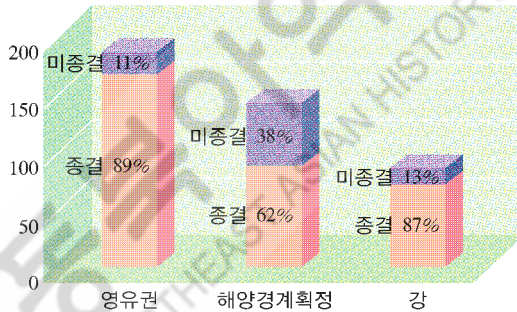
2007년 말 현재 총 413건의 분쟁 사례가 조사되었으며, 이 중 영유권분쟁은 188건, 해양경계획정 분쟁은 143건, 강분쟁은 82건으로 나타나고 있다.²⁾ 데이터 조사 수집 범위는 영유권분쟁의 경우 1816~2001년, 해양경계획정 분쟁과 강분쟁의 경우 1900~2001년까지의 사례가 적용되었다.

2. 분쟁종결 유형

1) 영토분쟁의 종결 여부 현황

2007년 기준 현재 ICOW 영토분쟁 사례 413건 중 318건은 어떤 식으로든 종결된 상태인 반면, 86건의 영토분쟁은 아직도 미해결된 상태이며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된다.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형별로는 해양경계획정 분쟁의 경우 미해결된 사례가 38%로 가장 많으며, 다른 유형인 영유권분쟁과 강분쟁은



〈그림 2.2〉 유형별 영토분쟁의 종결 / 미종결 현황

- ICOW 영토분쟁 데이터 413개의 분쟁 사례가 각기 다른 영토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핀란드 사이의 영유권분쟁인 Karelia & Petsamo의 경우 본 데이터에는 하나가 아닌 5개의 분쟁으로 분석되어 있다. 장기간에 걸쳐 하나의 영토분쟁에 대해 도전국과 점유국이 바뀌거나 잠정적으로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 각기 다른 하나의 분쟁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미해결된 사례가 10% 내외에 불과하여 각각 거의 90% 정도는 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영토분쟁 유형별로 현재 분쟁이 진행 중인 사례는 <표 2.2>와 같다.

<표 2.2> 유형별 영토분쟁의 미종결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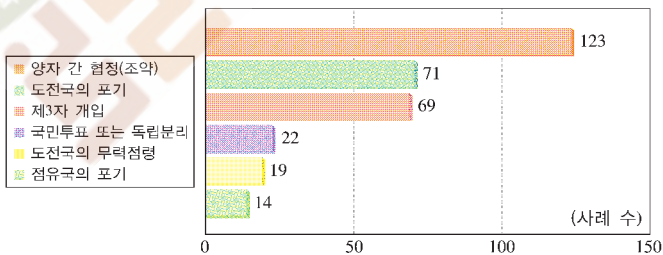
| 영토분쟁 유형 | 종결 | 미종결 | 진행 중인 분쟁 사례 |
|---------|------|--------------------|---|
| 영유권 | 168건 | 20건 서유럽 아메리카 | Machias Seal Island Hans Island Guantanamo Bay Navassa Island Quita Sueno-Roncador-Serrana San Andres y Providencia Belize Ranguana & Sapodilla (* 총 3회) Conejo Island Cayo Sur-Media Luna Los Monjes Essequibo Corentyn/New River Triangle Maroni Yaguaron Antofagasta Falkland Is. & Dependencies Gibraltar |
| 강 | 71건 | 11건 유럽 아메리카 | Garrison Diversion Devil's Lake Diversion Tulsequah Chief Mine San Juan Navigation Silala Fees (Ductec) Absolute Sovereignty Birecik Dam (* 총 2회) Iraqi Allocation Ilisu Dam Syrian Dam Plan |

| 영토분쟁 유형 | 종결 | 미종결 | 진행 중인 분쟁 사례 |
|------------|-----|--------------------------|--|
| 해양경계 획정 | 88건 | 55건 서유럽 아메리카 중동 | Juan de Fuca Strait Dixon Entrance Northwest Passage Beaufort Sea Machias Seal Island Bering Sea St. Pierre & Miquelon Canada-Denmark Northwest Atlantic US-Bahamas Lobster Navassa Island Cuba-Bahamas Fishing Aves Island (* 총 4회) Gulf of Fonseca (* 총 2회) Honduras-Nicaragua Caribbean Sea Sapodilla (Zapatillo) Cays (* 총 2회) Salvadoran Pacific Claims (* 총 2회) US-Nicaragua Fishing San Andres and Providencia Serranilla Bank & Bajo Nuevo Ecuadorian Pacific Claims (* 총 2회) Peruvian Pacific Claims(* 총 3회) Gulf of Paria Essequibo Gulf of Venezuela Courantyne Rio de la Plata (* 총 2회) Falklands Antarctica (* 총 2회) Bay of Biscay Irish Box Iceland-Norway Fishing Portugal Coast Aegean Sea Baltic Sea Black Sea (* 총 2회) Barents Sea |

| 영토분쟁 유형 | 종결 | 미종결 | 진행 중인 분쟁 사례 |
|---------|----|-----|---|
| | | | Bosphorus and Dardanelles Caspian Sea (* 총 4회) Piran Bay Port of Ploce |

2) 영토분쟁 종결 유형

영토분쟁의 종결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총 413건의 영토분쟁 사례 중 분쟁이 종결된 318건을 대상으로 양자 간 협정조약, 도전국의 포기, 도전국의 무력점령, 점유국의 포기, 제3자 개입, 분쟁지역의 국민투표 또는 분리독립 등 크게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상 여섯 가지 종결 유형별 분포를 나타내는 <그림 2.3>에 따르면, 영토분쟁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종결 유형은 ‘양자 간 협정조약’으로서 123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으로는 ‘도전국의 포기’ 71건, ‘제3자 개입’ 69건, ‘국민투표 또는 분리독립’ 22건, ‘도전국의 무력점령’ 19건, ‘점유국의 포기’가 14건 등으로 나타난다.



<그림 2.3> 영토분쟁의 종결 유형 분포

분석결과 중 도전국의 포기 분쟁이 종결된 경우가 양자협정에 따른 종결 사례 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는 사실이 눈길을 끄는데, 이는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도전하고 있는 일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독도 영유권 공고화 차원에서 도전국의 포기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을 밝혀내는 데 아주 유용한 사례들이라고 생각된다.

(1) 도전국의 포기 사례 : 71건

〈표 2.3〉은 도전국의 포기 분쟁이 종결된 사례와 이에 대한 군사충돌 여부를 보여준다.

〈표 2.3〉 도전국의 포기 분쟁 사례

| 사례명 | 도전국 | 대상국 | 군사충돌 |
|------------------------------|------|----------|------|
| Baja California & Sonora | 미국 | 멕시코 | 0 |
| Mole St. Nicholas | 미국 | 아이티 | 1 |
| Samana Bay | 미국 | 도미니카 공화국 | 0 |
| Quita Sueno-Roncador-Serrana | 니카라과 | 미국 | 0 |
| Quita Sueno-Roncador-Serrana | 온두라스 | 미국 | 0 |
| Quita Sueno-Roncador-Serrana | 온두라스 | 콜롬비아 | 0 |
| Los Roques | 네덜란드 | 베네수엘라 | 0 |
| Chincha Islands | 스페인 | 페루 | 2 |
| Limburg & Zeeland Flanders | 벨기에 | 네덜란드 | 0 |
| Belgium | 프랑스 | 벨기에 | 0 |
| Prussian Rheinprovinz | 프랑스 | 독일 | 1 |
| Bavarian Palatinate | 프랑스 | 바바리아 | 0 |

| 사례명 | 도전국 | 대상국 | 군사충돌 |
|----------------------------------|--------|-----------|------|
| Rheinessen | 프랑스 | 헤센 그랜드 듀칼 | 0 |
| Savoy & Nice | 이탈리아 | 프랑스 | 0 |
| Upper Savoy (Haute Savoie) | 스위스 | 프랑스 | 0 |
| Corsica | 이탈리아 | 프랑스 | 0 |
| Badenese Corridor | 바바리아 | 바덴 | 0 |
| Germersheim Frontage | 바바리아 | 바덴 | 0 |
| Badenese Corridor | 바바리아 | 바덴 | 0 |
| Leipzig-Bautzen | 독일 | 색스니 | 0 |
| Hohenzollern | 뷔르템베르크 | 독일 | 0 |
| Finnmark/ Varangerfjord | 러시아 | 스웨덴 | 0 |
| Spitsbergen(Svalbard) | 러시아 | 노르웨이 | 0 |
| Aaland Islands | 스웨덴 | 러시아 | 0 |
| Finland | 스웨덴 | 러시아 | 0 |
| Karelia & Petsamo | 핀란드 | 러시아 | 1 |
| Rafferty-Alameda Dam | 캐나다 | 미국 | 0 |
| Alamo Canal | 멕시코 | 미국 | 0 |
| Segredo Reservoir | 아르헨티나 | 브라질 | 0 |
| Mauri Diversion | 볼리비아 | 칠레 | 0 |
| Lauca Diversion | 볼리비아 | 칠레 | 1 |
| Scheldt/Wielengen Sovereignty | 벨기에 | 네덜란드 | 0 |
| Lake Huleh Diversion | 요르단 | 이스라엘 | 0 |
| DMZ Diversion | 시리아 | 이스라엘 | 1 |
| National Water Carrier | 레바논 | 이스라엘 | 0 |
| National Water Carrier | 시리아 | 이스라엘 | 0 |
| National Water Carrier | 요르단 | 이스라엘 | 0 |
| Sewage Dumping | 요르단 | 이스라엘 | 0 |
| West Bank Allocation | 요르단 | 이스라엘 | 0 |

| 사례명 | 도전국 | 대상국 | 군사충돌 |
|-------------------------------|------|-------|------|
| Wazzani Pipe | 이스라엘 | 레바논 | 0 |
| Unity Dam | 이스라엘 | 시리아 | 0 |
| Unity Dam | 이스라엘 | 요르단 | 0 |
| Golan Heights Dam | 요르단 | 이스라엘 | 0 |
| Keban Dam | 시리아 | 터키 | 0 |
| Lake Assad | 시리아 | 터키 | 0 |
| Ataturk Dam | 시리아 | 터키 | 0 |
| Ataturk Dam | 이라크 | 터키 | 0 |
| Thalweg & Navigation | 이란 | 이라크 | 1 |
| Mid-Atlantic Coast | 러시아 | 미국 | 1 |
| US-USSR Pacific Coast | 러시아 | 미국 | 0 |
| Canada-Japan Pacific Coast | 캐나다 | 일본 | 0 |
| Mexico-Guatemala Fishing | 멕시코 | 과테말라 | 1 |
| Panama Canal Zone Outlets | 미국 | 파나마 | 1 |
| Cod War (4.8~6.4km) | 프랑스 | 아이슬란드 | 0 |
| Cod War (19.3km) | 네덜란드 | 아이슬란드 | 0 |
| Cod War (19.3km) | 벨기에 | 아이슬란드 | 0 |
| Cod War (19.3km) | 프랑스 | 아이슬란드 | 0 |
| Cod War (19.3km) | 스페인 | 아이슬란드 | 0 |
| Cod War (19.3km) | 구서독 | 아이슬란드 | 0 |
| Cod War (19.3km) | 덴마크 | 아이슬란드 | 0 |
| Cod War (80.4km) | 구서독 | 아이슬란드 | 0 |
| Cod War (321.8km) | 영국 | 아이슬란드 | 1 |
| EEC Fisheries | 스페인 | 영국 | 0 |
| Baltic Sea | 덴마크 | 러시아 | 0 |
| Oregon Country | 스페인 | 영국 | 0 |
| Alaska | 러시아 | 영국 | 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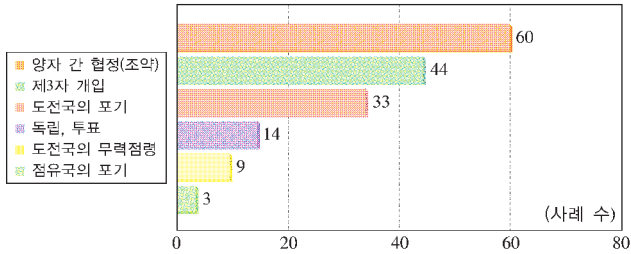
| 사례명 | 도전국 | 대상국 | 군사충돌 |
|------------------------|----------|------|------|
| Wrangel Island | 캐나다 | 미국 | 0 |
| Wrangel Island | 캐나다 | 러시아 | 0 |
| Morteritos & Sabinitos | 세인트키츠네비스 | 미국 | 0 |
| Galapagos Islands | 미국 | 에콰도르 | 0 |
| Galapagos Islands | 미국 | 에콰도르 | 0 |

※ 주 : 바바리아, 헤센, 그렌드 듀칼, 바덴, 색스니, 뷔르템베르크 등은 독일의 연방 주이거나 1945년까지 존재했던 당시 유럽 지역의 주(州)들임

도전국의 포기로 분쟁이 종결된 경우는 양국 간 군사충돌이 발생한 경우가 매우 드물며, 설사 군사충돌이 있었다 하더라도 친차 섬 Chincha Island dispute 분쟁만 2회 발생했을 뿐 나머지 사례는 모두 한 차례 정도에 불과하였다.

(2) 영유권분쟁의 종결 유형

영토분쟁 데이터뱅크의 세 유형 중 영유권분쟁의 종결 유형만 따로 구분하여 분석한 <그림 2.4>의 경우도 영토분쟁의 종결 유형과 마찬가지로 양자간 협정 조약, 제3자 개입, 도전국 포기가 각각 60건, 44건, 33건으로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종결 유형으로 나타났다. <표 2.4>는 영토분쟁의 종결 유형별로 대표적인 몇 가지 영유권분쟁 사례를 예시하고 있다.



〈그림 2.4〉 영유권분쟁의 종결 유형 분포

〈표 2.4〉 분쟁종결 유형에 따른 대표적 영유권분쟁 사례

| 종결 유형 | 사례 수 | 주요 사례명(도전국 - 점유국) |
|--------------|------|--|
| 양자 간 협정 (조약) | 60건 | Alaska(미국 - 러시아) Oregon Country(미국 - 영국) Isle of Pines(미국 - 쿠바) San Andres(니카라과 - 콜롬비아) Swan Island(온두라스 - 미국) |
| 제3자 개입 | 44건 | San Juan Islands(미국 - 영국) Goajira(베네수엘라 - 콜롬비아) Beagle Channel(아르헨티나 - 칠레) Aland Islands(스웨덴 - 핀란드) |
| 도전국의 포기 | 33건 | Mole St. Nicholas(미국 - 아이티) Corsica(이탈리아 - 프랑스) Los Roques(네덜란드 - 베네수엘라) Galapagos Islands(미국 - 에콰도르) |
| 독립 및 투표 | 14건 | Belize(과테말라 - 영국) Essequibo(베네수엘라 - 영국) Maroni(네덜란드 - 프랑스) Modena(이탈리아 - 모데나) |
| 도전국의 무력점령 | 9건 | Oriente-Mainas(에콰도르 - 페루) Antofagasta(칠레 - 볼리비아) Saar(프랑스 - 독일) |
| 점유국의 포기 | 3건 | Mosquito Coast(콜롬비아 - 영국) Fort Ross(멕시코 - 러시아) Ellesmere Island(캐나다 - 미국) |

3) 분쟁지역 중요도와 분쟁종결

세계의 유사 분쟁 사례를 참고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각각의 분쟁이 처한 여건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ICOW 영토분쟁 DB는 각 사례별로 ‘분쟁지역의 중요도’를 측정했는데, 여기서는 영토분쟁 지역의 중요도와 이에 대한 분쟁종결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 분쟁 사례의 진행기간 중 분쟁지역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던 경우의 지표를 0~12로 책정한 후, 낮음(0~4), 보통(4.5~7.5), 높음(8~12)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해보았다.

분쟁지역의 중요도는 양자 간 분쟁이 진행 중인 동안 유형 tangible의 중요도 및 무형 intangible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의 지표를 합산하여 측정하는데, ‘유형의 중요도’ 및 ‘무형의 중요도’ 측정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다.

‘유형의 중요도’ 측정은 영유권분쟁의 경우 분쟁이 일어난 곳의 경제적 자원과 전략적 위치 및 인구, 강분쟁의 경우 항행과 관개 및 수력발전, 해양경계확정 분쟁의 경우 전략적 위치와 조업자원 및 원유자원 등 각각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양 국가가 그 분쟁지역을 획득함으로써 얻는 이득으로 계산한다.

‘무형의 중요도’ 측정은 영유권분쟁의 경우 분쟁이 일어난 지역의 본토 또는 부속지 여부와 소속감 여부 및 역사적 권원 등 세 가지 요소로, 그리고 강분쟁과 해양경계확정 분쟁의 경우는 본토 또는 부속지 여부만으로 계산한다.

(1) 분쟁지역 중요도 vs. 분쟁종결 유형

분쟁지역의 중요도에 따른 분쟁종결 유형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기존 6개 종결유형 방식을 좀 더 세분화해보았다. 첫째, ‘도전국의 포기’를

〈표 2.5〉 분쟁지역 중요도에 따른 종결 유형

| 종결 유형 | 중요도 | 높음 (107건) | 보통 (129건) | 낮음 (84건) |
|--------------|-----|--------------|--------------|-------------|
| 도전국의 단순포기 | | 21 | 22 | 21 |
| 도전국 정부의 공식포기 | | 0 | 3 | 4 |
| 제3자 개입 | | 29 | 25 | 15 |
| 양자 간 협정 | | 39 | 60 | 24 |
| 분쟁지역의 독립 | | 3 | 10 | 5 |
| 군사적 점유 | | 9 | 2 | 8 |
| 점유국의 단순포기 | | 1 | 5 | 7 |
| 점유국 정부의 공식포기 | | 1 | 0 | 0 |
| 분쟁지역 국민투표 | | 4 | 2 | 0 |

‘도전국의 단순포기’와 ‘도전국 정부의 공식포기’로 구분하고, ‘점유국의 포기’ 유형도 ‘점유국의 단순포기’와 ‘점유국 정부의 공식포기’로 구분하였다. 또한 기존의 ‘독립 및 투표’ 종결 유형을 ‘분쟁지역의 독립’ 종결과 ‘분쟁지역 국민투표’에 따른 종결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분쟁지역의 중요도와 그에 따른 분쟁종결 유형을 분석한 〈표 2.5〉를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함의를 알 수 있다.

첫째, 도전국 정부의 공식 포기선언으로 분쟁이 종결된 경우, 분쟁지역의 중요도가 높은 사례 중에 도전국이 포기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으며, 중요도가 낮을수록 해당 사례 수가 증가하는 패턴을 볼 수 있다. 이는 분쟁지역의 중요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도전국이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포기할 확률이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둘째, 제3자 개입으로 인한 분쟁종결의 경우를 살펴보면, 분쟁지역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제3자 개입으로 분쟁이 종결되는 사례가 많다. 이는 분쟁지역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분쟁지역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는 양자 간에

해결이 어려워지자 제3자 개입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분쟁지역에 대한 점유국의 단순포기로 종결된 경우를 살펴보면, 역시 분쟁지역의 중요도가 높은 경우에는 점유국이 단순포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반면, 분쟁지역의 중요도가 낮을수록 점유국의 단순포기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국민투표로 영유권분쟁이 종결된 경우를 살펴보면 분쟁지역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국민투표로 종결된 사례가 더 많다. 양국 정부의 이득이 달린 영토문제를 분쟁지역 주민의 국민투표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국제정치에서 그리 흔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분쟁지역의 중요도가 보통 이상이었던 지역에서는 국민투표로 분쟁을 해결한 사례가 6건 정도 집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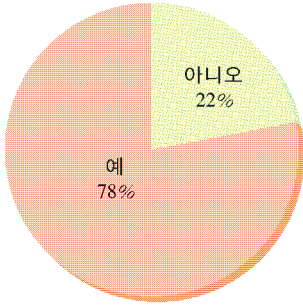
3. 평화적 해결 시도

1) 분쟁해결에 시도된 평화적인 해결 시도

평화적인 해결 시도 방법에는 양자 간 협상 bilateral negotiation, 구속력 없는 non-binding 제3자 개입, 구속력 있는 binding 제3자 개입이 포함된다.

구속력이 없는 제3자 개입 해결 시도에는 특사파견 good offices, 회유 conciliation, 조정 mediation, 다자간 협상 multilateral negotiations, 평화회의 peace conference 등이 포함되며, 구속력 있는 제3자 개입 해결 시도에는 중재 arbitration와 재판 adjudication 등이 포함된다.

<그림 2.5>에 따르면 전체 사례 중 4분의 3인 78% 정도가 평화적 해결 시도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화적 해결 시도가 없었던 분쟁 사례는 22%에 불과하였다. 또한 <표 2.6>에서처럼 1~57회까지 다양하게



〈그림 2.5〉 영토분쟁 사례의 평화적 해결 시도 여부

〈표 2.6〉 평화적 해결 시도에 따른 분쟁 사례 수

| 시도 | 사례 | 시도 | 사례 |
|----|----|-------|----|
| 0 | 92 | 13 | 4 |
| 1 | 77 | 15 | 3 |
| 2 | 73 | 16 | 3 |
| 3 | 29 | 17 | 1 |
| 4 | 25 | 18 | 2 |
| 5 | 20 | 19 | 2 |
| 6 | 19 | 20~22 | 1 |
| 7 | 11 | 29 | 1 |
| 8 | 9 | 33 | 1 |
| 9 | 8 | 35 | 1 |
| 10 | 6 | 37 | 1 |
| 11 | 7 | 55 | 1 |
| 12 | 13 | 57 | 1 |

시도된 평화적 해결의 평균 시도 횟수는 4.07회로 나타났다. 〈표 2.7〉은 영유권분쟁 사례 188건에 대한 평화적 시도 횟수와 군사충돌 횟수, 그리고 이에 대한 종결 유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평화적 해결 시도 횟수에 따른 분쟁 종결 유형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차례의 평화적 해결시도를 거쳐 마침내 분쟁해결에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는 성공요인이 무엇인지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수차례의 평화적 해결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해결 상태로 진행 중인 사례에 대해서는 분쟁해결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과연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심층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2.7〉 영유권분쟁 사례의 평화적 해결시도, 군사충돌, 종결 유형

| 영유권분쟁 사례 | 점유국 | 평화적 해결 시도 횟수 | 군사충돌 횟수 | 종결 유형 |
|-----------------|------|--------------|---------|-------|
| | 도전국 | | | |
| 49th Parallel | 영국 | 1 | 0 | 양자 간 |
| | 미국 | | | |
| Acre | 브라질 | 10 | 1 | 제3자 |
| | 페루 | | | |
| Acre | 볼리비아 | 12 | 3 | 양자 간 |
| | 페루 | | | |
| Acre | 볼리비아 | 4 | 1 | 양자 간 |
| | 브라질 | | | |
| Aland Islands | 러시아 | 1 | 0 | 도전국 |
| | 스웨덴 | | | |
| Aland Islands | 핀란드 | 6 | 0 | 제3자 |
| | 스웨덴 | | | |
| Alaska | 영국 | 6 | 0 | 도전국 |
| | 러시아 | | | |
| Alaska | 러시아 | 11 | 0 | 양자 간 |
| | 미국 | | | |
| Alaska | 미국 | 20 | 2 | 양자 간 |
| | 영국 | | | |
| Alsace-Lorraine | 프랑스 | 3 | 2 | 군사적 |
| | 독일 | | | |

| 영유권분쟁 사례 | 점유국 | 평화적 해결 시도 횟수 | 군사충돌 횟수 | 종결 유형 |
|--------------------------|-------|--------------|---------|-------|
| | 도전국 | | | |
| Alsace-Lorraine | 독일 | 3 | 1 | 제 3자 |
| | 프랑스 | | | |
| Amapa | 브라질 | 4 | 2 | 제 3자 |
| | 프랑스 | | | |
| Amazonas | 브라질 | 5 | 0 | 양자 간 |
| | 베네수엘라 | | | |
| Amazonas-Caquet | 에콰도르 | 0 | 0 | 제 3자 |
| | 브라질 | | | |
| Antofagasta | 볼리비아 | 15 | 5 | 군사적 |
| | 칠레 | | | |
| Antofagasta | 칠레 | 35 | 2 | 진행 중 |
| | 볼리비아 | | | |
| Apa | 브라질 | 4 | 5 | 양자 간 |
| | 파라과이 | | | |
| Aporis | 콜롬비아 | 7 | 0 | 제 3자 |
| | 브라질 | | | |
| Aves (Bird) Island | 네덜란드 | 2 | 2 | 제 3자 |
| | 베네수엘라 | | | |
| Baarle Enclaves | 벨기에 | 0 | 0 | 시스템 |
| | 네덜란드 | | | |
| Baarle Enclaves | 벨기에 | 6 | 0 | 제 3자 |
| | 네덜란드 | | | |
| Badenese Corridor | 바덴 | 7 | 0 | 도전국 |
| | 바바리아 | | | |
| Badenese Corridor | 바덴 | 0 | 0 | 도전국 |
| | 바바리아 | | | |
| Baja California & Sonora | 멕시코 | 7 | 0 | 도전국 |
| | 미국 | | | |

| 영유권분쟁 사례 | 점유국 | 평화적 해결 시도 횟수 | 군사충돌 횟수 | 종결 유형 |
|-----------------------------|-------|--------------|---------|-----------|
| | 도전국 | | | |
| Bavarian Palatinate (Pfalz) | 바바리아 | 0 | 0 | 도전국 |
| | 프랑스 | | | |
| Beagle Channel | 칠레 | 22 | 19 | 제3자 |
| | 아르헨티나 | | | |
| Belgium | 벨기에 | 0 | 0 | 도전국 |
| | 프랑스 | | | |
| Belize | 영국 | 16 | 3 | 독립/ 투표 |
| | 과테말라 | | | |
| Belize | 벨리즈 | 12 | 5 | 진행 중 |
| | 과테말라 | | | |
| Bolsones | 온두라스 | 18 | 2 | 제3자 |
| | 엘살바도르 | | | |
| California & New Mexico | 멕시코 | 6 | 2 | 양자 간 |
| | 미국 | | | |
| Canal Zone | 미국 | 5 | 0 | 양자 간 |
| | 콜롬비아 | | | |
| Canal Zone | 미국 | 12 | 0 | 양자 간 |
| | 파나마 | | | |
| Cayo Sur - Media Luna | 온두라스 | 0 | 1 | 진행 중 |
| | 니카라과 | | | |
| Chaco Boreal | 파라과이 | 33 | 19 | 양자 간 |
| | 볼리비아 | | | |
| Chaco Central | 파라과이 | 6 | 1 | 제3자 |
| | 아르헨티나 | | | |
| Chiapas | 멕시코 | 5 | 0 | 양자 간 |
| | 과테말라 | | | |
| Chincha Islands | 페루 | 0 | 2 | 도전국 |
| | 스페인 | | | |

| 영유권분쟁 사례 | 점유국 | 평화적 해결 시도 횟수 | 군사충돌 횟수 | 종결 유형 |
|-----------------------------|-------|--------------|---------|---------|
| | 도전국 | | | |
| Clipperton Island | 프랑스 | 2 | 0 | 제3자 |
| | 멕시코 | | | |
| Conejo Island | 온두라스 | 1 | 0 | 진행 중 |
| | 엘살바도르 | | | |
| Cordillera del Condor | 페루 | 10 | 13 | 제3자 |
| | 에콰도르 | | | |
| Cordillera Monte Cristo | 엘살바도르 | 3 | 1 | 양자 간 |
| | 과테말라 | | | |
| Corentyn/New River Triangle | 영국 | 5 | 0 | 독립 / 투표 |
| | 네덜란드 | | | |
| Corentyn/New River Triangle | 가이아나 | 3 | 0 | 독립 / 투표 |
| | 네덜란드 | | | |
| Corentyn/New River Triangle | 가이아나 | 9 | 2 | 진행 중 |
| | 수리남 | | | |
| Corsica | 프랑스 | 1 | 0 | 도전국 |
| | 이탈리아 | | | |
| Cuba | 스페인 | 9 | 1 | 양자 간 |
| | 미국 | | | |
| Eastern Greenland | 덴마크 | 5 | 0 | 제3자 |
| | 노르웨이 | | | |
| Ecrehos & Minquiers | 영국 | 6 | 0 | 제3자 |
| | 프랑스 | | | |
| El Chamizal | 미국 | 9 | 0 | 양자 간 |
| | 멕시코 | | | |
| Ellesmere Island | 미국 | 0 | 0 | 점유국 |
| | 캐나다 | | | |
| Elten & Tudderren | 네덜란드 | 2 | 0 | 양자 간 |
| | 구서독 | | | |

| 영유권분쟁 사례 | 점유국 | 평화적 해결 시도 횟수 | 군사충돌 횟수 | 종결 유형 |
|-----------------------------|-------|--------------|---------|-----------|
| | 도전국 | | | |
| Essequibo | 영국 | 13 | 2 | 제3자 |
| | 베네수엘라 | | | |
| Essequibo | 영국 | 4 | 0 | 독립/ 투표 |
| | 베네수엘라 | | | |
| Essequibo | 가이아나 | 16 | 7 | 진행 중 |
| | 베네수엘라 | | | |
| Eupen & Malmedy | 독일 | 1 | 0 | 제3자 |
| | 벨기에 | | | |
| Eupen & Malmedy | 벨기에 | 4 | 0 | 군사적 |
| | 독일 | | | |
| Falkland Is. & Dependencies | 영국 | 55 | 4 | 진행 중 |
| | 아르헨티나 | | | |
| Finland | 러시아 | 0 | 0 | 도전국 |
| | 스웨덴 | | | |
| Finmark/ Varangerfjord | 스웨덴 | 1 | 0 | 도전국 |
| | 러시아 | | | |
| Florida | 스페인 | 3 | 1 | 양자 간 |
| | 미국 | | | |
| Fort Ross | 러시아 | 7 | 0 | 독립/ 투표 |
| | 스페인 | | | |
| Fort Ross | 러시아 | 2 | 0 | 점유국 |
| | 멕시코 | | | |
| Galapagos Islands | 에콰도르 | 1 | 0 | 도전국 |
| | 미국 | | | |
| Galapagos Islands | 에콰도르 | 4 | 0 | 도전국 |
| | 미국 | | | |
| German Reunification | 구동독 | 3 | 0 | 제3자 |
| | 구서독 | | | |

| 영유권분쟁 사례 | 점유국 | 평화적 해결 시도 횟수 | 군사충돌 횟수 | 종결 유형 |
|-------------------------------|-----------|--------------|---------|-----------|
| | 도전국 | | | |
| Germersheim Frontage | 바덴 | 2 | 0 | 도전국 |
| | 바바리아 | | | |
| Gibraltar | 영국 | 29 | 3 | 진행 중 |
| | 스페인 | | | |
| Goajira | 콜롬비아 | 18 | 1 | 제3자 |
| | 베네수엘라 | | | |
| Graham Island (Ferdinandea) | 영국 | 0 | 0 | 없어짐 |
| | 양시칠리아 | | | |
| Guantanamo Bay | 미국 | 0 | 0 | 진행 중 |
| | 쿠바 | | | |
| Gulf of Fonseca Islands | 온두라스 | 4 | 1 | 제3자 |
| | 엘살바도르 | | | |
| Hans Island | 덴마크 | 1 | 0 | 진행 중 |
| | 캐나다 | | | |
| Heligoland (Helgoland) | 영국 | 4 | 0 | 양자 간 |
| | 독일 | | | |
| Hohenzollern | 독일 | 1 | 0 | 도전국 |
| | 뷔르템베르크 | | | |
| Homburg-Upper Hesse | 헤센 그랜드 듀칼 | 1 | 0 | 양자 간 |
| | 독일 | | | |
| Isla de Pinos (Isle of Pines) | 쿠바 | 0 | 0 | 양자 간 |
| | 미국 | | | |
| Jurad | 콜롬비아 | 1 | 0 | 독립/ 투표 |
| | 미국 | | | |
| Jussy | 이탈리아 | 1 | 0 | 양자 간 |
| | 스위스 | | | |
| Karelia & Petsamo | 러시아 | 3 | 1 | 양자 간 |
| | 핀란드 | | | |

| 영유권분쟁 사례 | 점유국 | 평화적 해결 시도 횟수 | 군사충돌 횟수 | 종결 유형 |
|----------------------------|-------------|--------------|---------|-------|
| | 도전국 | | | |
| Karelia & Petsamo | 핀란드 | 4 | 1 | 제3자 |
| | 러시아 | | | |
| Karelia & Petsamo | 러시아 | 0 | 1 | 도전국 |
| | 핀란드 | | | |
| Karelia & Petsamo | 핀란드 | 3 | 1 | 양자 간 |
| | 러시아 | | | |
| Karelia & Petsamo | 러시아 | 2 | 0 | 제3자 |
| | 핀란드 | | | |
| Kulmbach-Gersfeld-Orb | 바바리아 | 1 | 0 | 양자 간 |
| | 독일 | | | |
| Labrador | 영국 | 2 | 0 | 제3자 |
| | 캐나다 | | | |
| Leipzig-Bautzen | 색스니 | 1 | 0 | 도전국 |
| | 독일 | | | |
| Leticia | 콜롬비아 | 4 | 2 | 제3자 |
| | 페루 | | | |
| Limburg | 벨기에 | 9 | 2 | 제3자 |
| | 네덜란드 | | | |
| Limburg & Zeeland Flanders | 네덜란드 | 4 | 0 | 도전국 |
| | 벨기에 | | | |
| Lombardy-Venetia |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 7 | 3 | 군사적 |
| | 이탈리아 | | | |
| Loreto | 콜롬비아 | 12 | 5 | 양자 간 |
| | 페루 | | | |
| Los Andes | 아르헨티나 | 3 | 1 | 제3자 |
| | 칠레 | | | |
| Los Monjes | 베네수엘라 | 16 | 3 | 진행 중 |
| | 콜롬비아 | | | |

| 영유권분쟁 사례 | 점유국 | 평화적 해결 시도 횟수 | 군사충돌 횟수 | 종결 유형 |
|------------------------|----------|--------------|---------|---------|
| | 도전국 | | | |
| Los Roques | 베네수엘라 | 1 | 0 | 도전국 |
| | 네덜란드 | | | |
| Luxembourg | 벨기에 | 9 | 0 | 제3자 |
| | 네덜란드 | | | |
| Luxembourg | 네덜란드 | 3 | 0 | 제3자 |
| | 프랑스 | | | |
| Machias Seal Island | 캐나다 | 0 | 0 | 진행 중 |
| | 미국 | | | |
| Mangles (Corn) Islands | 니카라과 | 2 | 0 | 양자 간 |
| | 콜롬비아 | | | |
| Mangles (Corn) Islands | 미국 | 2 | 0 | 양자 간 |
| | 니카라과 | | | |
| Maroni | 프랑스 | 6 | 0 | 독립 / 투표 |
| | 네덜란드 | | | |
| Maroni | 프랑스 | 1 | 0 | 진행 중 |
| | 수리남 | | | |
| Mesilla Valley | 멕시코 | 2 | 1 | 양자 간 |
| | 미국 | | | |
| Misiones | 브라질 | 9 | 1 | 제3자 |
| | 아르헨티나 | | | |
| Modena | 모데나 | 0 | 0 | 독립 / 투표 |
| | 이탈리아 | | | |
| Mole St. Nicholas | 아이티 | 5 | 1 | 도전국 |
| | 미국 | | | |
| Morteritos & Sabinos | 미국 | 1 | 0 | 도전국 |
| | 세인트키츠네비스 | | | |
| Mosquito Coast | 영국 | 0 | 0 | 점유국 |
| | 콜롬비아 | | | |

| 영유권분쟁 사례 | 점유국 | 평화적 해결 시도 횟수 | 군사충돌 횟수 | 종결 유형 |
|--------------------------------|-------|--------------|---------|---------|
| | 도전국 | | | |
| Mosquito Coast | 니카라과 | 2 | 0 | 양자 간 |
| | 콜롬비아 | | | |
| Navassa Island | 미국 | 1 | 0 | 시스템 |
| | 아이티 | | | |
| Navassa Island | 미국 | 0 | 0 | 진행 중 |
| | 아이티 | | | |
| Neuchatel | 독일 | 3 | 1 | 제3자 |
| | 스위스 | | | |
| Neutral Moresnet (Altenberg) | 벨기에 | 6 | 0 | 제3자 |
| | 독일 | | | |
| Nicaragua Canal | 니카라과 | 4 | 0 | 양자 간 |
| | 미국 | | | |
| North Schleswig (Nord Slesvig) | 독일 | 1 | 0 | 독립 / 투표 |
| | 덴마크 | | | |
| Northern Ireland | 영국 | 37 | 0 | 제3자 |
| | 아일랜드 | | | |
| Oregon Country | 영국 | 8 | 1 | 양자 간 |
| | 미국 | | | |
| Oregon Country | 스페인 | 2 | 0 | 양자 간 |
| | 미국 | | | |
| Oregon Country | 영국 | 0 | 0 | 도전국 |
| | 스페인 | | | |
| Oriente-Aguarico | 콜롬비아 | 11 | 1 | 양자 간 |
| | 에콰도르 | | | |
| Oriente-Mainas | 페루 | 17 | 16 | 군사적 |
| | 에콰도르 | | | |
| Palena/Continental Glaciers | 아르헨티나 | 10 | 0 | 양자 간 |
| | 칠레 | | | |

| 영유권분쟁 사례 | 점유국 | 평화적 해결 시도 횟수 | 군사충돌 횟수 | 종결 유형 |
|-----------------------------------|--------|--------------|---------|-----------|
| | 도전국 | | | |
| Papal States | 교황령 | 0 | 1 | 군사적 |
| | 이탈리아 | | | |
| Parma | 파르마 | 0 | 0 | 독립/ 투표 |
| | 이탈리아 | | | |
| Passamaquoddy Bay | 영국 | 1 | 0 | 양자 간 |
| | 세인트루시아 | | | |
| Patagonia | 아르헨티나 | 12 | 8 | 제3자 |
| | 칠레 | | | |
| Patos Island | 영국 | 2 | 1 | 양자 간 |
| | 베네수엘라 | | | |
| Pirara | 영국 | 9 | 3 | 제3자 |
| | 브라질 | | | |
| Prussian Rheinprovinz | 독일 | 2 | 1 | 도전국 |
| | 프랑스 | | | |
| Puna de Atacama | 볼리비아 | 11 | 1 | 양자 간 |
| | 아르헨티나 | | | |
| Quita Sueno - Roncador-Serrana | 미국 | 2 | 0 | 양자 간 |
| | 콜롬비아 | | | |
| Quita Sueno - Roncador-Serrana | 미국 | 0 | 0 | 도전국 |
| | 니카라과 | | | |
| Quita Sueno - Roncador-Serrana | 콜롬비아 | 1 | 0 | 양자 간 |
| | 니카라과 | | | |
| Quita Sueno - Roncador-Serrana | 콜롬비아 | 0 | 0 | 진행 중 |
| | 니카라과 | | | |
| Quita Sueno - Roncador-Serrana | 미국 | 0 | 0 | 도전국 |
| | 온두라스 | | | |
| Quita Sueno - Roncador-Serrana | 콜롬비아 | 0 | 0 | 도전국 |
| | 온두라스 | | | |

| 영유권분쟁 사례 | 점유국 | 평화적 해결 시도 횟수 | 군사충돌 횟수 | 종결 유형 |
|----------------------------------|-----------|--------------|---------|---------|
| | 도전국 | | | |
| Ranguana & Sapodilla (Zapotillo) | 영국 | 2 | 0 | 독립 / 투표 |
| | 과테말라 | | | |
| Ranguana & Sapodilla (Zapotillo) | 벨리즈 | 7 | 0 | 진행 중 |
| | 과테말라 | | | |
| Ranguana & Sapodilla (Zapotillo) | 영국 | 0 | 0 | 독립 / 투표 |
| | 온두라스 | | | |
| Ranguana & Sapodilla (Zapotillo) | 벨리즈 | 2 | 0 | 진행 중 |
| | 온두라스 | | | |
| Ranguana & Sapodilla (Zapotillo) | 과테말라 | 0 | 0 | 진행 중 |
| | 온두라스 | | | |
| Rheinessen | 헤센 그랜드 듀칼 | 0 | 0 | 도전국 |
| | 프랑스 | | | |
| Rio de La Plata | 우루과이 | 10 | 3 | 양자 간 |
| | 아르헨티나 | | | |
| Rio Grande Bancos | 미국 | 7 | 0 | 양자 간 |
| | 멕시코 | | | |
| Rio Hondo | 영국 | 5 | 0 | 양자 간 |
| | 멕시코 | | | |
| Rio Massacre | 도미니카 공화국 | 5 | 1 | 시스템 |
| | 아이티 | | | |
| Rio Massacre | 도미니카 공화국 | 1 | 0 | 양자 간 |
| | 아이티 | | | |
| Rio Motagua | 과테말라 | 15 | 2 | 제3자 |
| | 온두라스 | | | |
| Rio Paraguay Islands | 브라질 | 1 | 1 | 양자 간 |
| | 파라과이 | | | |
| Rio Sixaola y Rio Coto | 파나마 | 5 | 1 | 양자 간 |
| | 코스타리카 | | | |

| 영유권분쟁 사례 | 점유국 | 평화적 해결 시도 횟수 | 군사충돌 횟수 | 종결 유형 |
|------------------------------|--------------|--------------|---------|---------|
| | 도전국 | | | |
| Saar (Sarre) | 독일 | 1 | 0 | 군사적 |
| | 프랑스 | | | |
| Saar (Sarre) | 프랑스 | 12 | 0 | 독립 / 투표 |
| | 독일 | | | |
| Saar (Sarre) | 프랑스 | 2 | 0 | 독립 / 투표 |
| | 구서독 | | | |
| Salzburg | 바바리아 | 1 | 0 | 양자 간 |
|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 | | |
| Samana Bay | 도미니카 공화국 | 1 | 0 | 도전국 |
| | 미국 | | | |
| San Andres y Providencia | 콜롬비아 | 2 | 1 | 양자 간 |
| | 니카라과 | | | |
| San Andres y Providencia | 콜롬비아 | 2 | 3 | 진행 중 |
| | 니카라과 | | | |
| San Juan Islands | 영국 | 6 | 0 | 제3자 |
| | 미국 | | | |
| Savoy & Nice | 이탈리아 | 2 | 0 | 양자 간 |
| | 프랑스 | | | |
| Savoy & Nice | 프랑스 | 1 | 0 | 도전국 |
| | 이탈리아 | | | |
| Schleswig-Holstein | 덴마크 | 2 | 1 | 군사적 |
| | 독일 | | | |
| Schleswig-Holstein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 6 | 1 | 양자 간 |
| | 독일 | | | |
| Serranilla Bank & Bajo Nuevo | 콜롬비아 | 2 | 0 | 양자 간 |
| | 온두라스 | | | |
| Spitsbergen (Svalbard) | 노르웨이 | 1 | 0 | 도전국 |
| | 러시아 | | | |

| 영유권분쟁 사례 | 점유국 | 평화적 해결 시도 횟수 | 군사충돌 횟수 | 종결 유형 |
|-----------------------------------|--------------|--------------|---------|-------|
| | 도전국 | | | |
| St. Croix Rivers | 영국 | 5 | 1 | 양자 간 |
| | 미국 | | | |
| Sverdrup Islands | 노르웨이 | 1 | 0 | 양자 간 |
| | 캐나다 | | | |
| Swan Islands | 미국 | 3 | 0 | 양자 간 |
| | 온두라스 | | | |
| Tacna-Arica | 페루 | 3 | 2 | 군사적 |
| | 칠레 | | | |
| Tacna-Arica | 칠레 | 19 | 3 | 제3자 |
| | 페루 | | | |
| Tacna-Arica | 페루 | 4 | 0 | 양자 간 |
| | 볼리비아 | | | |
| Teotecacinte | 온두라스 | 3 | 0 | 제3자 |
| | 니카라과 | | | |
| Teotecacinte | 온두라스 | 12 | 2 | 제3자 |
| | 니카라과 | | | |
| Texas | 스페인 | 3 | 0 | 양자 간 |
| | 미국 | | | |
| Texas | 멕시코 | 7 | 2 | 양자 간 |
| | 미국 | | | |
| Treaty Ports | 영국 | 5 | 0 | 양자 간 |
| | 아일랜드 | | | |
| Trentino-Alto Adige (South Tyrol)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 6 | 1 | 제3자 |
| | 이탈리아 | | | |
| Trindade Island | 영국 | 2 | 1 | 제3자 |
| | 브라질 | | | |
| Tumuc-Humac | 네덜란드 | 2 | 0 | 양자 간 |
| | 브라질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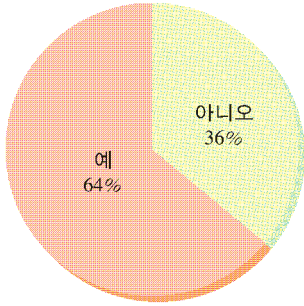
| 영유권분쟁 사례 | 점유국 | 평화적 해결 시도 횟수 | 군사충돌 횟수 | 종결 유형 |
|----------------------------|------|--------------|---------|-------|
| | 도전국 | | | |
| Upper Savoy (Haute Savoie) | 이탈리아 | 0 | 0 | 없어짐 |
| | 스위스 | | | |
| Upper Savoy (Haute Savoie) | 프랑스 | 0 | 0 | 도전국 |
| | 스위스 | | | |
| Val d'Aosta-Briga-Tenda | 이탈리아 | 2 | 0 | 제3자 |
| | 프랑스 | | | |
| Vallee des Dappes | 스위스 | 1 | 0 | 양자 간 |
| | 프랑스 | | | |
| Virgin Islands | 덴마크 | 4 | 0 | 양자 간 |
| | 미국 | | | |
| West Berlin | 미국 | 11 | 4 | 제3자 |
| | 러시아 | | | |
| West Berlin | 독일 | 3 | 2 | 제3자 |
| | 구동독 | | | |
| Wrangel Island | 미국 | 0 | 0 | 도전국 |
| | 캐나다 | | | |
| Wrangel Island | 러시아 | 0 | 0 | 도전국 |
| | 캐나다 | | | |
| Yaguaron | 브라질 | 4 | 0 | 진행 중 |
| | 우루과이 | | | |

* 주: 바바리아, 헤센, 그랜드 듀칸, 바덴, 색스니, 뷔르템베르크 등은 독일의 연방 주이거나 1945년까지 존재했던 당시 유럽 지역의 주(州)들임.

2) 평화적 해결 시도 유형별 현황

(1) 양자 간 협상의 총 시도 수

〈그림 2.6〉에서와 같이 전체 영토분쟁 사례에서 분쟁해결을 위해 한 번이



〈그림 2.6〉 영토분쟁 사례의 양자 간 협상 여부

〈표 2.8〉 양자 간 협상시도 수에 따른 분쟁 사례 수

| 시도 | 사례 | 시도 | 사례 |
|----|-----|-------|----|
| 0 | 149 | 10 | 7 |
| 1 | 81 | 11 | 7 |
| 2 | 53 | 12 | 5 |
| 3 | 27 | 13 | 1 |
| 4 | 18 | 15 | 2 |
| 5 | 23 | 17~19 | 1 |
| 6 | 7 | 27 | 1 |
| 7 | 11 | 28 | 1 |
| 8 | 10 | 34 | 1 |
| 9 | 4 | 35 |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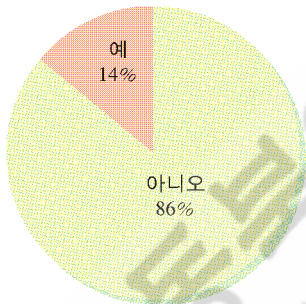
라도 양자 간 협상이 시도된 경우는 64%인 반면, 나머지 36%는 양자 간 협상이 단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2.8〉에 따르면 양자 간 협상이 시도된 경우의 평균 시도 횟수는 2.79회로 나타났다.

(2) 제3자에 의한 해결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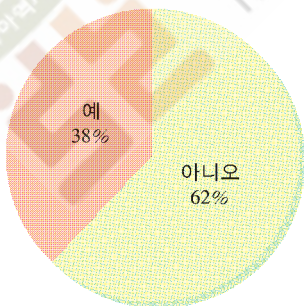
제3자 개입은 앞서 언급했듯이 재판 등 ‘구속력 있는 제3자 개입’ 유형과

회유, 조정 등 ‘구속력 없는 제3자 개입’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림 2.7〉과 〈그림 2.8〉에 따르면 구속력 있는 제3자가 해결을 시도한 경우는 전체 사례의 14%이고, 구속력 없는 제3자 해결이 시도된 경우는 전체 사례의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구속력 있는 제3자 개입이 시도된 58건의 경우 모든 사례에서 ‘양자 간 협정’ 등 어떤 식으로든 영토문제가 종결된 반면, 구속력 없는 제3자 개입이 시도된 영토분쟁 사례에서는 수차례의 제3자 개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해결된 상태로 진행 중인 사례도 여러 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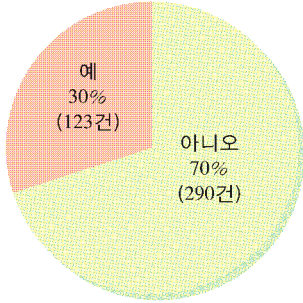
〈그림 2.7〉 영토분쟁 사례의 구속력 있는 제3자 해결시도 여부



〈그림 2.8〉 영토분쟁 사례의 구속력 없는 제3자 해결시도 여부

4. 무력충돌

1) 군사충돌 발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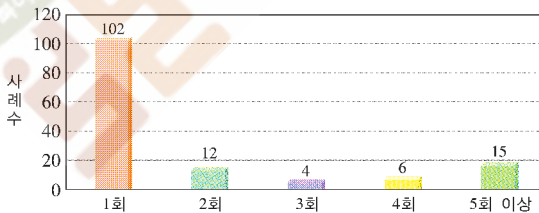


〈그림 2.9〉 영토분쟁 사례의 군사충돌 여부

〈그림 2.9〉를 보면 영토분쟁 전체 사례의 30%에 해당하는 123건의 분쟁 사례에서 군사충돌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영토문제의 경우 양국 간 평화적 해결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 분쟁 중 군사충돌이 발생한 횟수

(2) 군사충돌이 5회 이상 발생한 15건의 영토분쟁 사례



〈그림 2.10〉 영토분쟁 사례의 군사충돌 발생 횟수 (총 123회 중)

〈표 2.9〉 군사충돌이 5회 이상 발생한 분쟁 사례

| 분쟁명 | 도전국 | 종결 유형 | 분쟁 기간 (연수) | 군사충돌 횟수 |
|---------------------------|-------|----------|---------------|------------|
| | 대상국 | | | |
| Belize | 과테말라 | 진행 중 | 1981~ 현재 | 5 |
| | 벨리즈 | | | |
| Loreto | 페루 | 양자 간 협의 | 84년간 | 5 |
| | 콜롬비아 | | | |
| Essequibo | 베네수엘라 | 진행 중 | 1966~ 현재 | 7 |
| | 가이아나 | | | |
| Oriente-Mainas | 에콰도르 | 군사적 점유 | 92년간 | 16 |
| | 페루 | | | |
| Cordillera del Condor | 에콰도르 | 제 3자 | 52년간 | 13 |
| | 페루 | | | |
| Apa | 파라과이 | 양자 간 협의 | 29년간 | 5 |
| | 브라질 | | | |
| Chaco Boreal | 볼리비아 | 양자 간 협의 | 61년간 | 19 |
| | 파라과이 | | | |
| Antofagasta | 칠레 | 군사적 점유 | 37년간 | 5 |
| | 볼리비아 | | | |
| Patagonia | 칠레 | 제 3자 | 63년간 | 8 |
| | 아르헨티나 | | | |
| Beagle Channel | 아르헨티나 | 제 3자 | 82년간 | 19 |
| | 칠레 | | | |
| Gulf of Fonseca | 온두라스 | 진행 중 | 1912~ 현재 | 7 |
| | 니카라과 | | | |
| Ecuadorian Pacific Claims | 미국 | 진행 중 | 1952~ 현재 | 8 |
| | 에콰도르 | | | |
| Peruvian Pacific Claims | 미국 | 진행 중 | 1947~ 현재 | 5 |
| | 페루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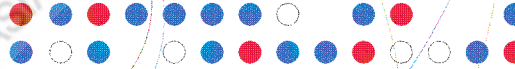
| 분쟁명 | 도전국 | 종결 유형 | 분쟁 기간(연수) | 군사충돌 횟수 |
|----------------|-------|----------|--------------|------------|
| | 대상국 | | | |
| Beagle Channel | 아르헨티나 | 제3자 | 86년간 | 5 |
| | 칠레 | | | |
| Aegean Sea | 그리스 | 진행 중 | 1964~현재 | 13 |
| | 터키 | | | |

〈표 2.9〉에 따르면 군사충돌이 가장 빈번한 영토분쟁 사례 15건 중 현재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는 6건으로서 40%에 해당한다. 이는 전체 ICOW 분쟁 사례 413건 중 현재 진행 중인 사례가 86건으로 21%인 것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이다. 따라서 군사충돌 발생 횟수가 높을수록 영토분쟁 종결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

식민침탈 영토편쟁 사례 추출





1. 연구개관

ICOW 데이터뱅크의 식민지역사 데이터는 지난 200년 동안 전 세계 각국의 식민지역사 또는 이와 유사한 경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식민국가와 피식민국가, 식민기간, 무력분쟁 여부, 식민종식 유형 등과 같은 세부 정보 관련 총 222건의 식민 사례가 이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식민침탈사로 인해 식민국가와 피식민국가 사이의 영토분쟁으로 발전한 사례를 선별하기 위해 413건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는 영토분쟁 데이터와 식민지역사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였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영토분쟁 데이터는 영유권분쟁 1816~2001, 188건은 아메리카와 서유럽의 분쟁 사례, 해양경계획정 분쟁 1900~2001, 143건은 아메리카, 서유럽, 중동지역의 분쟁 사례, 강분쟁 1900~2001, 82건은 아메리카와 전 유럽 지역의 사례가 수집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식민침탈사 관련 영토분쟁 사례의 조사 수집은 영유권분쟁, 해양경계획정 분쟁, 강분쟁의 범위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아메리카와 일부 유럽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진행

본 연구는 세계 국가들의 식민지역사 데이터와 영토분쟁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우선 영토분쟁 데이터의 'Dyad' 변수 값과 식민지역사 데이터의 'State' 와 'From' 의 변수 값을 비교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³⁾ 영토분쟁 데이터의 'Dyad' 변수는 분쟁 도전국과 점유국의 국가 코드번호에 따라 'AAABBB' 형태로 변수 값이 주어진 것이다. 즉, 'AAABBB' 는 세 자리 숫자로 된 각 도전국과 점유국의 국가 코드를 말한다. 한편 세계 국가 식민 지역사 데이터 파일에는 'State' 와 'From' 변수가 있는데, 이는 각각 피식민국가와 식민국가의 코드번호가 변수 값으로 제공되었다. 각 데이터의 주어진 변수 값 중 변수 값이 서로 일치하는 분쟁 사례를 추려내는 과정을 거쳐 일차적으로 식민침탈사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 50여 건의 영토분쟁 사례를 <표 3.1>과 같이 추려내었다.

<표 3.1> 식민지역사를 갖고 있는 두 국가 간 영토분쟁 사례

| | 피식민국가 | 독립일 | 분쟁 도전국 | 분쟁명 | 분쟁시작 |
|---|-------|--------|-----------|-------------------|--------|
| | 식민국가 | 독립 유형 | | | 분쟁종료 |
| 1 | 미국 | 178309 | 영국 | Passamaquoddy Bay | 181601 |
| | 영국 | 탈식민 | | | 181711 |
| 2 | | | 영국 | St.Croix River | 181601 |
| | | | | | 184210 |
| 3 | | | 영국 | 49th Parallel | 181601 |
| | | | | | 181810 |
| 4 | | | 영국 | Oregon Country | 181601 |
| | | | | | 184607 |
| 5 | | | 영국 | San Juan Islands | 184607 |
| | | | | | 187210 |

3) 'Dyad', 'State', 'From' 등은 ICOW 영토분쟁 데이터에 사용된 변수명을 말하며, 본서에서도 편의상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 | 피식민국가 | 독립일 | 분쟁 도전국 | 분쟁명 | 분쟁시작 |
|----|-------------|--------|-----------|----------------------|--------|
| | 식민국가 | 독립 유형 | | | 분쟁종료 |
| 6 | | | 미국 | Alaska | 187208 |
| | | | | | 190310 |
| 7 | | | 미국 | St. Mary's Diversion | 190211 |
| | | | | | 190901 |
| 8 | | | 영국 | Milk River Diversion | 190405 |
| | | | | | 190901 |
| 9 | | | 미국 | Dixon Entrance | 190001 |
| | | | | | 191912 |
| 10 | | | 미국 | Rum War | 192108 |
| | | | | | 193512 |
| 11 | 캐나다 | 186707 | 캐나다 | Labrador | 192001 |
| | 영국 | 탈식민 | | | 192703 |
| 12 | 쿠바 | 190205 | 미국 | Isle of Pines | 190901 |
| | 미국 | 탈식민 | | | 192503 |
| 13 | | | 쿠바 | Guantanamo Bay | 196009 |
| | | | | | 진행 중 |
| 14 | 도미니카 공화국 | 184402 | 아이티 | River Massacre | 189401 |
| | 아이티 | 분리/이탈 | | | 191507 |
| 15 | 베네수엘라 | 183001 | 베네수엘라 | Goajira Bay | 184101 |
| | 콜롬비아 | 분리/이탈 | | | 192203 |
| 16 | | | 콜롬비아 | Los Monjes Islands | 195104 |
| | | | | | 진행 중 |
| 17 | | | 콜롬비아 | Gulf of Venezuela | 195501 |
| | | | | | 진행 중 |
| 18 | 에콰도르 | 183005 | 에콰도르 | Oriente-Aguarico | 185401 |
| | 콜롬비아 | 분리/이탈 | | | 191907 |
| 19 | 페루 | 182412 | 스페인 | Chinca Islands | 186404 |
| | 스페인 | 탈식민 | | | 186605 |

| | 피식민국가 | 독립일 | 분쟁 도전국 | 분쟁명 | 분쟁시작 |
|----|-------|--------|-----------|-------------------------------|--------|
| | 식민국가 | 독립 유형 | | | 분쟁종료 |
| 20 | 우루과이 | 182808 | 우루과이 | Yaguarete | 188201 |
| | 브라질 | 분리/이탈 | | | 진행 중 |
| 21 | 아일랜드 | 192212 | 아일랜드 | Northern Ireland | 192212 |
| | 영국 | 분리/이탈 | | | 199805 |
| 22 | | | 아일랜드 | Treaty Ports | 192704 |
| | | | | | 193804 |
| 23 | | | 영국 | Ireland Free State | 192904 |
| | | | | | 192907 |
| 24 | | | 영국 | Delimitation | 197702 |
| | | | | | 198811 |
| 25 | 벨기에 | 183010 | 네덜란드 | Limburg | 183012 |
| | 네덜란드 | 분리/이탈 | | | 183904 |
| 26 | | | 벨기에 | Limburg & Zeeland Flanders | 191812 |
| | | | | | 192008 |
| 27 | | | 네덜란드 | Baarle Enclaves | 192210 |
| | | | | | 194005 |
| 28 | | | 네덜란드 | Baarle Enclaves | 194506 |
| | | | | | 195906 |
| 29 | | | 네덜란드 | Luxembourg | 183012 |
| | | | | | 183904 |
| 30 | | | 네덜란드 | Albert Canal | 193005 |
| | | | | | 193706 |
| 31 | | | 벨기에 | Scheldt/wielengen | 191901 |
| | | | | | 193204 |
| 32 | 폴란드 | 191811 | 러시아 | Sea of Okhotsk | 199102 |
| | 러시아 | 분리/이탈 | | | 진행 중 |
| 33 | | | 폴란드 | Bering Sea | 199206 |
| | | | | | 199507 |

| | 피식민국가 | 독립일 | 분쟁 도전국 | 분쟁명 | 분쟁시작 |
|----|--------|--------|------------|--------------------|--------|
| | 식민국가 | 독립 유형 | | | 분쟁종료 |
| 34 | 크로아티아 | 199106 | 유고슬 라비아 | Prevlaka Peninsula | 188201 |
| | 유고슬라비아 | 분리 /이탈 | | | 진행 중 |
| 35 | 그리스 | 182908 | 그리스 | Aegean Sea | 196404 |
| | 터키 | 탈식민 | | | 진행 중 |
| 36 | 불가리아 | 187803 | 터키 | Black Sea | 198301 |
| | 터키 | 탈식민 | | | 199712 |
| 37 | 에스토니아 | 199108 | 에스토니아 | Gulf of Finland | 199109 |
| | 러시아 | 탈식민 | | | 199903 |
| 38 | 리투아니아 | 199109 | 러시아 | Baltic Sea | 199109 |
| | 러시아 | 분리 /이탈 | | | 199710 |
| 39 | | | 러시아 | Barents Sea | 197403 |
| | | | | | 진행 중 |
| 40 | 우크라이나 | 199112 | 우크라이나 | Black Sea | 199311 |
| | 러시아 | 분리 /이탈 | | | 진행 중 |
| 41 | 아제르바이잔 | 199112 | 러시아 | Caspian Sea | 199112 |
| | 러시아 | 분리 /이탈 | | | 진행 중 |
| 42 | 핀란드 | 191712 | 핀란드 | Karelia & Petsamo | 191804 |
| | 러시아 | 탈식민 | | | 192010 |
| 43 | | | 러시아 | Karelia & Petsamo | 193808 |
| | | | | | 194003 |
| 44 | | | 핀란드 | Karelia & Petsamo | 194105 |
| | | | | | 194409 |
| 45 | | | 러시아 | Karelia & Petsamo | 194112 |
| | | | | | 194409 |
| 46 | | | 핀란드 | Karelia & Petsamo | 194509 |
| | | | | | 194702 |
| 47 | 스웨덴 | 190506 | 노르웨이 | Grisbadarna | 190506 |
| | 노르웨이 | 분리 /이탈 | | | 190910 |

| | 피식민국가 | 독립일 | 분쟁 도전국 | 분쟁명 | 분쟁시작 |
|----|-------|--------|-----------|-----------------|--------|
| | 식민국가 | 독립 유형 | | | 분쟁종료 |
| 48 | 아이슬란드 | 194406 | 덴마크 | Cod War | 195807 |
| | 덴마크 | 분리/이탈 | | | 196103 |
| 49 | | | 덴마크 | Faroe Islands | 197607 |
| | | | | | 199711 |
| 50 | 이집트 | 183111 | 터키 | Syrian Dam Plan | 195802 |
| | 터키 | 탈식민 | | | 196109 |
| 51 | 카자흐스탄 | 199112 | 러시아 | Caspian Sea | 199112 |
| | 러시아 | 분리/이탈 | | | 진행 중 |

그리고 식민지배 기간과 영토분쟁 발생시기를 비교하면서 식민침탈사와 직접적으로 좀 더 관련된 분쟁을 찾고자 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세계 국가의 식민지역사 데이터 변수 'Indip'는 식민국가의 식민지배가 종식된 시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변수 값은 'AAAABB' 형태로 표기되며, AAAA는 연도, BB는 월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영토분쟁 데이터의 분쟁시작일 변수 'Begclaim'와 분쟁종료일 변수 'Endclaim'도 변수 값이 'AAAABB' 형태로 주어져 있다. 두 데이터의 변수 값을 비교하여 식민지배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두 국가 간 영토분쟁이 발생한 시점까지의 기간을 100년 기준으로 10년씩 좁혀 나가는 방식과 함께 각종 영토분쟁 사료를 참조하여 식민침탈사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추출해 나갔다.

3. 연구결과

분쟁에 연루된 두 국가가 식민지와 피식민지 관계인 사례만 수집하는 본 데이터 비교 분석 방식은 식민지역사와 관련된 모든 분쟁을 수집하는 데 한

계가 없지 않았다. 예를 들어 두 분쟁국가가 모두 한 국가의 피식민지였던 경우 혹은 두 분쟁국가 중 한 국가가 제3국가의 피식민지였지만 독립 후 분쟁이 되는 영토의 권리를 이양받아 발생하는 분쟁은 위와 같은 조사방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ICOW 데이터 비교 분석 방식에서 제외된 분쟁 사례는 동북아시아재단의 전문가 초청 간담회 및 ‘제네바 해양법 협약 50주년의 회고와 전망’ 과 같은 국제학술회의 행사에서 발표된 사례를 참조하여 일부 보완하였다.

〈표 3.2〉 식민침탈 영토분쟁 사례

| | 영토분쟁 지역 | 당사국 | 비고(종결 여부) |
|---|-----------|----------------|---|
| 1 | 후벤투드 섬 | 쿠바 vs. 미국 | 1925년, 양자 간 합의로 쿠바 영토가 됨 |
| 2 | 산후안 섬 | 미국 vs. 영국 | 1872년, 제3자(독일 빌헬름 1세) 관여로 미국 영토가 됨 |
| 3 | 로스몬세스 섬 | 베네수엘라 vs. 콜롬비아 | 진행 중 |
| 4 | 친차 섬 | 페루 vs. 스페인 | 1866년, 도전국(스페인)의 단순포기로 분쟁종결되어 페루 영토가 됨 |
| 5 | 카렐리아와 페차모 | 핀란드 vs. 러시아 | 1947년, 양자 간 합의로 러시아 공화국에 편입됨 |
| 6 | 관타나모 만 | 쿠바 vs. 미국 | 진행 중 |
| 7 | 세인트크루아 강 | 미국 vs. 영국 | 1842년, 양자 간 합의로 미국의 영토가 됨 |
| 8 | 오리진 지역 | 미국 vs. 영국 | 1946년, 양자 간 합의로 49도선을 경계로 하는 데 동의 |
| 9 | 북아일랜드 | 아일랜드 vs. 영국 | 1998년, 제 3자(다자회담, 의장 조지 미첼, 전 미국 상원의원) 관여로 평화 협정 체결 및 북아일랜드가 입법, 행정권 회수 |

| | | | |
|----|----------|----------------|--|
| 10 | 알래스카 경계선 | 알래스카 vs. 캐나다 | 1903년, 양자 간 합의로 미국 영토가 됨 |
| 11 | 산안드레스 섬 | 콜롬비아 vs. 니카라과 | 2007년 12월 13일, 국제사법재판소의 선결적 항변에 대한 판결 : 1928년 조약으로 이미 영유권문제가 합의되었으므로 콜롬비아 영토가 됨 |
| 12 | 세르광 섬 | 우크라이나 vs. 루마니아 | 진행 중 (국제사법재판소 계류 중) |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얻은 여러 사례 중 식민지역사와 직접 관련된 영토분쟁으로 보기 애매하거나 한 분쟁의 테두리 내에 포함될 수 있는 작은 분쟁 사례를 배제한 후, <표 3.2>와 같이 총 12건의 식민침탈 관련 영토분쟁 사례를 최종적으로 추출했으며, 이 중에는 도서 영유권분쟁 사례 6건도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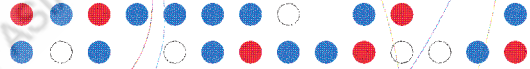
현재까지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등 서구의 영토분쟁 사례들만 대상으로 식민침탈 관련 영토분쟁 사례를 추출했지만, 향후 아시아·아프리카·중동 등 다른 대륙의 영토분쟁 관련 데이터 축적이 보완되면 더 많은 사례를 추출하여 보다 일반화된 패턴을 발견하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식민침탈 영토분쟁 사례를 추출해낸 궁극적인 목적은 각 분쟁 사례의 역사 및 배경, 전개과정, 그리고 종결 및 해결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식민침탈사로 인한 독도 영유권분쟁의 전반적인 시사점과 함의를 찾아 보고자 하는 것이다.

IV

연구결과 :

식민침탈 영토분쟁 사례





1. 후벤투드 섬(Isle of Pines)



(1) 개요

| | |
|------------|---------------------|
| 식민국가 | 미국 |
| 피식민국가 | 쿠바 |
| 독립일 | 1902. 05 |
| 분쟁시작일 | 1909. 01(쿠바 vs. 미국) |
| 분쟁종료일 | 1925. 03 |
| 분쟁도전국 | 미국 |
| 분쟁해결 방식 | 양자 간 합의 |
| 군사충돌 발생 횟수 | 0회 |

3,056km² 규모로 쿠바에서 가장 크고, 서인도 제도에서 여섯 번째로 큰 섬이다. 아바나 Havana와 피나르델리오 Pinar del Rio의 남쪽 부근에 있으며, 섬의 크기와 인구 경제적 특성으로 인해 특별 자치구로 여겨진다. 이 섬은 1978년에 섬의 명칭이 바뀌어 현재 공식 명칭은 Island of Youth이다.

(2) 역사 및 배경⁴⁾

쿠바는 약 1년간의 영국 점유기 1762~1763를 제외하고는 15세기부터 1898년까지 줄곧 스페인의 식민지하에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쿠바의 독립 운동가들은 스페인의 식민지배에 대항하여 싸우기 시작했으며, 1895년 쿠바에 관심을 보여오던 미국이 개입하게 되었다. 스페인과 미국은 몇 차례 소규모로 충돌했고, 전투에서 패한 스페인은 1898년 12월 10일 파리 조약 Treaty of Paris에 따라 쿠바에 대한 통치권을 미국에게 양도하였다. 쿠바의 후벤투드 섬에 대한 분쟁은 파리 평화 조약이 체결된 후에 발생하였다.

파리 조약의 I항에는 “스페인은 쿠바에 대한 모든 주권과 권리를 포기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II항에는 “스페인은 포르토리코 Porto Rico, 현재는 푸에르토리코 (Puerto Rico) 섬으로 불림. 섬과 현재 스페인의 주권하에 있는 서인도 제도의 다른 섬들 other islands과 마리아나 Marianas에 있는 괌 Guam 섬을 미국에게 양도한다.” 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후벤투드 섬이 I항의 ‘쿠바’ 라는 국가 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4 Peter Calvert, eds.(2004), *Border and Territorial Disputes of the World*, 4th edition, London UK : John Harper Publishing, p. 104.

아니면 스페인이 미국에 양도한 서인도 제도의 다른 섬들 중 하나인지를 놓고 의견이 나뉘면서 결국 양국은 후벤투드 섬의 합법적인 주권을 놓고 갈등하게 된다. 즉, 후벤투드 섬이 파리 조약 I항의 ‘쿠바’ 영역에 속한다면 이 섬은 쿠바의 영유권에 해당되는 반면, 파리 조약 II항의 ‘스페인에 미국에 양도한 다른 섬들’에 속한다면 이 섬이 미국의 영유권이 되기 때문이다.

(3) 전개과정⁵⁾

쿠바의 주장

1. 워싱턴에 있는 국회 도서관에는 후벤투드 섬이 지리적·정치적으로 쿠바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수백 장의 지도와 차트가 있다.
2. 1511년부터 이어온 스페인의 식민통치 역사에서 스페인은 후벤투드 섬을 쿠바의 영토로 여겨왔다.
3. 스페인 식민지배로 인한 후벤투드 섬의 처리는 홀(William Edward Hall)의 국제법에 대한 조약(*Treaties on International Law*, 4th edition, London, 1895)에 규명된 원리에 일치한다.

“한 국가의 영토란 그 국가의 국민에 의해 거주되며 국가주권에 종속되는 영토를 말하며, 이는 땅이건 강이나 바다건 모든 영역을 의미하며, 사람의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점유와 침부 등을 통해 부수적으로 추가된 것으로 여겨지는 점유, 규정, 조약 등에 의해 확정된 특정한 경계를 포함하며, 그러한 지역이 바다에 인접하고 있을 경우 특정한 한 계와 함께……” (p.106)

1898년 스페인의 통치권이 미국에게 양도된 이후 1902년까지 미국의 군

5) Janet Delavan Frost(1931), Cuban-American Relations Concerning the Isle of Pines, *The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11, No. 3, pp. 336~350.

사적 관할권하에 있던 쿠비는 1902년 ‘플랫 수정안’ Platt Amendment과 함께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한다. 그러나 ‘플랫 수정안’은 후벤투드 섬의 사항은 쿠바 독립국의 법적 영토 경계에 포함된다고 규정할 수 없으며, 이는 차후 협정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1904년 미국의 헤이 John Hay와 쿠바 측 퀘사다 Gonzalo de Quesada는 후벤투드 섬 문제를 논의한 후 헤이-퀘사다 협정 Hay-Quesada Agreement을 맺는다. 이 협정에서 쿠바 측의 주장은 상당 부분 인정되었고, 미국이 1898년 파리 평화 조약 I항과 II항의 효력으로 행사할 수 있는 후벤투드 섬에 대한 권한을 포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1906년 1월 의회에 상정된 이 협정은 같은 해 8월 모르간 상원의원이 이 섬에 대해 자세한 조사를 요구하며 비준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다.

1907년 뉴욕 남부지역 순회 법원에서는 후벤투드 섬에서 재배하여 미국으로 들어오는 담배 cigar를 둘러싸고 이 섬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뉴욕 항의 관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무역상은 후벤투드 섬이 미국 소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를 후벤투드산 담배에 대해서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심 법원에서 그 소송은 기각되었고 마침내 미국 대법원으로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미국 대법원은 후벤투드 섬이 사실상 쿠바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고, 미국이 그 섬을 법적으로 소유한 적이 없어 외국 영토로 규명되므로 후벤투드산 담배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1924년 2월 외교위원회 의장이었던 로지 상원의원은 행정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1904년 협정을 상원에 보고했지만, 의회는 협정에 대한 재고를 이유로 12월까지 연기하였다. 그 후 1925년 1월에 1904년의 헤이-퀘사다 협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결국 특별회의 special session를 통

해 협정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사실상 이 분쟁은 1904년 헤이와 퀘사다 간 협정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20년 이상 지난 1925년이 되어 서야 비로소 미국 국회의 비준을 얻고 후벤투드 섬이 쿠바 영토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분쟁이 종결되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서양에서 미국이 피식민국가 쿠바의 도서 영유권을 인정해주면서 협정까지 맺게 된 1904년이 동양에서는 정반대로 식민국가 일본이 피식민국가 한국을 침탈하면서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불법 편입하려던 바로 그 시점이라는 것이다.

둘째, 당시 미국은 자국의 대법원에서조차 쿠바의 도서 영유권을 인정해주는 등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과 양심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억지 주장으로 식민침탈사를 합리화하는 데에만 집착하는 일본의 행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연대기별 전개과정⁶⁾

1898년 12월 10일 : 스페인은 미국에게 쿠바의 식민지 권한을 양도한다.

1902년 5월 20일 : 쿠바는 후벤투드 섬에 대한 주권문제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한 채 쿠바공화국으로 독립한다.

1907년 4월 : 미국 대법원은 그 섬이 미국의 영토가 아님을 선언한다.

1925년 3월 25일 : 후벤투드 섬에 대한 쿠바의 주권이 확인된다.

6 <http://www.worldstatemen.org/Cuba.html>

● 1898 파리 조약(Treaty of Paris, Dec. 10, 1898)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Her Majesty the Queen Regent of Spain, in the name of her august son Don Alfonso XIII, desiring to end the state of war now exis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for that purpose appointed as plenipotentiarie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illiam R. Day, Cushman K. Davis, William P. Frye, George Gray, and Whitelaw Reid,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Her Majesty the Queen Regent of Spain,

Don Eugenio Montero Rios, president of the senate, Don Buenaventura de Abarzuza, senator of the Kingdom and ex-minister of the Crown; Don Jose de Garnica, deputy of the Cortes and associate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Don Wenceslao Ramirez de Villa-Urrutia, envoy extraordinary and minister plenipotentiary at Brussels, and Don Rafael Cerero, general of division;

Who, having assembled in Paris, and having exchanged their full powers, which were found to be in due and proper form, have, after discussion of the matters before them, agreed upon the following articles:

Article I.

Spain relinquishes all claim of sovereignty over and title to Cuba. And as the island is, upon its evacuation by Spain, to be occupied by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will, so long as such occupation shall last, assume and discharge the obligations that may under international law result from the fact of its occupation, for the protection of life and property.

제1조항

스페인은 쿠바에 대한 영토의 권리와 주권의 모든 권리(소유권)를 포기한다. 그리고 스페인이 철수함에 따라 쿠바는 미국이 점유할 것이며, 미국의 점유가 지속되는 한 미국은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점유에 따른 국제법상의 책임을 맡고 이행할 것이다.

Article II.

Spain cedes to the United States the island of Porto Rico and other islands now under Spanish sovereignty in the West Indies, and the island of Guam in the Marianas or Ladrones.

제2조항

스페인은 현재 스페인의 주권하에 있는 서인도 제도의 섬들과 포르토리코(Porto Rico) 섬과 마리아나(Marianas) 혹은 라드로네스(Ladrones)에 있는 괌(Guam) 섬을 미국에게 양도한다.

Article III.

Spain cedes to the United States the archipelago known as the Philippine Islands, and comprehending the islands lying within the following line:

A line running from west to east along or near the twentieth parallel of north latitude, and through the middle of the navigable channel of Bachi, from the one hundred and eighteenth (118th) to the one hundred and twenty-seventh (127th) degree meridian of longitude east of Greenwich, thence along the one hundred and twenty seventh (127th) degree meridian of longitude east of Greenwich to the parallel of four degrees and forty five minutes (4 [degree symbol] 45') north latitude, thence along the parallel of four degrees and forty five minutes (4 [degree symbol] 45') north latitude to its intersection with the meridian of longitude one hundred and nineteen degrees and thirty five minutes (119 [degree symbol] 35') east of Greenwich, thence along the meridian of longitude one hundred and nineteen degrees and thirty five minutes (119 [degree symbol] 35') east of Greenwich to the parallel of latitude seven degrees and forty minutes (7 [degree symbol] 40') north, thence along the parallel of latitude of seven degrees and forty minutes (7 [degree symbol] 40') north to its intersection with the one hundred and sixteenth (116th) degree meridian of longitude east of Greenwich, thence by a direct line to the intersection of the tenth (10th) degree parallel of north latitude with the one hundred and eighteenth (118th) degree meridian of longitude east of

Greenwich, and thence along the one hundred and eighteenth (118th) degree meridian of longitude east of Greenwich to the point of beginning. The United States will pay to Spain the sum of twenty million dollars (\$20,000,000)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exchange of the ratifications of the present treaty.

Article IV.

The United States will, for the term of ten years from the date of the exchange of the ratifications of the present treaty, admit Spanish ships and merchandise to the ports of the Philippine Islands on the same terms as ships and merchandise of the United States.

Article V.

The United States will, upon the signature of the present treaty, send back to Spain, at its own cost, the Spanish soldiers taken as prisoners of war on the capture of Manila by the American forces. The arms of the soldiers in question shall be restored to them.

Spain will, upon the exchange of the ratifications of the present treaty, proceed to evacuate the Philippines, as well as the island of Guam, on terms similar to those agreed upon by the Commissioners appointed to arrange for the evacuation of Porto Rico and other islands in the West Indies, under the Protocol of August 12, 1898, which is to continue in force till its provisions are completely executed.

The time within which the evacuation of the Philippine Islands and Guam shall be completed shall be fixed by the two Governments. Stands of colors, uncaptured war vessels, small arms, guns of all calibres, with their carriages and accessories, powder, ammunition, livestock, and materials and supplies of all kinds, belonging to the land and naval forces of Spain in the Philippines and Guam, remain the property of Spain. Pieces of heavy ordnance, exclusive of field artillery, in the fortifications and coast defences, shall remain in their emplacements for the term of six months, to be reckoned from the exchange of ratifications of the treaty; and the United States may, in the meantime, purchase

such material from Spain, if a satisfactory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on the subject shall be reached.

Article VI.

Spain will, upon the signature of the present treaty, release all prisoners of war, and all persons detained or imprisoned for political offences, in connection with the insurrections in Cuba and the Philippines and the war with the United States.

Reciprocally, the United States will release all persons made prisoners of war by the American forces, and will undertake to obtain the release of all Spanish prisoners in the hands of the insurgents in Cuba and the Philippines.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will at its own cost return to Spain and the Government of Spain will at its own cost return to the United States, Cuba, Porto Rico, and the Philippines,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their respective homes, prisoners released or caused to be released by them, respectively, under this article.

Article VII.

The United States and Spain mutually relinquish all claims for indemnity, national and individual, of every kind, of either Government, or of its citizens or subjects, against the other Government, that may have arisen since the beginning of the late insurrection in Cuba and prior to the exchange of ratifications of the present treaty, including all claims for indemnity for the cost of the war.

The United States will adjudicate and settle the claims of its citizens against Spain relinquished in this article.

Article VIII.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I, II, and III of this treaty, Spain relinquishes in Cuba, and cedes in Porto Rico and other islands in the West Indies, in the island of Guam, and in the Philippine Archipelago, all the buildings, wharves, barracks, forts, structures, public highways and other immovable prop-

erty which, in conformity with law, belong to the public domain, and as such belong to the Crown of Spain.

And it is hereby declared that the relinquishment or cession, as the case may be, to which the preceding paragraph refers, can not in any respect impair the property or rights which by law belong to the peaceful possession of property of all kinds, of provinces, municipalities, public or private establishments, ecclesiastical or civic bodies, or any other associations having legal capacity to acquire and possess property in the aforesaid territories renounced or ceded, or of private individuals, of whatsoever nationality such individuals may be.

The aforesaid relinquishment or cession, as the case may be, includes all documents exclusively referring to the sovereignty relinquished or ceded that may exist in the archives of the Peninsula. Where any document in such archives only in part relates to said sovereignty, a copy of such part will be furnished whenever it shall be requested. Like rules shall be reciprocally observed in favor of Spain in respect of documents in the archives of the islands above referred to.

In the aforesaid relinquishment or cession, as the case may be, are also included such rights as the Crown of Spain and its authorities possess in respect of the official archives and records, executive as well as judicial, in the islands above referred to, which relate to said islands or the rights and property of their inhabitants. Such archives and records shall be carefully preserved, and private persons shall without distinction have the right to require, in accordance with law, authenticated copies of the contracts, wills and other instruments forming part of notarial protocols or files, or which may be contained in the executive or judicial archives, be the latter in Spain or in the islands aforesaid.

Article IX.

Spanish subjects, natives of the Peninsula, residing in the territory over which Spain by the present treaty relinquishes or cedes her sovereignty, may remain in

such territory or may remove therefrom, retaining in either event all their rights of property, including the right to sell or dispose of such property or of its proceeds; and they shall also have the right to carry on their industry, commerce and professions, being subject in respect thereof to such laws as are applicable to other foreigners. In case they remain in the territory they may preserve their allegiance to the Crown of Spain by making, before a court of record, within a year from the date of the exchange of ratifications of this treaty, a declaration of their decision to preserve such allegiance; in default of which declaration they shall be held to have renounced it and to have adopted the nationality of the territory in which they may reside.

The civil rights and political status of the native inhabitants of the territories hereby ceded to the United Stat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ngress.

Article X.

The inhabitants of the territories over which Spain relinquishes or cedes her sovereignty shall be secured in the free exercise of their religion.

Article XI.

The Spaniards residing in the territories over which Spain by this treaty cedes or relinquishes her sovereignty shall be subject in matters civil as well as criminal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the country wherein they reside, pursuant to the ordinary laws governing the same; and they shall have the right to appear before such courts, and to pursue the same course as citizens of the country to which the courts belong.

Article XII.

Judicial proceedings pending at the time of the exchange of ratifications of this treaty in the territories over which Spain relinquishes or cedes her sovereignty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rules:

1. Judgments rendered either in civil suits between private individuals, or in

criminal matters, before the date mentioned, and with respect to which there is no recourse or right of review under the Spanish law, shall be deemed to be final, and shall be executed in due form by competent authority in the territory within which such judgments should be carried out.

2. Civil suits between private individuals which may on the date mentioned be undetermined shall be prosecuted to judgment before the court in which they may then be pending or in the court that may be substituted therefor.

3. Criminal actions pending on the date mentioned before the Supreme Court of Spain against citizens of the territory which by this treaty ceases to be Spanish shall continue under its jurisdiction until final judgment; but, such judgment having been rendered, the execution thereof shall be com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place in which the case arose.

Article XIII.

The rights of property secured by copyrights and patents acquired by Spaniards in the Island of Cuba and in Porto Rico, the Philippines and other ceded territories, at the time of the exchange of the ratifications of this treaty, shall continue to be respected. Spanish scientific, literary and artistic works, not subversive of public order in the territories in question, shall continue to be admitted free of duty into such territories, for the period of ten years, to be reckoned from the date of the exchange of the ratifications of this treaty.

Article XIV.

Spain will have the power to establish consular officers in the ports and places of the territories, the sovereignty over which has been either relinquished or ceded by the present treaty.

Article XV.

The Government of each country will, for the term of ten years, accord to the merchant vessels of the other country the same treatment in respect of all port

charges, including entrance and clearance dues, light dues, and tonnage duties, as it accords to its own merchant vessels, not engaged in the coastwise trade.

Article XVI.

It is understood that any obligations assumed in this treaty by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Cuba are limited to the time of its occupancy thereof; but it will upon termination of such occupancy, advise any Government established in the island to assume the same obligations.

Article XVII.

The present treaty shall be ratifi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thereof, and by Her Majesty the Queen Regent of Spain; and the ratifications shall be exchanged at Washington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hereof, or earlier if possible.

In faith whereof, we, the respective Plenipotentiaries, have signed this treaty and have hereunto affixed our seals.

Done in duplicate at Paris, the tenth day of December, in the year of Our Lord one thousand eight hundred and ninety-eight.

[Seal] William R. Day

[Seal] Cushman K. Davis

[Seal] William P. Frye

[Seal] Geo. Gray [Seal] Whitelaw Re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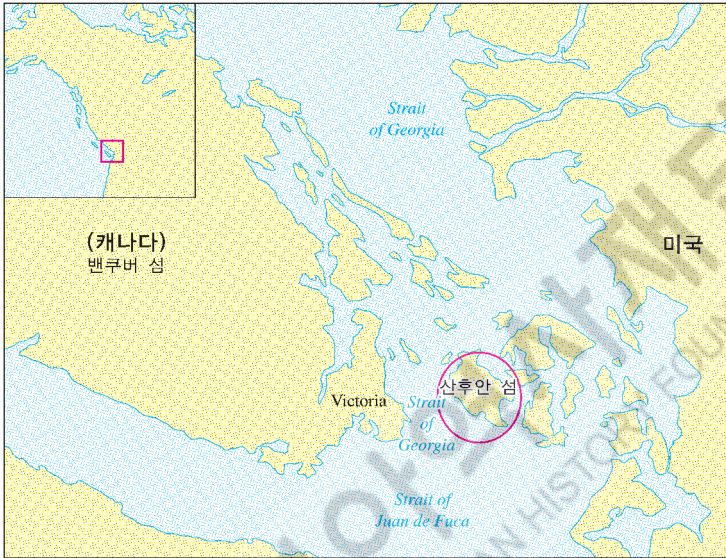
[Seal] Eugenio Montero Rios

[Seal] B. de Abarzuzal [Seal] J. de Garnica

[Seal] W. R. de Villa Urrutia

[Seal] Rafael Cerero

2. 산후안 섬(San Juan Islands)⁷⁾



(1) 개요

| | |
|------------|---------------------|
| 식민국가 | 영국 |
| 피식민국가 | 미국 |
| 독립일 | 1783. 09 |
| 분쟁시작일 | 1846. 07(미국 vs. 영국) |
| 분쟁종료일 | 1872. 10 |
| 분쟁도전국 | 영국 |
| 분쟁해결 방식 | 제3자(독일 빌헬름 1세)의 중재 |
| 군사충돌 발생 횟수 | 0회 |

7 [http://en.wikipedia.org/wiki/Pig War](http://en.wikipedia.org/wiki/Pig_War)



산후안 섬은 미국 북서부에 있는 산후안 군도의 한 부분이다. 산후안 군도에는 약 450개 이상의 섬이 있는데, 그중 6분의 1 정도인 70여 개의 섬에만 사람이 살고 있으며 페리 public ferry가 운행되는 섬은 6개에 불과하다.⁸⁾

(2) 역사 및 배경

산후안 군도는 원래 중부 연안 샬리시어군 인디언족 Salish 들 거주지의 일부였다. 1846년에 미 대통령 제임스 포크 James K. Polk가 맺은 오리건 조약 Oregon Treaty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으로 49도선 49th parallel을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산후안 해협에 대해서는 특정한 언급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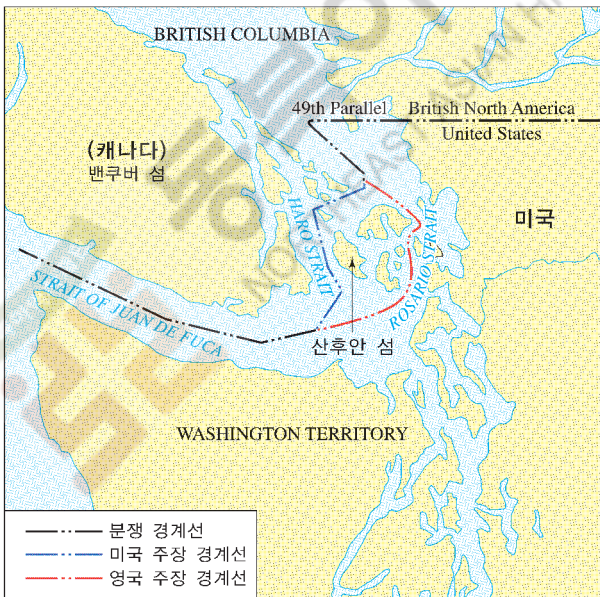
산후안 군도에는 해협 of the 중양으로 볼 수 있는 2개의 해협이 있는데, 산후안 섬 서쪽의 하로 Haro 해협과 섬 동쪽의 로사리오 Rosario 해협이다. 조약에 따라 양국 모두 밴쿠버 섬은 영국령에 속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오늘

8 http://en.wikipedia.org/wiki/San_Juan_Islands

날의 걸프 섬과 산후안 섬 사이의 경계선에 대한 불명확한 언급은 양국 간 분쟁의 불씨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애매함으로 인해 미국과 영국 양측은 모두 산후안 섬의 주권을 주장하였다. 그 외중에 미국 개척자들이 속속 이주해 들어오기 시작했고, 영국이 소유한 허드슨 베이 회사 Hudson's Bay Company의 공장이 섬에 들어서 는 한편, 양 사육량의 증가와 함께 양 목장도 늘어갔다.

결국 산후안 해협에 애매한 경계선에 대한 분쟁은 양국 간의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켰고, 급기야 1859년 돼지전쟁 Pig War이 발발하였다. 이후 독일의 크라이저 빌헬름 Kriser Wilhelm 1세의 중재가 있기까지 소규모 충돌은 계속되었으며, 1872년 마침내 양쪽이 모두 인정하는 경계선이 설정되었고 섬은 결국 미국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돼지전쟁 (Pig War)

돼지전쟁은 돼지 에피소드, 산후안 경계분쟁 혹은 북서 경계선분쟁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린다. 돼지전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돼지 한 마리가 총에 맞아 죽음으로써 이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전쟁의 유일한 사상자로는 돼지 한 마리가 전부였는데, 이는 산후안 도서분쟁이 본질적으로 무혈전쟁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1850년 미국 Donation Land Claim Act에 의거하여 그 섬에서 살 권리를 주장한 미국의 농부 커틀러(Lyman Cutlar) 씨는 자신의 정원에서 감자 넝쿨을 먹고 있는 돼지 한 마리를 발견하고 총으로 쏘 죽였다. 그 돼지는 양 목장을 경영하는 허드슨 베이 회사에서 일하는 아일랜드인 그리핀(Charles Griffin)씨의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커틀러 씨는 죽은 돼지에 대한 보상으로 10달러를 제안했으나 그리핀 씨는 100달러를 요구하였다. 무리한 요구에 커틀러 씨는 돼지가 자신의 정원에 먼저 침입했기 때문에 자신은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영국은 공권력을 사용하여 커틀러 씨를 체포하겠다고 위협했고, 미국의 이주자들은 자국의 군사적 보호를 요구하면서 분쟁이 초래되었다.

(3) 전개과정

당시 미국의 오리건 정부를 지휘하던 하레니 William S. Hareney 기병 장교는 1859년 7월 27일 이래로 산후안 섬을 통치해오고 있었는데, 영국의 산후안 섬 이주를 금지하는 명령과 함께 보병 제9연대의 미군 66명을 산후안 섬으로 파견하였다. 이에 대하여 영국도 만약 미국인의 이주와 거주가 통제되지 않으면 섬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미국인이 점차 그 섬을 장악할 수도 있다는 염려와 함께 혼비 Geoffrey Hornby 장군의 지휘하에 세 척의 영국군 함대를 보냈고, 이러한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면서 전쟁 발발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었다. 1859년 8월 10일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461명의 군대와 14개의 대포로, 영국은 다섯 척의 함대에 2,104명의 군인과 70정의 총을 실은 채 대치하고 있었다.

벤쿠버 섬 식민지 총독 더글러스 James Douglas는 영국 해군 장교인 베인스 Robert L. Baynes에게 산후안 섬에 해군을 보내 연대장 하레니가 이끄는 미군과 대치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베인스는 돼지 한 마리의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여긴 나머지 강경 대응하라는 본국 총독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이 미국 측에도 전해졌고, 결국 섬에 배치된 양국 장교들은 모두 자국민은 보호하되 절대로 먼저 상대방을 향해 공격하는 것을 금한다는 선제공격 금지령을 지켰다. 비록 수십일 동안 양측 군인들은 서로를 비방하면서 상대방이 먼저 무기를 사용하도록 자극했지만 양측에게 주어진 선제공격 금지의 원칙만은 철저히 지켜졌다.

(4) 해결 및 종결

1859년 9월에 미국의 부캐넌 James Buchanan 대통령은 스콧 Winfield Scott 장군을 파견하여 영국 총독 더글러스와의 협상을 개시하였다. 당시 미국은 남북전쟁 Civil War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어 조속한 협상이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협상결과 양측은 그 섬의 군사적 공동 점유를 유지하는 데 동의했고,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는 전투 목적이라기보다는 동시 점유라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영국군의 주둔지는 공급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산후안 섬 북쪽 해안선을 따라 세워졌고, 미국군의 주둔지는 대포 사격에 적합한 남쪽 끝단의 고원 평지에 자리 잡았다.

군사적 공동 점유 기간에 섬 안에 주둔하던 작은 규모의 영국과 미국 군대는 양국 간 전쟁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자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하였다. 서로 국경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상대방의 주둔지에 방문하기도 하고 친선 체육대회를 갖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후 12년간 지속되다가 1872년 10월 21일 독일의 빌

헬름 1세의 중재로 군사적 공동 점유는 막을 내렸다. 빌헬름 1세가 임명한 위원회는 산후안 군도를 미국에게 돌려줄 것을 결정했고, 이 결정을 받아들인 영국이 1872년 11월 25일 영국 주둔지에서 병력을 철수함으로써 산후안 섬 영유권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었다.

주목할 사실은 당시 식민국가 출신인 영국이 제3국인 독일의 중재에 따라 피식민국가 미국의 도서 영유권을 순순히 인정하고 군대까지 철수했다는 것이다. 당시 식민국가 영국의 결단은 오늘날,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순순히 인정하는 과거 식민국가 일본의 결단을 촉구하는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1> 산후안 군도 전경

출처 : <http://www.sanjuanislandstuartcabindock.com/>

● 1846 오리건 조약(The Oregon Treaty, 1846)

TREATY WITH GREAT BRITAIN,
IN REGARD TO LIMITS WESTWARD OF THE ROCKY MOUNTAIN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her Majesty the Queen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deeming it to be desirable for the future welfare of both countries that the state of doubt and uncertainty which has hitherto prevailed respecting the sovereignty and government of the territory on the northwest coast of America, lying westward of the Rocky or Stony Mountains, should be finally terminated by an amicable compromise of the rights mutually asserted by the two parties over the said territory, have respectively named plenipotentiaries to treat and agree concerning the terms of such settlement — that is to sa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on his part, furnished with full powers James Buchanan, Secretary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and her Majesty the Queen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has, on her part, appointed the Right Honorable Richard Pakenham, a member of her Majesty's Most Honorable Privy Council, and her Majesty's Envoy Extraordinary and Minister Plenipotentiary to the United States; who, after having communicated to each other their respective full powers, found in good and due form, have agreed upon and concluded the following articles: —

Article I.

From the point on the forty-ninth parallel of north latitude, where the boundary laid down in existing treaties and conven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terminates, the line of boundary between the territori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ose of her Britannic Majesty shall be continued westward along the said forty-ninth parallel of north latitude to the middle of the channel which separates the continent from Vancouver's Island, and thence southerly through the middle of the said channel, and of Fuca's Straits, to the Pacific Ocean:

Provided, however, That the navigation of the whole of the said channel and straits, south of the forty-ninth parallel of north latitude, remain free and open to both parties.

미국과 영국령 간 영토를 나누는 경계선은 언급된 북위 49도선을 따라 서쪽 방향으로 해협을 중앙을 지나는 선으로 이어진다. 이 해협은 밴쿠버 섬으로부터 남쪽 방향으로 본 해협의 중앙을 통과하여 푸카(Fuca) 해협을 지나 태평양해에 이르는 대륙을 나누고 있다.

Article II.

From the point at which the forty-ninth parallel of north latitude shall be found to intersect the great northern branch of the Columbia River, the navigation of the said branch shall be free and open to the Hudson's Bay Company, and to all British subjects trading with the same, to the point where the said branch meets the main stream of the Columbia, and thence down the said main stream to the ocean, with free access into and through the said river or rivers, it being understood that all the usual portages along the line thus described shall, in like manner, be free and open. In navigating the said river or rivers, British subjects, with their goods and produce, shall be treated on the same footing as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it being, however, always understood that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as preventing, or intended to prevent,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from making any regulations respecting the navigation of the said river or rivers not inconsistent with the present treaty.

Article III.

In the future appropriation of the territory south of the forty-ninth parallel of north latitude, as provided in the first article of this treaty, the possessory rights of the Hudson's Bay Company, and of all British subjects who may be already in the occupation of land or other property lawfully acquired within the said territory, shall be respected.

Article IV.

The farms, lands, and other property of every description, belonging to the Puget's Sound Agricultural Company, on the north side of the Columbia River, shall be confirmed to the said company. In case, however, the situation of those farms and lands should be considered by the United States to be of public and political importance, and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should signify a desire to obtain possession of the whole, or of any part thereof, the property so required shall be transferred to the said government, at a proper valuation, to be agreed upon between the parties.

Article V.

The present treaty shall be ratifi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thereof, and by her Britannic Majesty; and the ratifications shall be exchanged at London, at the expiration of six months from the date hereof, or sooner, if possible.

In witness whereof, the respective Plenipotentiaries have signed the same, and have affixed thereto the seals of their arms.

Done at Washington, the fifteenth day of June, in the year of our Lord one thousand eight hundred and forty-six.

(signed by)

JAMES BUCHANAN

RICHARD PAKENHAM

3. 로스몬세스 섬(Los Monjes Islands)⁹⁾



(1) 개요

| | |
|------------|---------------------------|
| 식민국가 | 콜롬비아 |
| 피식민국가 | 베네수엘라 |
| 독립일 | 1830. 01 |
| 분쟁시작일 | 1951. 04 (베네수엘라 vs. 콜롬비아) |
| 분쟁종료일 | 진행 중 |
| 분쟁도전국 | 콜롬비아 |
| 분쟁해결 방식 | 진행 중 |
| 군사충돌 발생 횟수 | 3회 |

- 9 연구자에 따라 로스몬세스 섬 분쟁과 베네수엘라 만 분쟁을 각기 다른 분쟁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서로의 관련성 때문에 함께 기술하였다.



〈그림 4.2〉 로스몬제스섬 전경.

출처 : <http://www.hfdx.com/Monjes/monjes2.html>

로스몬제스 섬은 식물이 서식하지 않고 사람도 살지 않는 작은 바위섬으로 종종 물에 잠기기도 한다. 이 섬은 과히라 Guajira 반도의 북동쪽 끝자락에서 약 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수르 Sur, 에스테 Este, 노르테 Norte 라고 불리는 3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배경 및 역사¹⁰⁾

1891년 스페인 여왕 레전트 Regent는 과히라 반도를 콜롬비아에게 수여하였다. 그러나 1894년 4월 24일에 콜롬비아의 수도인 보고타 Bogota에서 서명만 하고 비준되지 못한 조약에 따라 콜롬비아는 과히라 반도의 동부 해안

10 Peter Calvert, eds.(2004), *Border and Territorial Disputes of the World*, 4th edition, London UK : John Harper Publishing, pp.101 ~ 103.

선의 정착지를 비롯한 특정 영토를 베네수엘라에게 할양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들어 베네수엘라 만 Gulf of Venezuela의 영해자원과 로스몬세스 섬 주변의 원유자원 발견 등으로 인해 양국 간에 새로운 영유권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1944년 마침내 콜롬비아는 일방적으로 로스몬세스 섬에 대한 주권을 주장했지만 베네수엘라는 이 주장을 거부하고 오히려 1952년 2월 로스몬세스 섬을 자기의 영토로 편입시켰다. 이로 인해 1952년 11월 11일 콜롬비아의 외무부 장관인 올림 Juan Uribe Holgum은 공식적으로 그 섬에 대한 주장을 포기하였다.

1965년 12월 콜롬비아가 미국에게 베네수엘라 영토에 있는 원유를 탐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는 소식이 베네수엘라에 전해졌다. 하지만 두 국가는 '해양과 해저 지역에 대한 한계선'을 정하는 회담에 참여하기로 동의하

였다. 1968년 베네수엘라 외무부 장관은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카스틸레 Castillets와 폰타살리나스 Punta Salinas, 위도 약 12도 지역의 베네수엘라 만 남쪽의 해저 전체 지역은 베네수엘라 영토의 일부이며 이곳은 절대로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

1971년 콜롬비아는 1952년의 로스몬세스 섬에 대한 공식적 영토 포기 선언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1973년 4월에는 로스몬세스 섬은 섬 자체 대륙붕 continental shelf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등의 발언으로 베네수엘라의 도서 영유권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1975년 1월 20일 콜롬비아의 미첼센 Lopez Michelsen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만이 역사적·지리적으로 베네수엘라 한 국가에만 둘러싸여 있는 만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동 주권 condominium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76년 1월 28일 콜롬비아 정부는 로스몬세스 섬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상정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베네수엘라 정부와 해양 해저지역 경계선 delimitation of marine and submarine area 설정에 대해 직접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유화적인 의사를 밝힌 반면, 베네수엘라 외무부 장관은 로스몬세스 섬 주권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3) 전개과정

1978년에 베네수엘라 만 경계를 정하는 비공개 협상 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분쟁에 대한 회담이 최초로 진행되었고, 이 회담에서 양국 간 조약의 초안을 만드는 데 합의하였다. 당시 합의문 초안에 따르면 로스몬세스 섬이 베네수엘라 영토의 일부이지만 콜롬비아에게도 베네수엘라 만의 제한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이 언급되었으며, 경계선을 중심으로 양쪽에 매장된 원

유에 대해서는 각 국가가 자기 영역 매장량은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합의문은 양국 국내적으로 일부 특정 그룹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으며, 특히 베네수엘라 군대의 반발은 매우 심했다. 베네수엘라의 캄핀스 Luis Herrera Campins 대통령은 이 합의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비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1985년 6월 14일 새로운 회담이 개최되었고 두 국가 정상이 평화적인 해결안을 찾겠다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의 루신치 Jaime Lusinchi 대통령은 콜롬비아의 직접 협상 요청을 거부하며 로스몬세스 섬 협상에 단호한 자세를 취하였다.

1987년에는 양국 간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었다. 국경 부근에서 콜롬비아 정부에 대한 베네수엘라의 게릴라 공격과 마약 매매 같은 불법 행위가 긴장 고조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콜롬비아 게릴라는 국경 부근 농부의 납치문제와 베네수엘라에 거주하는 콜롬비아 이민자 학대에 대한 보복으로 베네수엘라 원유굴삭 공장을 공격하였다. 그해 6월에는 콜롬비아 게릴라 그룹인 민족해방군 National Liberation Army에 소속된 게릴라들이 베네수엘라 국경 수비대를 공격하여 8명의 수비병과 장교 1명이 사살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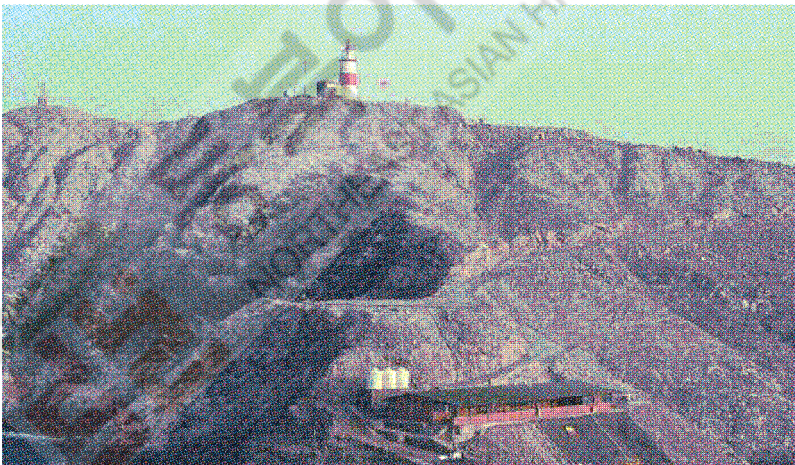
1988년 1월 21일 양국의 내무부 장관은 회담을 갖고 국경문제와 더불어 마약 매매와 게릴라 활동에 대해 위원회를 만들어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것에 합의했으나, 그 후 10년간 양국 간의 관계는 분쟁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긴장 완화와 고조를 반복해왔다.

특히 1992년 차베스 Hugo Chavez가 이끄는 부대가 카라카스 Caracas에 있는 대통령 궁을 공격하는 등 베네수엘라 내부에 쿠데타가 발생하였다. 자신들을 군에 소속된 극우 민족주의자라고 밝힌 쿠데타 리더들은 콜롬비아와의

기존 영토 협상이 베네수엘라 영토주권의 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베네수엘라의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하였다.

1998년 차베스가 절대적인 지지를 얻으며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한때 양국 간의 관계는 극도로 긴장 상태가 되기도 했으나, 2000년 5월 4일 차베스는 콜롬비아의 파스트라나 Andres Pastrana 대통령과 5시간에 걸친 면담 후 일련의 국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합 위원회를 재구성하는데 합의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경 부근에서 발생하는 급박한 상황들에 비해 비교적 덜 중요한 당면 과제로 여겨지는 로스몬세스 섬 분쟁과 베네수엘라 만 해양경계선 문제는 현재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 있다.



〈그림 4.3〉 로스몬세스 섬의 등대

출처 : <http://www.hfdx.com/Monjes/monjes2.html>.



〈그림 4.4〉 등대에서 내려다본 로스몬제스 섬의 모습
출처 : <http://www.hfdx.com/Monjes/monjes2.html>.

4. 친차 섬(Chincha Islands)¹²⁾



12 http://en.wikipedia.org/wiki/chincha_Islands_War

(1) 개요

| | |
|------------|-----------------------|
| 식민국가 | 스페인 |
| 피식민국가 | 페루 |
| 독립일 | 1821. 07 |
| 분쟁시작일 | 1864. 04(페루 vs. 스페인) |
| 분쟁종료일 | 1866. 05 |
| 분쟁도전국 | 스페인 |
| 분쟁해결 방식 | 분쟁 도전국 단순포기 |
| 군사충돌 발생 횟수 | 2회 |

친차 섬 Chincha Islands, 스페인어로는 Islas Chincha은 페루 남서 해안선에서 약 21km 떨어져 있는 3개의 작은 섬이다. 이 지역은 구아노 guano 광물의 광범위한 매장지로 유명했으나 1874년에 들어 많은 양이 고갈되었다. 가장 큰 섬인 노르테 섬은 규모가 길이 1,287m, 너비 966m인 섬으로 높이는 34m까지 솟아 있다. 또 다른 센트로 섬은 북섬의 크기와 거의 비슷하지만, 나머지 수르 섬은 다른 두 섬 규모의 절반 정도이다. 섬의 대부분은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섬에는 수많은 새 둥지가 놓여 있다.¹³⁾

(2) 역사 및 배경

왕을 대신하여 왕정을 처리하던 스페인 여왕 이사벨 Isabel 2세는 군사력에 크게 치중했고 이는 스페인을 당시 세계에서 해군력이 네 번째로 강한 나라로 만들었다. 이사벨 2세 정권의 강한 해군력은 1850년대와 1860년대에

13 http://en.wikipedia.org/wiki/Chincha_Islands

걸쳐 모로코, 인도차이나, 멕시코, 도미니카 공화국 등 식민지를 넓혀 나갔다.

1862년 말 이사벨 2세는 재정적 이득과 함께 스페인 국민이 아메리카에 합법적으로 살 수 있게 하려는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과학 탐사대'라는 명목으로 함대를 남아메리카 해안으로 보냈다. 그 탐사대는 핀손 Luis Hernandez Pinzon 해군 대장의 지휘하에 세 척의 전투함으로 이루어졌다. 1863년 4월 18일에 칠레의 발파라이소 Valparaiso 항구에 도착했고, 두 나라 간의 비교적 우호적인 외교 관계로 인해 칠레는 그들을 환대하며 맞이하였다.¹⁴⁾ 칠레를 떠나 페루로 이동한 스페인은 당시 페루의 1821년 독립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페루는 카야오 Callao 항으로 들어오는 스페인 탐사대를 우호적으로 맞이하였다. 탐사대는 카야오 항구에 몇 주간 머문 후 켈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로 향했는데, 바로 이 시점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1863년 8월 4일 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페루 람바예케 Lambayeque 주에 있는 탈람보 아시엔다 Talambo hacienda에서 발생하였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지역 사람 40여 명과 그곳에 살고 있는 스페인 사람 2명 간에 싸움이 발생했고, 그 결과 스페인 사람 1명이 죽고 4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그 소식은 탐사대 핀손 대장에게 전해졌고, 11월 13일 급기야 스페인은 샌프란시스코로 향했던 뱃머리를 돌려 페루로 되돌아왔다. 핀손 장군은 페루 정부가 공식 사과하고 피해 입은 스페인 시민에게 보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페루 정부는 이 사건이 국내 치안과 관련된 문제로서 외교적 사건으로 보기 힘들며 국내 사법 절차에 따라 다루어야 한다고 여겨 사과를 거부했는데, 이에 대해 스페인 정부는 독립전쟁 시 발생한 예전 페루의 빚

14 1840년 스페인은 칠레를 독립국가로 인정하였다.

상환까지 요구하면서 사태는 점점 심각한 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스페인은 페루 정부와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사레도 Eusebio de Salazar y Mazaredo를 파견하였다.

1864년 3월 마사레도는 왕실 대리인 Royal Commissary의 직함으로 페루에 갔는데, 이것은 페루 정부에 대한 의도적인 모욕이다. 왜냐하면 독립국가와 외교적 역할을 하기 위해 보내는 대사 ambassador라는 표현 대신 식민국가와 협상하기 위해 보내는 대리인 Commissary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마사레도와 페루의 외교부 장관 사이에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이미 모욕감을 느낀 페루 정부와의 협상은 실패하였다.

(3) 전개과정

1864년 4월 14일 스페인 탐사대가 페루 친차 섬을 정복했는데, 스페인은 보상을 거부하는 페루 정부에 대한 보복으로 페루산 구아노의 매장지인 친차 섬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스페인은 400명의 해군력으로 그 섬을 장악한 후 리에스트라 Ríaman Valle Riestra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스페인 국기를 게양하였다. 페루 정부 수입의 60%를 차지하는 이 섬을 장악하는 것은 스페인에게 중요한 협상 카드였던 것이다.

또한 스페인 함대는 페루 대부분의 주요 항구를 봉쇄하여 상업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이는 페루와 무역을 하던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불만을 사는 계기가 되었다.

이 봉쇄 기간에 스페인의 실화 accidental fire로 인해 트리운포 Triunfo에서 전쟁이 발발했고,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스페인 총리 나르바에스 Ramon Maria Narvaez는 핀손 대장을 해임하고 페루 출생인 중장 파레자 Juan Manuel Pareja를 책임자로 임명한 후, 함대의 전력을 증강하기 위해 네 척의 함대를

추가로 더 보냈다.

파레자 대장은 1864년 12월에 페루에 도착해 바로 페루 대통령의 특별 대리인인 비반코 Manuel Lgnacio de Vivanco 장군과 함께 협상을 시작했으며, 1865년 1월 27일 마드리드 Villa de Madrid 범선 위에서 비반코-파레자 협정 Vivanco-Pareja Treaty에 서명하였다. 페루의 국민 여론은 이 서명이 페루 국가의 명예를 손상시킨다고 여겼고, 의회는 그 협정에 비준하기를 거부하였다.

1865년 11월 7일 페제트 Juan Antonio Pezet 페루 대통령은 스페인에 대한 유화적 입장과 비반코-파레자 협정에 서명한 책임으로 정권에서 쫓겨났고, 부통령 칸세코 Pedro Diez Canseco 장군이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그 후 한 차례의 정권교체가 더 이루어졌으며, 민족운동가인 프라도 Mariano Ignacio Prado의 폭동으로 인해 새 정권이 들어섰는데, 새 정부는 칠레와의 결속을 선언하고 국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스페인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1865년 12월 5일 칠레와 페루는 스페인에 대항하는 동맹에 공식적으로 서명하고, 페루 의회의 비준을 통과하였다. 1866년 1월 14일 페루는 마침내 스페인에 전쟁을 선포하고, 페루 함대는 몬테로 Lizardo Montero 대장의 지휘하에 칠레 함대와 합류하였다. 에콰도르도 1866년 1월 30일 동맹에 합류하며 스페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멜가레호 Mariano Melgarejo 장군의 지휘하의 볼리비아군도 동맹에 참여하며 1866년 3월 22일 스페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였다. 페루의 주요 항구를 봉쇄한 스페인의 정책에 불만을 느낀 남아메리카 태평양 연안의 모든 항구 국가는 군사동맹을 맺고 스페인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연합된 함선들은 해군 소장 엔칼라다 Manuel Blanco Encalada의 지휘하에 당시 전쟁이 한참 일고 있던 아브타오 Abtao에 자리를 잡았다. 연합군과 스페인의 전투는 지속되었고, 1866년 1월 31일 스페인 함대는 발피라이소 항

구와 도시를 포격하여 불태웠으며, 칠레의 상업항선을 파괴하였다. 누네스 Mendez Nunez 대장은 발파라이소와 같이 실질적으로 방어력이 없는 항구만 포격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여 카야오 항구와 같이 군사력이 밀집된 항구를 공격하였다. 이 전투가 1866년 5월 2일의 카야오 전투 Battle of Callao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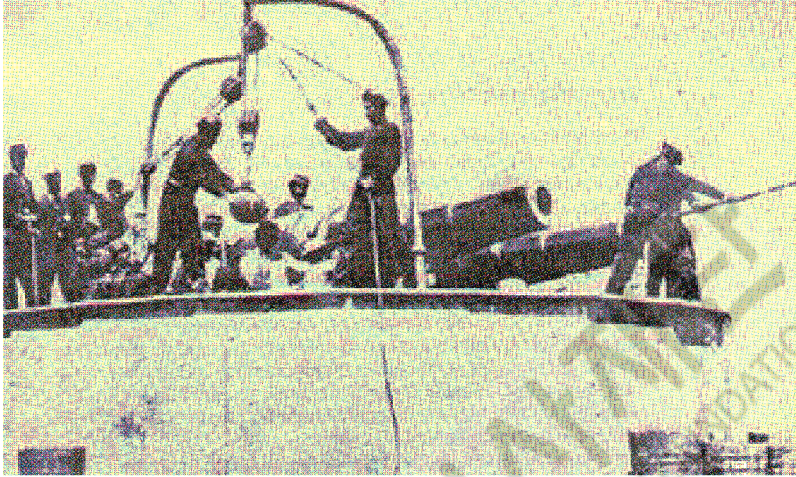
이 전투는 친차 섬 전쟁 동안에 스페인군과 페루, 칠레, 볼리비아, 그리고 에콰도르 연합군 간에 일어난 가장 큰 전투였다. 전투가 진행될수록 양측의 피해는 심각해졌다. 연합군의 집중 포격을 받은 스페인은 50여 명의 병사가 사망하고 83명이 부상당하였다. 페루 측도 대략 200여 명이 사망하고 부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스페인 군대는 카야오 항구에서부터 퇴각했고 그것이 양국 간 마지막 전쟁이 되었다.

(4) 해결 및 종결¹⁵⁾

스페인 군함의 도발에 대항한 페루와 그의 연합군은 1865년 2월 26일 파푸도 전투 Battle of Papudo, 1866년 2월 7일 아브타오 전투 Battle of Abtao, 그리고 1866년 5월 2일의 카야오 전투 등 세 번의 큰 전투를 치렀다. 그런데 이 중 마지막 전쟁인 카야오 항구의 전투에서 스페인은 카야오 도시에 크게 손실을 주지 못한 반면에 페루군은 스페인군에 적잖은 피해를 주었다. 또한 전쟁이 길게 지속되면서 스페인군은 많은 사상자와 함께 전력을 손실했고, 자연스럽게 카야오 항구에서 퇴각하였다.

결국 이 분쟁은 협상이나 제 3국의 중재로 해결되지 않고, 먼저 분쟁을 도발했던 스페인군의 단순포기로 종결되었다.

15 http://en.wikipedia.org/wiki/Battle_of_Callao



〈그림 4.5〉 카야오 전투의 페루군 모습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Chincha_Islands_War

5. 카렐리아와 페치모(Karelia & Petsamo)¹⁶⁾



(1) 개요

| | |
|------------|----------|
| 식민국가 | 러시아 |
| 피식민국가 | 핀란드 |
| 독립일 | 1917. 12 |
| 제 1차 분쟁시작일 | 1918. 04 |
| 제 1차 분쟁종료일 | 1920. 10 |
| 제 1차 분쟁도전국 | 핀란드 |

16 Calvert, Peter, eds.(2004), 앞의 책, pp. 292~296; 구동희·이정록(2005), 『세계의 분쟁지역』, 푸른길, 198~201쪽.

| | |
|--------------|----------|
| 제 1차 분쟁해결 방식 | 양자 간 합의 |
| 제 2차 분쟁시작일 | 1938. 08 |
| 제 2차 분쟁종료일 | 1940. 03 |
| 제 2차 분쟁도전국 | 러시아 |
| 제 2차 분쟁해결 방식 | 제3자 개입 |
| 제 3차 분쟁시작일 | 1941. 05 |
| 제 3차 분쟁종료일 | 1944. 09 |
| 제 3차 분쟁도전국 | 핀란드 |
| 제 3차 분쟁해결 방식 | 도전국 단순포기 |
| 제 4차 분쟁시작일 | 1941. 12 |
| 제 4차 분쟁종료일 | 1944. 09 |
| 제 4차 분쟁도전국 | 러시아 |
| 제 4차 분쟁해결 방식 | 제 3차 개입 |
| 제 5차 분쟁시작일 | 1945. 09 |
| 제 5차 분쟁종료일 | 1947. 02 |
| 제 5차 분쟁도전국 | 핀란드 |
| 제 5차 분쟁해결 방식 | 양자 간 합의 |
| 군사충돌 발생 횟수 | 4회 |

(2) 역사 및 배경

1323년 스웨덴 사절단으로 파견된 노브고로트 Novgorod가 맺은 뇌트버그 조약 Treaty of Nötheburg은 핀란드 만 Gulf of Finland 북쪽 기슭이 스웨덴의 통치권하에 있음을 재확인했으며, 이 조약으로 인해 스웨덴과 러시아 사이의 국경선이 정해졌는데 이는 카렐리아 지역을 둘로 나누게 만들었다. 스웨덴 지역의 카렐리아에는 11~12세기 페이펠Papal 교회에 의해 기독교로 개종한 핀란드인들이 정착했으며, 러시아 쪽 카렐리아는 대부분 카렐리아 사람들의 거주지가 되었다. 카렐리아 사람들은 핀란드어와 유사한 언어를 사용했지만 러시아 사람들로 인해 정통파 Orthodox로 개종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

아 문화에도 깊은 영향을 받았다. 1323년 당시 스웨덴과 러시아의 국경선은 핀란드인과 카렐리아인, 로마 가톨릭과 정통파로 나누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스웨덴의 핀란드 통치는 500년 동안 계속되었다.

17세기 말 강대국으로 성장한 스웨덴은 점차 영향력을 넓혀갔고 이는 주변 국가의 이익에 방해가 되곤 하였다. 잉그리아 Ingria 지역을 차지한 스웨덴은 러시아가 발트 해 Baltic Sea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봉쇄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는 덴마크, 폴란드와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 1700년에 스웨덴을 공격하였다. 대북진(大北進) 전쟁 Great North War으로 알려진 이 전쟁은 우시카우퉁키 조약 Treaty of Uusikaupunki의 체결과 함께 종결되었으나, 이 조약으로 인해 스웨덴은 서부 카렐리아와 비보르크 Vyborg 타운 북쪽까지 이르는 카렐리아 지역을 포함해 핀란드 만의 동부와 서부 연안에 이르는 광범위한 부분을 러시아에 빼앗겼다.

스웨덴은 1740년대의 모자전쟁 War of the Hats으로 불리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 빼앗긴 핀란드와 카렐리아 영토를 되찾으려고 했으나, 오히려 러시아가 핀란드의 퀴미 Kymi 지역과 비보르크의 북부와 서부지역까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고, 양국은 1743년 투르쿠 평화 조약 Peace Treaty of Turku을 맺었다.

그 후, 1807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Napoleon Bonaparte와 차르 알렉산더 Tsar Alexander 1세는 잉글랜드에 대항한 영토봉쇄 정책에 스웨덴을 강제 포함시키기로 결정했고, 결국 이에 불만을 품은 스웨덴은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1808년 하미나 평화 조약 Hamina Peace Treaty에 따라 핀란드의 전 영역이 자치 대공국 autonomous Grand Duchy으로서 제정 러시아에 편입되었다. 제정 러시아의 통치가 비엔나 의회에 인정되고 이는 한 세기 동안 지속되었다.

(3) 전개과정

500년간 스웨덴의 지배와 제정 러시아의 1세기 동안 통치 후, 핀란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1917년 독립하였다. 이후 제정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친볼셰비키 세력인 레즈 Reds와 독일의 지원을 받은 반볼셰비키 화이트 Whites는 핀란드 영토에서 새로운 볼셰비키 Bolshevik 정권의 존재 여부를 두고 다투었다. 독일은 서부에서 이 전투의 패배를 인정했지만, 핀란드 내에서 독일의 지원을 받은 화이트는 승리를 거두어 핀란드는 구소련과 함께 1920년 타르투 조약 Treaty of Tartu을 맺었다. 이는 핀란드의 독립을 재확인시켜주며 새로운 핀란드의 국경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1939년 8월 나치-구소련의 불가침 협정에서 핀란드만 구소련 영역의 영향권에 있음이 비밀리에 추가되었다. 스탈린 Stalin은 카렐리야 동부 지역을 양보하는 대가로 레닌그라드의 북부지역을 요구했으나 핀란드는 이를 거부했으며, 그 보복으로 구소련 군대의 기습공격을 받았다. 전쟁에서 패배한 핀란드는 1940년 3월 12일 모스크바 조약 Treaty of Moscow을 맺었고 애초에 구소련이 요구했던 영토보다 더 큰 지역을 빼앗겼다. 이 조약으로 인해 구소련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한고 Hango 반도를 임대 lease 할 권리를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로 가는 물자와 사람 수송 시 페차모 지방을 마음대로 지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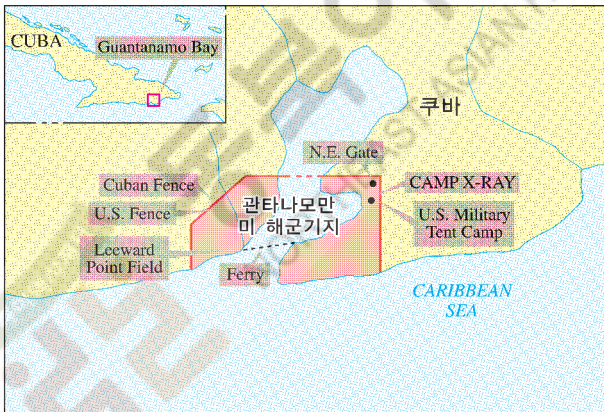
모스크바로의 계속적인 압박과 정치적 억압에 격분한 핀란드인들은 1941년 6월 독일-구소련 전쟁이 일어나자 독일군에 협력하여 대소 전쟁에 참전하였다. 전쟁은 구소련의 승리로 돌아갔고 1944년 9월 19일에 체결된 모스크바 조약의 휴전 협정과 함께 핀란드는 1940년보다 더욱 가혹한 구소련의 조건들을 받아들였다. 휴전 협정은 핀란드와 연합군 사이의 평화 조약에 따라 1947년 2월 확정되었다.

(4) 해결 및 종결

카렐리야 지역은 핀란드와 하나라는 의식을 강하게 지닌 채, 약 반세기 동안 카렐리야 자치공화국으로서 러시아에 편입되었다. 러시아와의 이질적인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카렐리야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독립된 공화국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구소련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소수 민족 문제를 안고 있는 러시아가 카렐리야의 독립을 허용할 것 같지는 않다. 카렐리야의 독립을 허용하면 다른 소수 민족들의 독립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렐리야인의 바람은 먼 훗날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6. 관타나모 만(Guantanamo¹⁷⁾ Bay)¹⁸⁾



17 관타나모(Guantanamo)라는 명칭은 타이노족(Taino, 콜롬비아 시대 이전 바하마의 토착민)들이 부르기 시작하였다.

18 Calvert, Peter eds.(2004), 앞의 책, pp.104 ~ 106.

(1) 개요

| | |
|------------|----------------------|
| 식민국가 | 미국 |
| 피식민국가 | 쿠바 |
| 독립일 | 1902. 05 |
| 분쟁시작일 | 1960. 09(쿠바 vs. 미국) |
| 분쟁종료일 | 진행 중 |
| 분쟁도전국 | 쿠바 |
| 분쟁해결 방식 | 진행 중 |
| 군사충돌 발생 횟수 | 0회 |



〈그림 4.6〉 관타나모 만 전경

출처 :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facility/guantanamobay.htm>

(2) 배경 및 역사

1898년 시작된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에서 산티아고 Santiago를 공격하던

미국의 함대는 그해 여름 태풍 시즌을 건지기 위해 관타나모의 항구로 은거하였다. 함대는 해군의 도움을 받아 정착했지만, 점점 내륙지역으로 들어오면서 거세지는 스페인 부대의 저항을 밀어내기 위해 미 해군은 쿠바 부대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이 지역이 후에 GTMO 혹은 Gitmo라고 축약해서 쓰이기도 하는 미국 해군 주둔지 관타나모 만이다.

미국의 승리로 돌아간 스페인과의 전쟁이 끝난 후, 미국 정부는 스페인으로부터 쿠바의 통치권을 이양받는다. 1903년 2월 미국은 쿠바의 첫 대통령인 미국 시민권자 팔마 Tomas Estrada Palma로부터 관타나모 만의 영원한 임대료를 제공한다. 쿠바-미국 협정 Cuban-American Agreement은 쿠바 공화국에게 관타나모 만의 근본적인 주권을 주고, 미국에게는 석탄 보급과 해군 주둔지에 대한 그 지역의 완전한 사법권과 관할권을 부여하였다. 1934년 다시 양국은 관타나모 만에 대한 쿠바-미국 협정을 재확인하고, 미화 2,000달러 가치의 금화로 지불하던 임대료를 미화 4,085달러로 수정하였다. 또한 1934년 조약은 양국이 쿠바-미국 조약을 철회하기로 합의하지 않거나 미국이 주둔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관타나모 만의 임대 계약을 무기한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이로써 관타나모 만은 냉전 시대 이후까지 공산주의 국가에 미군 주둔지가 존재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이 되었다.

(3) 전개과정

1959년 카스트로 Fidel Castro가 쿠바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관타나모 만을 미국에게 무기한 임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관타나모 만 지역 지주인 쿠바의 공산당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의 제52항을 들어 그 지역에 살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을 퇴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제52항에 따르면 “만약

조약이 무력 사용이나 위협으로 맺어진 경우에는 그 조약은 무효이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쿠바는 쿠바의 첫 헌법에 포함된 1901년 플랫 수정안 Platt Amendment이 이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미국은 쿠바 헌법 총회 Cuban Constitutional Convention에게 그 수정안을 삭제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한편, 미국이 쿠바의 독립을 승인한다는 조건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미국 부대가 쿠바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도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제4조항을 들어 1903년과 1934년 미국과 쿠바 사이에 있었던 조약과 같이 이미 존재하는 조약에는 제52항의 소급 적용이 금지된다고 주장하였다. 플랫 수정안은 1934년에 폐기되었으나 미국의 루스벨트 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이 쿠바의 군사 쿠데타로부터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29척의 전투함을 관타나모 만에 특파하면서 임대에 대한 재확인 차원의 조약이 체결되었다.

카스트로 대통령은 항의의 표시로 지불 수표 중 처음 한 장을 제외한 나머지 지불 수표의 현금화를 거부했으나, 미국은 첫 수표를 현금화한 것이 조약에 대한 승인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¹⁹⁾

(4) 해결 및 종결

아직 관타나모 만에 대한 양국의 분쟁은 해결되지 않았다. 현재 2개의 비행장 시설이 있으며 약 3,000명에 가까운 미군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 최근

19 1953~1959년 쿠바 혁명 이래로 카스트로 정부는 미국 정부가 지불한 수표 중 처음 한 장만 현금으로 바꾸고 나머지 수표는 모두 카스트로 사무실 책상 서랍에 고스란히 쌓아놓았다. 첫 수표를 현금화한 것은 단지 좌익 혁명의 혼란스러운 초창기 시절의 혼동에서 기인한 실수로 전해진다.

관타나모 만에 대한 논쟁은 새로운 조약의 규정 없이 미국이 그곳에 수백 명의 모슬렘을 가두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4월 22일 샌프란시스코 신문 *San Francisco Chronicle*에 실린 관타나모 만 미국 주둔지에 대한 기사에서 1934년 조약이 미국에게 허락한 것은 석탄 보급과 해군 활동에 대한 권한인데, 그 지역을 적의 전투원이나 전쟁 범죄자를 가두는 감옥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조약에서 상업적 산업이나 어떤 기업 활동도 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주둔지에는 6개의 페스트푸드점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림 4.7〉 관타나모 섬의 미군 주둔지

출처 :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facility/guantanamobay.htm>



〈그림 4.8〉 관타나모 만 수용소

출처 : <http://www.msnbc.msn.com/id/6876549/>

● 1903 쿠바-미국 조약(Cuban-American Treaty, 1903)

Signed by the President of Cuba, February 16, 1903; Sign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ebruary 23, 1903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Cuba for the lease (subject to terms to b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to the United States of lands in Cuba for coaling and naval station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Cuba, being desirous to execute fully the provisions of Article VII of the Act of Congress approved March second, 1901, and of Article VII of the Appendix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Cuba promulgated on the 20th of May, 1902, which provide:

“ARTICLE VII. To enable the United States to maintain the independence of Cuba, and to protect the people thereof, as well as for its own defense, the Cuban

Government will sell or lease to the United States the lands necessary for coaling or naval stations, at certain specified points, to be agreed upon with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ve reached an agreement to that end, as follows:

ARTICLE I

The Republic of Cuba hereby leases to the United States, for the time required for the purposes of coaling and naval stations, the following described areas of land and water situated in the Island of Cuba:

제 1조항

쿠바 공화국은 미군의 석탄 공급과 해군 기지 목적에 필요한 기간에 쿠바에 위치한 아래의 영토와 영해를 미국에게 임대한다.

1st. In Guantanamo (see Hydrographic Office Chart 1857). From a point on the south coast, 4.37 nautical miles to the eastward of Windward Point Light House, a line running north (true) a distance of 4.25 nautical miles;

From the northern extremity of this line, a line running west (true), a distance of 5.87 nautical miles;

From the western extremity of this last line, a line running southwest (true) 3.31 nautical miles;

From the southwestern extremity of this last line, a line running south (true) to the seacoast.

This lease shall be subject to all the conditions named in Article II of this agreement.

2nd. In Northwestern Cuba (see Hydrographic Office Chart 2036).

In Bahia Honda (see Hydrographic Office Chart 520b).

All that land included in the peninsula containing Cerro del Morrillo and Punta

del Carenero situated to the westward of a line running south (true) from the north coast at a distance of thirteen hundred yards east (true) from the crest of Cerro del Morrillo, and all the adjacent waters touching upon the coast line of the above described peninsula and including the estuary south of Punta del Carenero with the control of the headwaters as necessary for sanitary and other purposes.

And in addition all that piece of land and its adjacent waters on the western side of the entrance to Bahia Honda including between the shore line and a line running north and south (true) to low water marks through a point which is west (true) distant one nautical mile from Pta. del Cayman.

ARTICLE II

The grant of the foregoing Article shall include the right to use and occupy the waters adjacent to said areas of land and water, and to improve and deepen the entrances thereto and the anchorages therein, and generally to do any and all things necessary to fit the premises for use as coaling or naval stations only, and for no other purpose. with the present treaty.

제 2조항

전술된 조항의 승인은 언급된 영토와 영해 부근의 바다를 사용하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출입구를 넓히거나 깊게 하는 등 다른 목적이 아닌 석탄 보급과 해군 기지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전제에 부합하는 모든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Vessels engaged in the Cuban trade shall have free passage through the waters included within this grant.

ARTICLE III

While on the one hand the United States recognizes the continuance of the ultimat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Cuba over the above described areas of land and water, on the other hand the Republic of Cuba consents that during the period of the occupation by the United States of said areas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the United States shall exercise complete jurisdiction and control over

and within said areas with the right to acquire (under conditions to be hereafter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for the public purposes of the United States any land or other property therein by purchase or by exercise of eminent domain with full compensation to the owners thereof.

Done in duplicate at Habana, and signed by the President of the
[SEAL] Republic of Cuba this sixteenth day of February, 1903.

T. ESTRADA PALMA

Sign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twenty-third of February, 1903.

[SEAL]Vessels engaged in the Cuban trade shall have free passage through the waters included within this grant.

ARTICLE III

While on the one hand the United States recognizes the continuance of the ultimat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Cuba over the above described areas of land and water, on the other hand the Republic of Cuba consents that during the period of the occupation by the United States of said areas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the United States shall exercise complete jurisdiction and control over and within said areas with the right to acquire (under conditions to be hereafter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for the public purposes of the United States any land or other property therein by purchase or by exercise of eminent domain with full compensation to the owners there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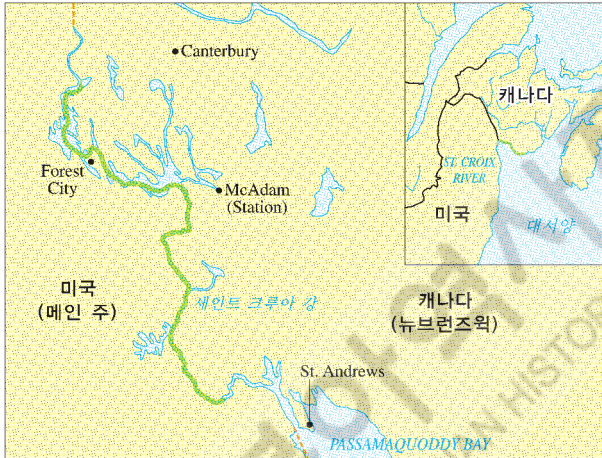
Done in duplicate at Habana, and signed by the President of the
[SEAL] Republic of Cuba this sixteenth day of February, 1903.

T. ESTRADA PALMA

Sign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twenty-third of February, 1903.

[SEAL] THEODORE ROOSEVELT
THEODORE ROOSEVELT

7. 세인트크루아(St. Croix) 강²¹⁾



(1) 개요

| | |
|------------|---------------------|
| 식민국가 | 영국 |
| 피식민국가 | 미국 |
| 독립일 | 1783. 09 |
| 분쟁시작일 | 1816. 01(미국 vs. 영국) |
| 분쟁종료일 | 1842. 05 |
| 분쟁도전국 | 영국 |
| 분쟁해결 방식 | 양자 간 합의 |
| 군사충돌 발생 횟수 | 1회 |

²¹⁾ 이 분쟁은 학자에 따라 Northern Boundary Dispute 혹은 Aroostook River 분쟁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림 4.9〉 세인트크루아 강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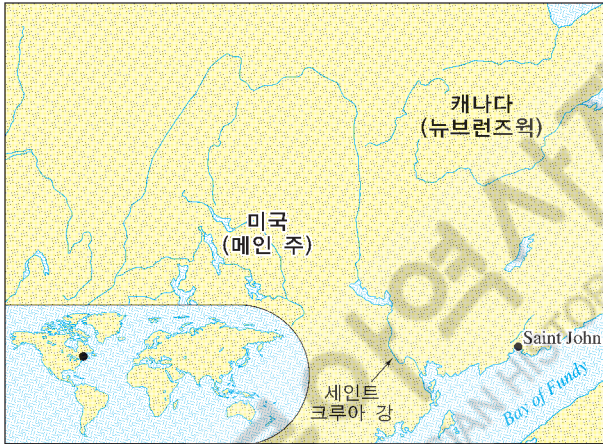
출처 : <http://www.greystonecalaisme.com>

(2) 역사 및 배경²²⁾

미국 혁명 America Revolution을 종식시킨 1783년의 조약은 세인트크루아 강에서 대서양과 세인트로렌스 St. Lawrence 강 지류를 나누는 고지까지를 미국의 북동쪽 경계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선의 애매한 묘사로 인해 국경 경계에 대한 분쟁은 거의 60년 이상 진행되었다. 세인트크루아 강의 존재는 1794년 제이 조약 Jay's Treaty에 따라 구성된 의원회가 1798년에 구명했으나 대서양과 세인트로렌스 강 사이에는 산맥이 없어 명확한 경계 구분에 혼란이 있었다. 결국 1814년 겐트 조약 Treaty of Ghent에 따라 이 문제는 중재에 들어가게 되었다. 네덜란드 왕은 중재자로서 1831년에 세인

22 <http://www.encyclopedia.com/doc/1E1-NEboundD.html>

트존 강 St. John River을 국경 경계선으로 지정했으나 미국은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1839년 어루스톡 전투 Aroostook War로 이어진다. 이 전쟁은 메인 Maine과 뉴브런즈윅 New Brunswick 거주자들 간의 분쟁으로서 미국과 영국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3) 전개과정

1838년 메인과 뉴브런즈윅은 어루스톡 강 유역을 포함하는 지역의 영토가 미국과 캐나다 경계의 정해지지 않은 채로 있자 서로의 주권을 주장하였다. 어루스톡 강 유역 농경지역에 관심이 있던 메인 지역 농부들은 뉴브런즈윅에서 벌목을 위해 사람을 보내자 군대를 동원해 쫓아내려고 하였다. 뉴브런즈윅은 영국 상비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는 대규모 전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었다. 1839년 3월 미국은 협상을 위해 스콧 장군을 그 지역에 파견했고, 1839년 3월에 협상이 이루어져 분쟁은 일단락되었다.

(4) 해결 및 종결

어루스텍 전투와 같은 북쪽 경계를 둘러싸고 일어난 여러 분쟁은 1842년 미국을 대표한 외무부 장관 웹스터 Daniel Webster와 영국의 에슈버턴 Ashburton 남작 1세 사이의 웹스터-에슈버턴 조약 Webster-Ashburton Treaty으로 종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인해 어루스텍 강 유역을 포함하는 약 1만 7500km²의 분쟁지역이 미국에게 주어졌으나, 세인트존 강을 비롯한 여러 수로는 양국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 1842 웹스터-에슈버턴 조약(Webster-Ashburton Treaty, 1842)

Whereas certain portions of the line of boundar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British Dominions in North America, described in the second article of the Treaty of Peace of 1783, have not yet been ascertained and determined, notwithstanding the repeated attempts which have been heretofore made for that purpose, and whereas it is now thought to be for the interest of both Parties, that, avoiding further discussion of their respective rights, arising in this respect under the said Treaty, they should agree on a conventional line in said portions of the said boundary, such as may be convenient to both Parties, with such equivalents and compensations, as are deemed just and reasonable: – And whereas by the Treaty concluded at Cheat, on the 24th day of December, 1814,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His Britannic Majesty, an article was agreed to and inserted of the following tenor, viz, “Art. 10. – whereas the Traffic in Slaves is irreconcilable with the principles of humanity and justice: And whereas both His Majesty and the United States are desirous of continuing their efforts to promote its entire abolition, it is hereby agreed that both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use their best endeavors to accomplish so desirable an object”: and whereas, notwithstanding the laws which have at various times been passed by the two

Governments, and the efforts made to suppress it, that criminal traffic is still prosecuted and carried on: And where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Her Majesty the Queen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are determined that, so far as may be in their power, it shall be effectually abolished. And whereas it is found expedient for the better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the prevention of crime within the Territories and jurisdiction of the two Parties, respectively, that persons committing the crimes hereinafter enumerated, and being fugitives from justice, should, under certain circumstances, be reciprocally delivered up: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Her Britannic Majesty, having resolved to treat on these several subjects, have for that purpose appointed their respective Plenipotentiaries to negotiate and conclude a Treaty, that is to sa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s, on his part, furnished with full powers, Daniel Webster, Secretary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and Her Majesty the Queen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has, on her part, appointed the Right honorable Alexander Lord Ashburton, a peer of the said United Kingdom, a member of Her Majesty's most honorable Privy Council, and Her Majesty's Minister Plenipotentiary on a Special Mission to the United States; who, after a reciprocal communication of their respective full powers, have agreed to and signed the following articles:

ARTICLE I.

It is hereby agreed and declared that the line of boundary shall be as follows: Beginning at the monument at the source of the river St. Croix, as designated and agreed to by the Commissioners under the fifth article of the Treaty of 1794,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thence, north, following the exploring line run and marked by the Surveyors of the two Governments in the years 1817 and 1818, under the fifth article of the Treaty of Ghent to its intersection with the river St. John, and to the middle of the channel thereof: thence, up the middle of the main channel of the said river se John, to the mouth of the river se Francis; thence up the middle of the channel of the said river

St. Francis, and of the lakes through which it flows, to the outlet of the Lake Pohenagamook; thence, southwesterly, in a straight line to a point on the northwest branch of the river se John, which point shall be ten miles distant from the mainbranch of the se John, in a straight line, and in the nearest direction; but if the said point shall be found to be less than seven miles from the nearest point of the summit or crest of the highlands that divide those rivers which empty themselves into the river Saint Lawrence from those which fall into the river Saint John, then the said point shall be made to recede down the said northwest branch of the river se John, to a point seven miles in a straight line from the said summit or crest; thence, in a straight line, in a course about south eight degrees west, to the point where the parallel of latitude of $46^{\circ} 5'$ north, intersects the southwest branch of the St. John's; thence, southerly, by the said branch, to the source thereof in the highlands at the Metjarmette Portage; thence, down along the said highlands which divide the waters which empty themselves into the river Saint Lawrence from those which fall into the Atlantic Ocean, to the head of Hall's Stream; thence, down the middle of said Stream, till the line thus run intersects the old line of boundary surveyed and marked by Valentine and Collins previously to the year 1774, as the 45th degree of north latitude, and which has been known and understood to be the line of actual division between the States of New York and Vermont on one side, and the British Province of Canada on the other; and, from said point of intersection, west along the said dividing line as heretofore known and understood, to the Iroquois or se Lawrence river.

ARTICLE VI.

It is furthermore understood and agreed, that for the purpose of running and tracing those parts of the line between the source of the St. Croix and the St. Lawrence river, which will require to be run and ascertained, and for marking the residue of said line by proper monuments on the land, two Commissioners shall be appointed, one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thereof, and one by Her Britannic Majesty: and the said

commissioners shall meet at Bangor, in the State of Maine, on the first day of May next, or as soon thereafter as may be, and shall proceed to mark the line above described, from the source of the St. Croix to the river St. John; and shall trace on proper maps the dividing line along said river, and along the river se Francis, to the outlet of the Lake Pohenagamook; and from the outlet of the said Lake, they shall ascertain, fix, and mark by proper and durable monuments on the land, the line described in the first article of this Treaty; and the said Commissioners shall make to each of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a joint report or declaration, under their hands and seals, designating such line of boundary, and shall accompany such report or declaration with maps certified by them to be true maps of the new boundary.

ARTICLE VII.

It is further agreed, that the channels in the river St. Lawrence, on both sides of the Long Sault Islands and of Barnhart Island; the channels in the river Detroit, on both sides of the Island Bois Blanc, and between that Island and both the American and Canadian shores; and all the several channels and passages between the various Islands lying near the junction of the river St. Clair with the lake of that name, shall be equally free and open to the ships, vessels, and boats of both Parties.

ARTICLE VIII.

The Parties mutually stipulate that each shall prepare, equip, and maintain in service, on the coast of Africa, a sufficient and adequate squadron, or naval force of vessels, of suitable numbers and descriptions, to carry in all not less than eighty guns, to enforce, separately and respectively, the laws rights and obligations of each of the two countries, for the suppression of the Slave Trade, the said squadrons to be independent of each other, but the two Governments stipulating, nevertheless, to give such orders to the officers commanding their respective forces, as shall enable them most effectually to act in concert and cooperation,

upon mutual consultation, as exigencies may arise, for the attainment of the true object of this article; copies of all such orders to be communicated by each Government to the other respectively.

ARTICLE IX.

Whereas, notwithstanding all efforts which may be made on the coast of Africa for Suppressing the Slave Trade, the facilities for carrying on that traffic and avoiding the vigilance of cruisers by the fraudulent use of flags, and other means, are so great, and the temptations for pursuing it, while a market can be found for Slaves, so strong, as that the desired result may be long delayed, unless all markets be shut against the purchase of African negroes, the Parties to this Treaty agree that they will unite in all becoming representations and remonstrances, with any and all Powers within whose dominions such markets are allowed to exist; and that they will urge upon all such Powers the propriety and duty of closing such markets effectually at once and forever.

ARTICLE X.

It is agreed that the United States and Her Britannic Majesty shall, upon mutual requisitions by them, or their Ministers, Officers, or authorities, respectively made, deliver up to justice, all persons who, being charged with the crime of murder, or assault with intent to commit murder, or Piracy, or arson, or robbery, or Forgery, or the utterance of forged paper, committ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either, shall seek an asylum, or shall be found, within the territories of the other: Provided, that this shall only be done upon such evidence of criminality as, according to the laws of the place where the fugitive or person so charged, shall be found, would justify his apprehension and commitment for trial, if the crime or offense had there been committed: And the respective Judges and other Magistrates of the two Governments, shall have power, jurisdiction, and authority, upon complaint made under oath, to issue a warrant for the apprehension of the fugitive or person so

charged, that he may be brought before such Judges or other Magistrates, respectively, to the end that the evidence of criminality may be heard and considered; and if, on such hearing, the evidence be deemed sufficient to sustain the charge it shall be the duty of the examining Judge or Magistrate, to certify the same to the proper Executive Authority, that a warrant may issue for the surrender of such fugitive. The expense of such apprehension and delivery shall be borne and defrayed by the Party who makes the requisition, and receives the fugitive.

ARTICLE XI.

The eighth article of this Treaty shall be in force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of the exchange of the ratifications, and afterwards until one or the other Party shall signify a wish to terminate it. The tenth article shall continue in force until one or the other of the Parties shall signify its wish to terminate it, and no longer.

ARTICLE XII.

The present Treaty shall be duly ratified, and the mutual exchange of ratifications shall take place in London,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hereof, or earlier if possible.

In Faith whereof, we, the respective Plenipotentiaries, have signed this Treaty, and have hereunto affixed our Seals.

Done, in duplicate, at Washington, the ninth day of August, Anno Domini one thousand eight hundred and forty-two.

DAN WEBSTER [Seal]

ASHBURTON [Seal]

8. 오리건 지역 분쟁(Oregon Country dispute)²³⁾



(1) 개요

| | |
|------------|----------------------|
| 식민국가 | 영국 |
| 피식민국가 | 미국 |
| 독립일 | 1783. 09 |
| 분쟁시작일 | 1816. 01 (미국 vs. 영국) |
| 분쟁종료일 | 1846. 07 |
| 분쟁도전국 | 영국 |
| 분쟁해결 방식 | 양자 간 합의 |
| 군사충돌 발생 횟수 | 1회 |

²³ http://en.wikipedia.org/wiki/Oregon_boundary_dispute

북쪽은 워싱턴 주, 동쪽은 아이다호 주, 남쪽은 캘리포니아 주, 네바다 주와 접하고, 서쪽은 태평양과 마주한다. 산이 많아서 태평양 연안 근처에 해안산맥이 남북으로 뻗고, 그 내륙 쪽에도 캐스캐이드 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다. 1792년 미국인 그레이 Robert Gray가 이곳에 당도한 이래 미국인과 영국인의 탐험과 식민지배가 시작되었다. 1818년 미국과 영국의 공유영토가 되었다가 1846년의 국경 협정으로 미국 땅이 되었다. 그리고 1859년에 미합중국의 33번째 주가 되었다.



(2) 역사 및 배경

오리건 지역 분쟁은 미국이 북아메리카 북서부 오리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지역은 영국에게는 허드슨 베이 회사의 모피 무역 구획으로서 컬럼비아 지역Columbia District으로 알려져 있었다. 문제가 되는 지역은 콘티넨탈 디바이드Continental Divide의 서쪽에 놓여 있는 지역으로, 남쪽으로 위도 42도와 북쪽으로 54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 양쪽 모두 그곳의 지리적·상업적 이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스페인과 함께 맺은 조약으로부터 오리건 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다.

1818년 미국과 영국 사이의 협약 Convention of 1818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조항 III에 의거하여 영국과 미국은 결국 이 지역이 공동소유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으나, 이후 영토문제와 조약에 관한 어떠한 결정에도 난색을 표명하였다. 차후 몇십 년 동안 국경선 타협에 대한 협상은 계속 실패로 돌아갔고, 분쟁은 영국과 미국 사이의 지리적 외교에 점점 더 중요한 것이 되었다.

(3) 전개과정

이 지역에서 1840년대까지 미국의 주요 경제활동을 담당하던 곳으로는 주로 프랑스계 캐나다인 French Canadian이 고용된 컬럼비아 Columbia 강 입구 포트 에스토리아 Fort Astoria에 위치한 보스턴 소유의 모피 교역소와 캐스케이즈 Cascades 동부의 휘트먼 선교단 Whitman Mission, 윌라메트 협곡 Willamette valley의 감리교 선교단 Methodist Mission, 오늘날 소비 Sauvie로 불리는 섬의 포트 윌리엄 Fort William, 어빙 영 Ewing Young 소유의 제재소, 1834년에 지어진 제분소, 1837년에 건립된 윌라메트 가축 회사 Willamette Catife

Company 등이 있었으며, 해상에서는 무역선이 계속 운행되고 있었다.

반면, 영국의 통치는 그 지역 사람들과 무역을 하는 허드슨 베이 회사가 발행하는 인가서 형태와 HBC의 다른 모피 무역 지역인 뉴칼레도니아 New Caledonia에서 서쪽으로 컬럼비아 강 유역까지 늘어서 있는 무역상들의 교역소 네트워크로 유지되었다. HBC의 전체 지역을 총괄하는 본부는 포트 밴쿠버 Fort Vancouver, 오늘날의 워싱턴 주 밴쿠버에 건립되었는데, 이곳은 HBC에 고용된 사람들이 다른 종족과 결혼하여 생긴 혼혈아를 비롯하여 프랑스계 캐나다인, 하와이인 그리고 이로쿼이족 Iroquois 사람들을 포함하는 혼합인종의 식민지로 번성하였다.

본격적인 분쟁은 이 지역에 미국인 이주자의 수가 1840년대에 갑자기 늘어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844년에 미국의 민주당은 미국이 오리건 전 지역에 합법적인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제임스 포크는 1844년 선거에서 당선되었지만, 미국 행정부에서 이전 제안과 같은 49도선 49th parallel을 경계로 하려는 타협을 시도하였다. 미국과 영국 사이의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디애나 주의 해니건 Edward Allen Hannegan 상원의원과 같은 제국주의자들은 민주당이 선거에서 공약했듯이 북쪽으로 54도 40분까지 미국의 영토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54도 40분 아니면 전쟁!” Fifty-Four Forty or Fight!이라는 슬로건을 만들 정도로 상황은 극에 달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당시 텍사스 주의 영입을 놓고 멕시코와 대치 중이었기 때문에 포크 정권의 오리건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두 전쟁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다.

(4) 해결 및 종결

멕시코와의 전쟁이 발발하기 바로 직전에 미국은 두 전쟁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오리건 주 경계선에 대한 기존 입장으로 돌아와 49도선을 경계로 하는 타협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이 협상은 1846년 오리건 조약(Oregon Treaty)을 통해 공식적으로 맺어졌으며, 그 후 49도선은 미국과 캐나다를 나누는 국경선으로 남게 되었다.

● 1846 오리건 조약(Oregon Treaty 1846)²⁴⁾

공식적으로 워싱턴 조약(Treaty of Washington)으로도 알려져 있는 오리건 조약은 영국과 미합중국 사이에 1846년 6월 15일 워싱턴 주에서 체결된 양자 간 조약이다. 이는 1818년 조약에 의거하여 미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점유했던 오리건 지역에 대한 두 국가 간의 영유권분쟁을 마무리 짓는 조약이다.

- 주요 선적 해협인 위치가 다르므로, 영국과 미국은 같은 섬에 정착할 수 있다.
- 49도선 북쪽 위도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해는 두 국가 모두에게 허용된다.
- 푸젯 사운드 농업 회사(Puget's Sound Agricultural Company : 허드슨 베이 회사의 자회사)는 컬럼비아 강 북부지역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지만, 만약 미국이 요구하면 포기한 재산만큼 보상을 받는다.
- 허드슨 베이 회사의 재산권과 새로운 국경의 남쪽 지역에 대한 영국 국민의 권리는 존중된다.

24 본서의 산후안 섬 분쟁 부분에 수록된 '1846 오리건 조약' 전문 참조.



● 1818년 미국과 영국 사이의 협약 (Convention of 1818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His Majesty The King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desirous to cement the good Understanding which happily subsists between them, have, for that purpose, named their respective Plenipotentiaries, that is to sa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his part, has appointed, Albert Gallatin, Their Envoy Extraordinary and Minister Plenipotentiary to the Court of France; and Richard Rush, Their Envoy Extraordinary and Minister Plenipotentiary to the Court of His Britannic Majesty: And His Majesty has appointed The Right Honorable Frederick John Robinson, Treasurer of His Majesty's Navy, and President of the Committee of Privy Council for Trade and Plantations; and Henry Goulburn Esquire, One of His Majesty's Under Secretaries of State: Who, after having exchanged their respective Full Powers, found to be in

due and proper Form, have agreed to and concluded the following Articles.

ARTICLE I.

Whereas differences have arisen respecting the Liberty claimed by the United States for the Inhabitants thereof, to take, dry, and cure Fish on certain Coasts, Bays, Harbours, and Creeks of His Britannic Majesty's Dominions in America, it is agreed between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hat the Inhabitants of the said United States shall have for ever, in common with the Subjects of His Britannic Majesty, the Liberty to take Fish of every kind on that part of the Southern Coast of Newfoundland which extends from Cape Ray to the Rameau Islands, on the Western and Northern Coast of Newfoundland, from the said Cape Ray to the Quirpon Islands on the Shores of the Magdalen Islands, and also on the Coasts, Bays, Harbours, and Creeks from Mount Joly on the Southern Coast of Labrador, to and through the Streights of Belleisle and thence Northwardly indefinitely along the Coast, without prejudice however, to any of the exclusive Rights of the Hudson Bay Company: and that the American Fishermen shall also have liberty for ever, to dry and cure Fish in any of the unsettled Bays, Harbours, and Creeks of the Southern part of the Coast of Newfoundland hereabove described, and of the Coast of Labrador; but so soon as the same, or any Portion thereof, shall be settled, it shall not be lawful for the said Fishermen to dry or cure Fish at such Portion so settled, without previous Agreement for such purpose with the Inhabitants, Proprietors, or Possessors of the Ground. And the United States hereby renounce for ever, any Liberty heretofore enjoyed or claimed by the Inhabitants thereof, to take, dry, or cure Fish on, or within three marine Miles of any of the Coasts, Bays, Creeks, or Harbours of His Britannic Majesty's Dominions in America not included within the above mentioned Limits; provided however, that the American Fishermen shall be admitted to enter such Bays or Harbours for the purpose of Shelter and of repairing Damages therein, of purchasing Wood, and of obtaining Water, and for no other purpose whatever. But they shall be under such Restrictions as may be necessary to prevent their taking, drying or

curing Fish therein, or in any other manner whatever abusing the Privileges hereby reserved to them.

ARTICLE II.

It is agreed that a Line drawn from the most North Western Point of the Lake of the Woods, along the forty Ninth Parallel of North Latitude, or, if the said Point shall not be in the Forty Ninth Parallel of North Latitude, then that a Line drawn from the said Point due North or South as the Case may be, until the said Line shall intersect the said Parallel of North Latitude, and from the Point of such Intersection due West along and with the said Parallel shall be the Line of Demarcation between the Territori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ose of His Britannic Majesty, and that the said Line shall form the Northern Boundary of the said Territori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Southern Boundary of the Territories of His Britannic Majesty, from the Lake of the Woods to the Stony Mountains.

ARTICLE III.

It is agreed, that any Country that may be claimed by either Party on the North West Coast of America, Westward of the Stony Mountains, shall, together with it's Harbours, Bays, and Creeks, and the Navigation of all Rivers within the same, be free and open, for the term of ten Years from the date of the Signature of the present Convention, to the Vessels, Citizens, and Subjects of the Two Powers: it being well understood, that this Agreement is not to be construed to the Prejudice of any Claim, which either of the Two High Contracting Parties may have to any part of the said Country, nor shall it be taken to affect the Claims of any other Power or State to any part of the said Country; the only Object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in that respect, being to prevent disputes and differences amongst Themselves.

제3조항

이 협정이 사인되는 날로부터 10년 동안 미국의 북서 해안과 서쪽으로 뻗은 산맥들과 이곳의 항구, 만, 지류를 포함해 동일 지역 내에 있는 모든 강의 항해와 관련하여 한

국가라도 권리를 주장한 모든 지역을 양국의 선박과 국민들에게 제한 없이 개방할 것에 동의한다.

ARTICLE IV.

All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to regulate the Commerce between the Territorie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His Britannic Majesty” concluded at London on the third day of July in the Year of Our Lord One Thousand Eight Hundred and Fifteen, with the exception of the Clause which limited it's duration to Four Years, & excepting also so far as the same was affected by the Declaration of His Majesty respecting the Island of st Helena, are hereby extended and continued in force for the term of ten Years from the date of the Signature of the present Convention, in the same manner, as if all the Provisions of the said Convention were herein specially recited.

ARTICLE V.

Whereas it was agreed by the first Article of the Treaty of Ghent, that “All Territory, Places, and Possessions whatsoever taken by either Party from the other during the War, or which may be taken after the signing of this Treaty, excepting only the Islands hereinafter mentioned, shall be restored without delay; and without causing any destruction, or carrying away any of the Artillery or other public Property originally captured in the said Forts or Places which shall remain therein upon the Exchange of the Ratifications of this Treaty, or any Slaves or other private Property”; and whereas under the aforesaid Article, the United States claim for their Citizens, and as their private Property, the Restitution of, or full Compensation for all Slaves who, at the date of the Exchange of the Ratifications of the said Treaty, were in any Territory, Places, or Possessions whatsoever directed by the said Treaty to be restored to the United States, but then still occupied by the British Forces, whether such Slaves were, at the date aforesaid, on Shore, or on board any British Vessel lying in Waters within the Territory or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whereas differences have arisen, whether, by

the true intent and meaning of the aforesaid Article of the Treaty of Ghent the United States are entitled to the Restitution of, or full Compensation for all or any Slaves as above described,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hereby agree to refer the said differences to some Friendly Sovereign or State to be named for that purpose; and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further engage to consider the decision of such Friendly Sovereign or State, to be final and conclusive on all the Matters referred.

ARTICLE VI.

This Convention, when the same shall have been duly ratifi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ir Senate, and by His Britannic Majesty, and the respective Ratifications mutually exchanged, shall be binding and obligatory on the said United States and on His Majesty; and the Ratifications shall be exchanged in Six Months from this date, or sooner, if possible.

In witness whereof the respective Plenipotentiaries have signed the same, and have "hereunto affixed the Seal of their Arms.

Done at London this Twentieth day of October, in the Year of Our Lord One Thousand Eight Hundred and Eighteen.

ALBERT GALLATIN [Seal]

RICHARD RUSH. [Seal]

FREDERICK JOHN ROBINSON [Seal]

HENRY GOULBURN [Seal]

9.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1) 개요

| | |
|------------|-----------------------|
| 식민국가 | 영국 |
| 피식민국가 | 아일랜드 |
| 독립일 | 1922. 12 |
| 분쟁시작일 | 1922. 12(아일랜드 vs. 영국) |
| 분쟁종료일 | 1998. 05 |
| 분쟁도전국 | 아일랜드 |
| 분쟁해결 방식 | 제 3자 개입 |
| 군사충돌 발생 횟수 | 0회 |

북아일랜드는 영국 연합 왕국의 일부로서 아일랜드의 북동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전체의 약 6분의 1을 차지하는 1만 4139km² 크기의 지역으로 얼스터 Ulster 지방의 9개 주 중 6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연합 왕국을 구성하는 4개의 본국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중 하나로 여기고 있으나, 이러한 시각에는 북아일랜드의 헌법상 지위를 고려했을 때 논쟁의 여지가 있다. 아일랜드의 나머지 지역은 아일랜드 공화국 Republic of Ireland으로 하나의 주권국가를 이루고 있다.²⁵⁾

(2) 역사 및 배경²⁶⁾

12세기 중엽 영국에서는 헨리 2세가 왕위에 올랐다. 1171년 헨리 2세가 아일랜드에 침입한 이후, 13세기 중엽까지 아일랜드의 4분의 3은 영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아일랜드에 진출한 영국의 귀족층도 켈트 인과 결합하여 아일랜드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16세기 초에 헨리 8세가 등장하면서 크게 바뀌었다. 그는 영국 교회를 교황으로부터 분리시켜 국왕이 수장을 맡는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다. 헨리 8세는 이를 아일랜드에도 강요하고, 이에 반항하는 켈트 족장이나 아일랜드화된 앵글로색슨계 귀족의 영지를 몰수하는 등 아일랜드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였다. 그 후 아일랜드에서는 북부의 얼스터 지방을 중심으로 영국에 대한 반란이 자주 일어났다.

17세기 초 영국은 북부의 얼스터 지방에 개신교도들을 대량으로 이주시켰다. 따라서 얼스터 지방은 개신교도가 지배하는 지역이 되었으며, 지금도 이 지방은 신교계 주민이 다수파를 구성하고 있다. 오늘날 북아일랜드 문제의 기원은 바로 여기에 있다.

²⁵⁾ http://en.wikipedia.org/wiki/Northern_Ireland

²⁶⁾ Calvert, Peter, eds.(2004), 앞의 책, pp 327~344; 구동회·이정록(2005), 앞의 책, 204~220쪽.



(3) 전개과정²⁷⁾

1921년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북아일랜드 지역은 여전히 영국의 통치하에 있었다. 이는 영국에 잔류하기를 원하는 신교도가 북아일랜드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교도가 많은 지역은 얼스터 지방 6개 주 중 4개 주뿐이었고, 남쪽에는 독립을 바라는 가톨릭교도가 많았다. 이는 향후 독립을 희망하는 구교도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스코틀랜드 이주자의 자손인 신교계 주민은 북아일랜드 총인구의 58%를

27 <http://www.kida.re.kr/neowoww/html/> (북아일랜드)

Calvert, Peter, eds.(2004), 앞의 책, pp 327~344; 구동희·이정록(2005), 앞의 책, 204~220쪽.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배하는 북아일랜드 정부는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톨릭계 주민을 정치적·경제적으로 철저히 차별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8년 가톨릭교도에게 평등한 참정권과 공민권을 부여하도록 주장하는 공민권 운동이 일어났다.

신교도가 대부분인 무장경찰이 가톨릭계 주민의 반항을 주목적으로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아일랜드 공화군 IRA을 중심으로 하는 가톨릭계 주민과 신교계 주민 간의 무력항쟁이 일상화되었다.

1972년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 정부가 신·구교도의 대립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직접 통치로 전환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오히려 1972년 1월 이른바 ‘피의 일요일 사건’이라고 불리는 유혈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1990년대 들어 북아일랜드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영국과 아일랜드 정부는 1985년부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협상을 하던 중 1993년 12월 ‘다우닝가 선언’으로 돌파구를 찾게 되었다. IRA가 무장투쟁을 포기하면 평화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IRA가 1994년 9월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함으로써 양측은 군사 행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4) 해결 및 종결²⁸⁾

1997년 12월 27일 북아일랜드에서 유혈충돌이 확산되면서 평화 협상이 무산될 듯했으나 1998년 4월 마침내 다자 회담을 통한 북아일랜드 평화 협

²⁸ Calvert, Peter, eds.(2004), 앞의 책, pp 327~344; 구동회·이정록(2005), 앞의 책, 204~220쪽.

정 굿프라이데이 협정 이 타결되었다.

1998년 5월 22일 북아일랜드 평화안에 대한 주민 투표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찬성이 70%를 넘자 70년간 진행되어온 전쟁은 공식적으로 일단락되었다.

● 1998년 굿프라이데이 협정(The Good Friday Agreement: April 10, 1998)²⁹⁾

영국과 아일랜드 정부, 그리고 얼스터 연합당과 민주연합당, 사회민주 노동당, 신페인당 등 북아일랜드 8개 정당이 공동 서명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총선을 통해 108석의 북아일랜드 의회를 구성한다.
2. 선거를 통해 각 정당 비례 대표 12명으로 구성된 집행 위원회가 행정부 기능을 수행한다.
3. 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가 자국의 영토라는 헌법 조항을 삭제한다.
4. 준군사 조직, 특히 IRA와 신교도 자위대의 무장을 해제하고 정치범을 석방한다.
5. 대부분 신교도로 이루어진 경찰에 아일랜드 사람도 참여하도록 경찰구조를 개혁한다.

29 분량이 방대한 관계로 협정의 일부와 주요 내용의 번역 수록.

DECLARATION OF SUPPORT

1. We, the participants in the multi-party negotiations, believe that the agreement we have negotiated offers a truly historic opportunity for a new beginning.
2. The tragedies of the past have left a deep and profoundly regrettable legacy of suffering. We must never forget those who have died or been injured, and their families. But we can best honour them through a fresh start, in which we firmly dedicate ourselves to the achievement of reconciliation, tolerance, and mutual trust, and to the protection and vindication of the human rights of all.
3. We are committed to partnership, equality and mutual respect as the basis of relationships within Northern Ireland, between North and South, and between these islands.
4. We reaffirm our total and absolute commitment to exclusively democratic and peaceful means of resolving differences on political issues, and our opposition to any use or threat of force by others for any political purpose, whether in regard to this agreement or otherwise.
5. We acknowledge the substantial differences between our continuing, and equally legitimate, political aspirations. However, we will endeavour to strive in every practical way towards reconciliation and rapprochement within the frame work of democratic and agreed arrangements. We pledge that we will, in good faith, work to ensure the success of each and every one of the arrangements to be established under this agreement. It is accepted that all of the institutional and constitutional arrangements — an Assembly in Northern Ireland, a North/South Ministerial Council, implementation bodies, a British-Irish Council and a British-Irish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and any amendments to British Acts of Parliament and the Constitution of Ireland — are interlocking and inter-dependent and that in particular the functioning of

the Assembly and the North/South Council are so closely inter-related that the success of each depends on that of the other.

6. Accordingly, in a spirit of concord, we strongly commend this agreement to the people, North and South, for their approval.

BRITISH-IRISH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1. There will be a new British-Irish Agreement dealing with the totality of relationships. It will establish a standing British-Irish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which will subsume both the Anglo-Irish Intergovernmental Council and th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established under the 1985 Agreement.
2. The Conference will bring together the British and Irish Governments to promote bilateral co-operation at all levels on all matters of mutual interest within the competence of both Governments.
3. The Conference will meet as required at Summit level (Prime Minister and Taoiseach). Otherwise, Governments will be represented by appropriate Ministers. Advisers, including police and security advisers, will attend as appropriate.
4. All decisions will be by agreement between both Governments. The Governments will make determined efforts to resolve disagreements between them. There will be no derogation from the sovereignty of either Government.
5. In recognition of the Irish Government special interest in Northern Ireland and of the extent to which issues of mutual concern arise in relation to Northern Ireland, there will be regular and frequent meetings of the Conference concerned with non-devolved Northern Ireland matters, on which the Irish Government may put forward views and proposals. These meetings, to be co-chaired by th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and the Secretary of State for

Northern Ireland, would also deal with all-island and cross-border co-operation on non-devolved issues.

6. Co-oper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nference will include facilitation of co-operation in security matters. The Conference also will address, in particular, the areas of rights, justice, prisons and policing in Northern Ireland (unless and until responsibility is devolved to a Northern Ireland administration) and will intensif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Governments on the all-island or cross-border aspects of these matters.
7. Relevant executive members of the Northern Ireland Administration will be involved in meetings of the Conference, and in the reviews referred to in paragraph 9 below to discuss non-devolved Northern Ireland matters.
8. The Conference will be supported by officials of the British and Irish Governments, including by a standing joint Secretariat of officials dealing with non-devolved Northern Ireland matters.
9. The Conference will keep under review the workings of the new British-Irish Agreement and the machinery and institutions established under it, including a formal published review three years after the Agreement comes into effect. Representatives of the Northern Ireland Administration will be invited to express views to the Conference in this context. The Conference will contribute as appropriate to any review of the overall political agreement arising from the multi-party negotiations but will have no power to override the democratic arrangements set up by this Agreement.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GOVERNMENT OF IRELAND

The British and Irish Governments:

Welcoming the strong commitment to the Agreement reached on 10th April 1998 by themselves and other participants in the multi-party talks and set out in Annex 1 to this Agreement (hereinafter “the Multi-Party Agreement”);

Considering that the Multi-Party Agreement offers an opportunity for a new beginning in relationships within Northern Ireland, within the island of Ireland and between the peoples of these islands;

Wishing to develop still further the unique relationship between their peoples and the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ir countries as friendly neighbours and as partners in the European Union;

Reaffirming their total commitment to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non-violence which have been fundamental to the multi-party talks;

Reaffirming their commitment to the principles of partnership, equality and mutual respect and to the protection of civil,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rights in their respective jurisdiction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two Governments:

- (i) recognise the legitimacy of whatever choice is freely exercised by a majority of the people of Northern Ireland with regard to its status, whether they prefer to continue to support the Union with Great Britain or a sovereign united Ireland;
- (ii) recognise that it is for the people of the island of Ireland alone, by agreement between the two parts respectively and without external impediment, to exercise their right of self-determination on the basis of consent, freely and concurrently given, North and South, to bring about a united Ireland, if that is their wish, accepting that this right must be achieved and exercised with and

subject to the agreement and consent of a majority of the people of Northern Ireland;

- (iii) acknowledge that while a substantial section of the people in Northern Ireland share the legitimate wish of a majority of the people of the island of Ireland for a united Ireland, the present wish of a majority of the people of Northern Ireland, freely exercised and legitimate, is to maintain the Union and accordingly, that Northern Ireland status as part of the United Kingdom reflects and relies upon that wish; and that it would be wrong to make any change in the status of Northern Ireland save with the consent of a majority of its people;
- (iv) affirm that, if in the future, the people of the island of Ireland exercise their right of self-determination on the basis set out in sections (i) and (ii) above to bring about a united Ireland, it will be a binding obligation on both Governments to introduce and support in their respective Parliaments legislation to give effect to that wish;
- (v) affirm that whatever choice is freely exercised by a majority of the people of Northern Ireland, the power of the sovereign government with jurisdiction there shall be exercised with rigorous impartiality on behalf of all the people in the diversity of their identities and traditions and shall be founded on the principles of full respect for, and equality of, civil,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freedom from discrimination for all citizens, and of parity of esteem and of just and equal treatment for the identity, ethos and aspirations of both communities;
- (vi) recognise the birthright of all the people of Northern Ireland to identify themselves and be accepted as Irish or British, or both, as they may so choose, and accordingly confirm that their right to hold both British and Irish citizenship is accepted by both Governments and would not be affected by

any future change in the status of Northern Ireland.

ARTICLE 2

The two Governments affirm their solemn commitment to support, and where appropriate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Multi-Party Agreement. In particular there shall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Multi-Party Agreement immediately on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following institutions:

- (i) a North/South Ministerial Council;
- (ii) the implementation bodies referred to in paragraph 9 (ii) of the section entitled "Strand Two" of the Multi-Party Agreement;
- (iii) a British-Irish Council;
- (iv) a British-Irish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ARTICLE 3

(1) This Agreement shall replace the Agreement between the British and Irish Governments done at Hillsborough on 15th November 1985 which shall cease to have effect on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2) Th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established by Article 2 of the aforementioned Agreement done on 15th November 1985 shall cease to exist on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4

(1) It shall be a requirement for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at:

- (a) British legislation shall have been enacted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Annex A to the section entitled "Constitutional Issues" of

the Multi-Party Agreement;

(b) the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of Ireland set out in Annex B to the section entitled “Constitutional Issues” of the Multi-Party Agreement shall have been approved by Referendum;

(c) such legislation shall have been enacted as may be required to establish the institutions referred to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2) Each Government shall notify the other in writing of the completion, so far as it is concerned, of the requirements for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later of the two notifications.

(3) Immediately on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Irish Government shall ensure that the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of Ireland set out in Annex B to the section entitled “Constitutional Issues” of the Multi-Party Agreement take effect.

In witness t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two originals at Belfast on the 10th day of April 1998.

For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For the Government of Ireland

ANNEX 1

The Agreement Reached in the Multi-Party Tal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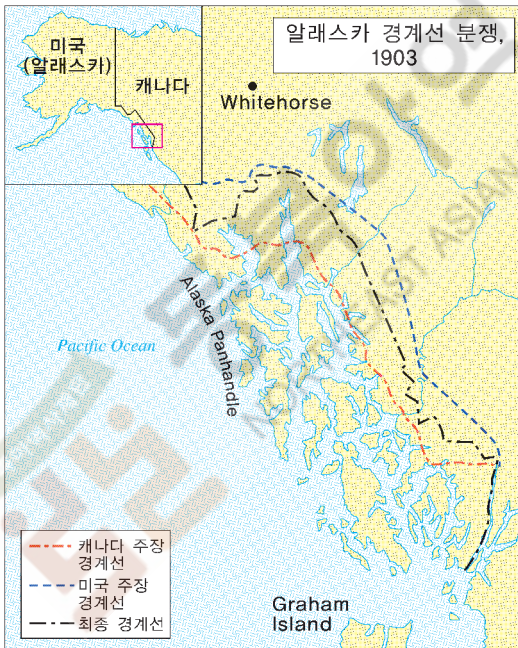
ANNEX 2

Declaration on the Provisions of Paragraph (vi) of Article 1 In Relationship to

Citizenship

The British and Irish Governments declare that it is their joint understanding that the term “the people of Northern Ireland” in paragraph (vi) of Article 1 of this Agreement means, for the purposes of giving effect to this provision, all persons born in Northern Ireland and having, at the time of their birth, at least one parent who is a British citizen, an Irish citizen or is otherwise entitled to reside in Northern Ireland without any restriction on their period of residence.

10. 알래스카 경계선(Alaska Boundary) 분쟁³⁰⁾



(1) 개요

| | |
|------------|-----------|
| 식민국가 | 러시아와 영국 |
| 피식민국가 | 알래스카와 캐나다 |
| 독립일 | 1783. 09 |
| 분쟁시작일 | 1872. 08 |
| 분쟁종료일 | 1903. 10 |
| 분쟁도전국 | 미국 |
| 분쟁해결 방식 | 양자 간 합의 |
| 군사충돌 발생 횟수 | 2회 |

알래스카 국경선 분쟁은 미국과 캐나다 당시는 런던이 외무를 통치했던 영국의 자치령 사이의 영토분쟁을 말하며, 국내적으로는 미국 측의 알래스카와 캐나다 측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및 유콘 주 사이의 분쟁이다. 이 분쟁은 1903년 양자 간 헤이 - 허버트 조약 Hay-Herbert Treaty 으로 해결된다.

(2) 역사 및 배경

1825년 러시아와 영국은 각자가 소유한 식민지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세인트피터즈버그 St. Petersburg 조약에 서명하였다. 그 조약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 언급한 경계선은 포틀랜드 해협을 따라 북쪽으로 위도 56도선 지점의 영토까지 올라간다. 국경 경계선은 최종 언급된 이 지점으로부터 서쪽

30 Fogarassy, Tony(1991), *The Alaska Boundary Dispute: History and International Law*, CLARK WILSON LPP : BC.

<http://www.cwilson.com/pubs/energy/alaska.pdf>



경도 141도의 교차점까지 펼쳐진 해안선에 평행하게 놓여 있는 산맥의 정상
을 따라간다.”

다소 애매한 표현인 “해안선에 평행하게 놓여 있는 산맥”은 차후 조금 수
정되었고, 아래와 같이 변경 보완되었다.

“산맥의 정상이 해안으로부터 10 해양 리그(marine league : 3해리를 1단위로 함)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 한계선은 해안선의 구부러진 곳에 평행한 선으로
정해질 것이며, 그 한계선은 그곳으로부터 10 해양 리그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조약에 사용된 언어는 정확한 경계선을 정한다기보다는 차후
그 지역에 경계선을 세우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 정도에 동의하는 것이었다.

(3) 전개과정

1867년 제정 러시아는 미화 720만 달러 가치의 금을 받고 미국에게 알래
스카를 판매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은 1825년 러시아가 영국과 맺은 세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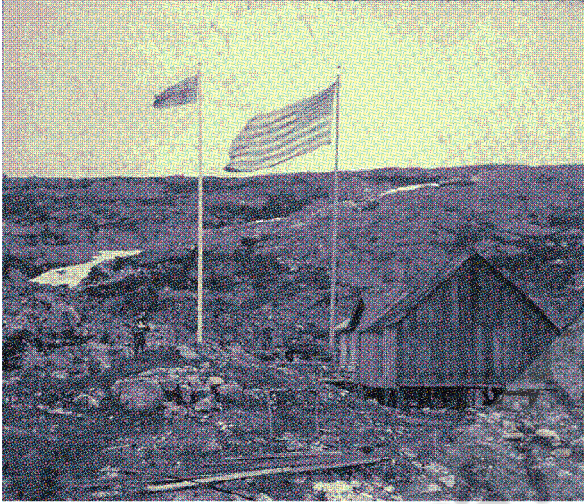
〈그림 4.10〉 클론다이크 골드 러시

출처 : <http://www.canadianmysteries.ca/sites/klondike/context/americaninterests/indexen.html>

트피터즈버그 조약의 권리를 자연스레 물려받았다. 1871년 브리티시컬럼비아 주가 캐나다 연방으로 편입된 후,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는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알래스카 지역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캐나다는 이곳의 실지 답사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그에 따르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³¹⁾

1890년대에 들어 클론다이크 골드러시 Klondike Gold Rush로 인해 이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고, 미국인의 수가 거의 3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31 그 당시 그 국경지역은 매우 멀어 떨어지고 정착이 거의 안 된 곳이었으며, 경제적·전략적으로 아무런 이득이 없는 곳으로 여겨졌다.



〈그림 4.11〉 1900년 두 나라 국기가 보이는 알래스카와 캐나다 국경

출처 : http://www.sitnews.net/juneAllen/Border/042203_ak_caborder.html

또한 골드러시가 이 지역의 중요성을 증대시킴에 따라 정확한 경계선을 놓고 양국의 분쟁도 심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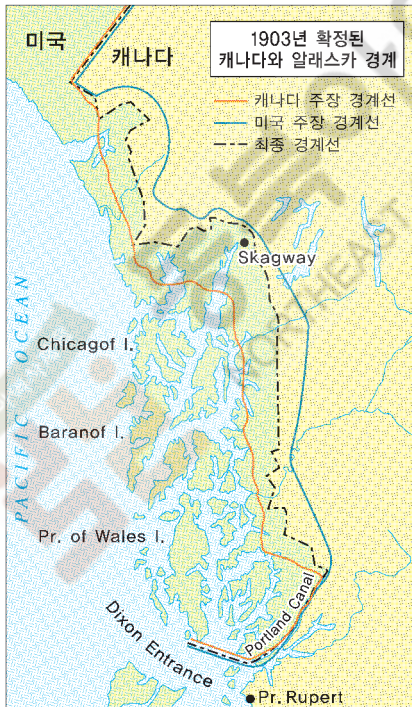
1898년 양국은 합동 위원회를 만들어 국경에 대해 논의한 후 타협점을 찾았지만 미국에게만 유리한 타협안에 대해 서부 국가들이 강하게 항의했기 때문에 미국은 타협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해 말 영국과 미국은 법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을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양국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회의는 결렬되었다.

영국과 미국은 1825년 세인트피터즈버그 조약 해석에 대해 여러 차례 외교적 논쟁을 벌인 후, 1903년 양국은 포틀랜드(Portland) 해협을 두고 일어난 분쟁의 중재안을 제공하는 조약에 서명하였다. 이 조약의 결과로 제정 러시아와 영국 간의 1825년 세인트피터즈버그 조약을 해석하기 위한 알래스카 경계 위원회(Alaska Boundary Tribunal)가 만들어졌다.

(4) 해결 및 종결

위원회 tribunal는 미국인 3명과 캐나다인 2명, 그리고 의장직을 담당한 영국인 앨버스톤 Lord Alverstone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알래스카 경계선 분쟁은 결국 1903년 이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양자가 모두 만족하는 선에서 해결되지는 못했다.

캐나다는 이 위원회의 결정에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앨버스톤은 중점 이슈였던 섬의 분할에 대해 시종일관 미국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이러한 그의 행동은 당시 국제무대에서 보다 힘 있는 미국을 달래기 위해 영국은 그저 도구에 불과했다는 맹비난을 받게 만들었다. 1903년 10월 23일



자 『해밀턴 헤럴드』 *Hamilton Herald*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앨버스톤은 수치스럽게도 그가 캐나다에 정당하게 포함된다고 주장하던 중요한 영토를 미국에게 양도하는 데 동의하였다…. 그는 명목상 영국 위원으로 활동했으나, 실제로는 미국 위원 3명의 동맹자로서 행동하였다.”³²⁾

11. 산안드레스 섬(San Andres Islands)



32 http://en.wikipedia.org/wiki/Alaska_boundary_dispute

(1) 개요

| | |
|------------|------------------------------------|
| 식민국가 | 스페인 |
| 피식민국가 | 1. 콜롬비아, 2. 니카라과 |
| 독립일 | 1. 1819. 12, 2. 1838. 04 |
| 분쟁시작일 | 1979. 12 (콜롬비아 vs. 니카라과) |
| 분쟁종료일 | 진행 중 |
| 분쟁도전국 | 니카라과 |
| 분쟁해결 방식 | 진행 중 제3자(국제사법재판소) 결정(선결적 항변 관련) |
| 군사충돌 발생 횟수 | 3회 |

(2) 역사 및 배경³³⁾

콜롬비아는 산안드레스 섬 주권에 대한 기본 근거를 1803년 스페인 왕정이 누에바 그라나다 Nueva Granada 콜롬비아 총독에게 해적에 대하여 산안드레스 섬과 프로비덴시아 Providencia 섬, 그리고 모스키토 Mosquito 해안을 지키라는 어명을 내린 것에 두고 있다.

반면 니카라과의 기본 근거는 1803년 콜롬비아에게 내린 스페인 왕의 어명은 전적으로 군사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1806년 스페인 왕정이 과테말라 당시 니카라과를 통치하는 해군 장군에게 그 지역 방어에 대한 책임을 새로 부여한 시점으로부터 1803년의 어명은 취소되었다는 것이다.

19세기 당시 니카라과는 두 대양을 잇는 운하의 건설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식민국가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곳이다. 18세기 영국은 모스키토 해안

33 Eduardo Ferrero Costa(2007), 「Maritime Boundary Disputes in Latin America」, International Conference : 제네바 해양법 협약 50주년의 회고와 전망, 인하대학교 · 미국 버클리대학교 해양법연구소 · 동북아역사재단 공동 주최.

에 대한 보호령을 설정했고, 이 보호령은 1894년까지 지속되었다. 영국과 니카라과 사이의 1905년 알타미라노-헤리슨 Altamirano-Harrison 조약은 모스키토 해안지역에 대한 니카라과의 주권을 인정해주었다. 그러나 미국은 1912~1925년, 1926~1933년 사이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1925년 산안드레스 섬과 프로비덴시아 섬에 대한 콜롬비아의 주권을 인정하는 조약 체결을 니카라과에게 강요하였다.³⁴⁾ 결국 1928년 3월 24일 바르세나스 메네세스-에스게라 Barcenas Meneses-Esquerria 조약이 체결되었고, 이 조약에서 콜롬비아가 모스키토 해안의 니카라과 주권을 인정한 대신 니카라과는 산안드레스 섬과 프로비덴시아 섬에 대한 콜롬비아의 주권을 인정하였다.

(3) 전개과정³⁵⁾

1979년에 니카라과의 아나스타시오 Anastasio 정권을 뒤엎고 새로이 들어선 산디니스타 Sandinista 정권은 산안드레스 섬이 니카라과의 약 322km 대륙붕 안에 위치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섬의 주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에 산디니스타는 1928년의 바르세나스 메네세스-에스게라 조약이 이루어질 당시 니카라과는 외국의 관리하에 있었으므로 이 조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니카라과는 산안드레스 섬이 지리적·역사적·사법적으로 니카라과의 영토임을 강조하였다.

니카라과는 1909년 이래로 식민 상태였기 때문에 산안드레스 섬이 위치

34 이는 1903년 미국의 도움으로 파나마가 독립하자 파나마를 잃은 콜롬비아에 대한 미국의 보상으로 볼 수 있다.

35 Peter Calvert, eds.(2004), *Border and territorial Disputes of the world, 4th edition*, London UK : John Harper Publishing, pp.100~101.



한 대륙붕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1928년 당시 체결된 바르세나스 메네세스-에스게라 조약도 강압적으로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니카라과에게 불리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다고 주장하였다.

니카라과의 이러한 도서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여 콜롬비아는 산안드레스 섬의 공군과 해군을 강화시켰으며, 그동안 그 지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던 니카라과 어선과 콜롬비아 해군이 몇 차례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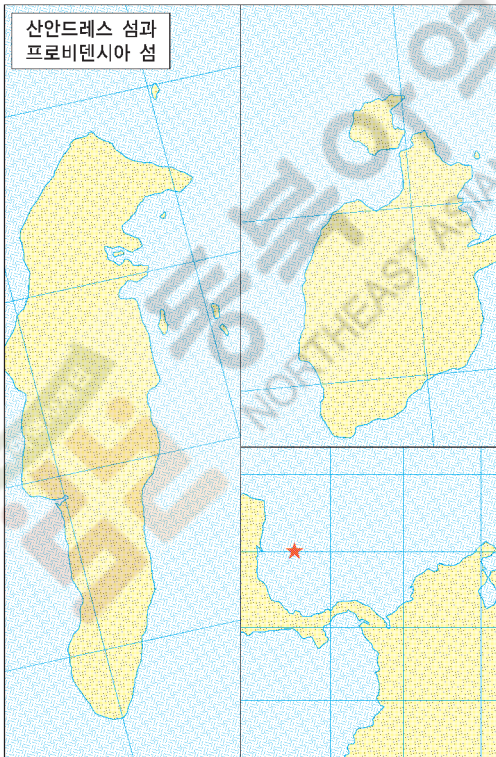
니카라과와 콜롬비아는 이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회담을 가졌고, 콜롬비아는 이 사건을 유엔 해양법회의의 UN Law of the Seas conference에 의뢰하였다. 1986년 10월 23일 콜롬비아 상원은 온두라스와 '해양경계선 조약' 을 비준했으며, 이는 니카라과와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에 대한 콜롬비아의 주권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2001년 12월 12일 니카라과는 콜롬비아를 상대로 서카리브해 지역의 해

양경계선과 영토의 주권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고, 2007년 12월 13일에 콜롬비아의 선결적 항변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4) 해결 및 종결

2001년에 니카라과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이래 2007년 12월 13일에 “이 섬의 영유권문제는 1928년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콜롬비아의 영토로 확정되었으므로 국제사법재판소 관할권이 없음”이라는 국제사법재판



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경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 2001년 12월 12일 - 니카라과는 콜롬비아를 상대로 양국 간의 서카리브해 지역 영토소유권과 해양경계선 분쟁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 제기
- 2002년 2월 26일 - (국제사법재판소 명령) 양 국가의 청원서 Memorial와 청원답변서 Counter-Memorial 제출기한 확정
 - 니카라과 : 2003년 4월 28일(청원서)
 - 콜롬비아 : 2004년 6월 28일(청원답변서)
- 2002년 9월 24일 - 서면 변론 written pleadings 제출기한 확정
- 2003년 9월 24일 - (국제사법재판소 명령) 선결적 항변 Preliminary Objections에 대한 의견 observations과 의뢰서 submissions의 서면진술서 written statements 제출 기한 확정
- 2003년 9월 29일 - 콜롬비아가 제기한 관할권 jurisdiction에 대한 선결적 항변에 관한 니카라과의 서면진술서 제출기한 확정
 - 2003년 7월 21일 : 콜롬비아 선결적 항변 제출
 - 2004년 1월 26일 : 니카라과의 서면진술서 제출기한
- 2007년 6월 4일~6월 8일 : 선결적 항변에 대한 공개심리
- 2007년 12월 13일 : 선결적 항변에 대한 판결(“1928년 조약에 따라 이미 양 당사자 간 영유권문제가 합의되었으므로 국제사법재판소 관할권 없음”)



〈그림 4.12〉 프로비덴시아 섬 전경

출처 : <http://www.moonblink.info/log.cgi?leg=2004-03-28-SBBefize&mode=print>

12. 세르팡 섬(Serpent Island/Snake Island)³⁶⁾



- 36 국제사법재판소, <http://www.icj-cij.org/homepage/index.php?lang=en>
<http://rferl.org/featuresarticle/2004/08/efab6ba7-2003-4854-bdd6-1b07188aaa7f.html>

(1) 개요

| | |
|------------|---------------------------|
| 식민국가 | 구소련 |
| 피식민국가 | 우크라이나 |
| 독립일 | 1991. 12 |
| 분쟁시작일 | 1995. 05 (우크라이나 vs. 루마니아) |
| 분쟁종료일 | 현재 진행 중 |
| 분쟁도전국 | 루마니아 |
| 분쟁해결 방식 | 국제사법재판소 계류 중 |
| 군사충돌 발생 횟수 | 0회 |

뱀 섬 Snake Island으로도 알려져 있는 세르팡 섬은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해안인 흑해 Black Sea에 있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작은 섬으로 우크라이나의 킬리야 라이온 Kiliya Raion 지방 행정구역에 속한다. 이 섬은 다뉴브강 Danube, 독일에서 시작되어 흑해로 흘러들어 가는 강으로 독일식 표현으로는 Donau임 동쪽 어귀의 해안으로부터 약 3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X자 형태 662/440m로 면적이 약 0.17km²이고 해발 41m에 달한다.

현재 섬에는 대부분 경계 경비병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기술 인력이 100여 명 상주하고 있다. 또한 2003년 이래로 오데사 국립대학 Odessa National University의 과학 탐사대가 머물고 있다.

1997년 조약으로 인해 섬의 군사 시설은 철거된 상태이며 모든 시설은 민간인이 관리한다. 헬리콥터 선착장과 함께 2002년에 세워진 부두가 있으며, 섬의 전력은 풍력과 디젤 이중 발전소가 공급한다.³⁷⁾

³⁷⁾ [http://en.wikipedia.org/wiki/Snake_Island_\(Black_Sea\)](http://en.wikipedia.org/wiki/Snake_Island_(Black_Sea))



〈그림 4.13〉 세르팡 섬 전경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Snake_Island_\(Black_Sea\)](http://en.wikipedia.org/wiki/Snake_Island_(Black_Sea))

(2) 역사 및 배경³⁸⁾

러시아- 터키 전쟁 Russia-Turkey War, 1787~1792 중인 1788년에 세르팡 섬 부근에서 오스만 Ottoman과 러시아 함대 간의 전투가 벌어졌고, 그 이후 또한 차례 러시아- 터키 전투 1828~1829가 벌어졌다. 그 결과 세르팡 섬은 1829년 러시아 제국에 속하게 되었으며, 1856년까지 러시아의 영유권이 지속되었다. 이후 잠시 동안 세르팡 섬의 영유권을 소유했던 오스만 제국은 1877년 러시아- 터키 전쟁 1877~1878에서 패배하여 루마니아 남부 베사라비아 Bessarabia 지역의 러시아 합병에 대한 상황으로 러시아에게 세르팡 섬

38 <http://rferl.org/featuresarticle/2004/08/efab6ba7-2003-4854-bdd6-1b07188aaa7f.html>



〈그림 4.14〉 세르팡 섬에 있는 부두 모습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Siake_Island_\(Black_Sea\)](http://en.wikipedia.org/wiki/Siake_Island_(Black_Sea))

과 도브로제아 Dobrogea 지역을 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 주도국들 간에 맺은 1947년 파리 평화 조약 Paris Peace Treaties of 1947은 북부 부코비나 Northern Bukovina, 헤르차 지역 Hertza region, 부자크 Budjak, 그리고 베사라비아를 구소련에게 양도하도록 명시했으나 세르팡 섬과 다뉴브 강 어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루마니아와 구소련 사이의 경계선은 세르팡 섬 북쪽으로 확정되어 세르팡 섬은 루마니아의 영토로 남게 된 것이다.

그런데 1948년 구소련은 당시 점령지인 루마니아에게 세르팡 섬을 ‘이전’ transfer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루마니아와의 국경을 구소련 측에 유리하도록 다뉴브 델타 지역 서쪽으로 옮길 것도 강요하였다. 같은 해 2월 루

마니아의 첫 공산당 총리인 그로자 Petru Groza는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세르팡 섬에 대한 구소련의 합법적 소유를 인정하기로 동의하고 공식적인 협정서 protocol에 서명하였다. 따라서 구소련은 그 당시 단지 다뉴브 강 어귀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로만 여기던 세르팡 섬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루마니아는 '협정'을 두 나라가 비준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협정의 합법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루마니아는 제1차 세계대전 후 1918년과 1920년의 평화 조약에 따라 세르팡 섬이 루마니아 영토의 일부로 여겨져왔을 뿐만 아니라, 1947년 루마니아와 구소련 사이의 국경 변경 조약에서도 세르팡 섬에 관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여전히 루마니아의 영토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61년 2월 27일 루마니아 정부와 구소련 연방과의 국경문제에 대한 협력과 상호 원조 조약 Collaboration and Mutual Assistance on Border Matters이 체결되었는데, 이 조약에서는 세르팡 섬이 구소련의 소유로 확인되었다. 그 후 구소련과 루마니아 간에는 대륙붕의 한계선을 놓고 1967년 이래 마찰이 있어왔다.

(3) 전개과정³⁹⁾

1967년부터 1987년까지 루마니아와 구소련 연방은 지속적으로 대륙붕의 경계를 놓고 협상했으나 동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구소련을 상대로 루마니아가 지속적으로 세르팡 섬의 영유권문제를 제기해오던 중, 1991년 러시아에서 독립한 우크라이나가 섬에 대한 지배권을

39 [http://en.wikipedia.org/wiki/Snake_Island_\(Black_Sea\)](http://en.wikipedia.org/wiki/Snake_Island_(Black_Sea))

행사하게 되었는데, 우크라이나는 섬에 대한 영유권뿐만 아니라 대륙붕 경계에 대한 모스크바의 입장까지도 그대로 유지하였다.

결국 섬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간의 분쟁으로 이어졌고, 섬 주변에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지⁴⁰⁾가 발견되면서 양국의 협상은 한 차원 높은 이해관계로 발전하였다.

1997년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는 두 나라 사이의 국경 불가침을 재확인하는 협력 선린관계 조약 Treaty on Relations of Co-operation and Good-Neighborliness을 체결하면서 만약 해양경계선에 대한 문제가 2년 내에 양국 간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상정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데 양국이 동의하였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양국 간에 24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결국 2004년 9월 16일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양국 간 해양경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하였다.

해양경계선

세르팡 섬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섬의 소유는 양국 간의 해양경계선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만약 세르팡 섬이 섬이 아닌 단지 해안절벽인 경우에는 해양국제법에 따라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경계선은 섬의 위치와 상관없이 확정된다. 하지만 세르팡 섬이 섬인 경우에는 섬 주변의 대륙붕이 우크라이나 해양으로 간주된다. 루마니아의 주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이 작은 섬을 섬의 지위로 인정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40 루마니아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양국 간 해양경계를 두는 문제를 상정하면서 섬 주변의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은 2년 정도면 고갈될 정도의 소량이기 때문에 섬 자체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4) 해결 및 종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2008년 초 현재 계류 중에 있다.

- 2004년 9월 16일 :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흑해의 양국 간 해양경계 확정과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 제기
- 2004년 11월 19일 : 양국의 청원서와 청원답변서 제출기한 확정
 - 루마니아 : 2005년 8월 19일(청원서)
 - 우크라이나 : 2006년 5월 19일(청원답변서)
- 2006년 6월 30일 : 답변서 Reply와 제2답변서 Rejoinder 제출기한 확정
 - 루마니아의 답변서 : 2006년 12월 22일
 - 우크라이나의 제2답변서 : 2007년 6월 15일
- 2007년 6월 8일 : 우크라이나의 제2답변서 제출기한 연장
 - 2007년 7월 6일로 연장됨

● 1947년 파리평화조약 중 루마니아와 맺은 평화협정⁴¹⁾

(Treaty of Peace with Romania : February 10, 1947)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ustralia, the Byeloruss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Canada, Czechoslovakia, India, New Zealand, the Ukrai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and the Union of South Africa, as the States which are at war with Roumania and actively waged war against the European enemy states with substantial military for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llied and Associated Powers,” of the one part, and Roumania, of the other part;

Whereas Roumania, having become an ally of Hitlerite Germany and having

41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국경선(Frontier)과 관련된 조약 일부만 수록함

participated on her side in the war against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other United Nations, bears her share of responsibility for this war;

Whereas, however, Roumania, on August 24, 1944, entirely ceased military operations against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withdrew from the war against the United Nations, broke off relations with Germany and her satellites and having concluded on September 12, 1944, an Armistice with the Governments of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ting in the interests of all the United Nations, took an active part in the war against Germany; and

Whereas the Allied and Associated Powers and Roumania are desirous of concluding a treaty of peace, which, conforming to the principles of justice, will settle questions still outstanding as a result of the events herein-before recited and form the basis of friendly relations between them, thereby enabling the Allied and Associated Powers to support Roumania's application to become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and also to adhere to any Convention concluded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Have therefore agreed to declare the cessation of the state of war and for this purpose to conclude the present Treaty of Peace, and have accordingly appointed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who, after presentation of their full powers, found in good and due form, have agreed on the following provisions:

PART I: FRONTIERS

Article 1

The frontiers of Roumania, shown on the map annexed to the present Treaty (Annex D), shall be those which existed on January 1, 1941, with the exception of the Roumanian-Hungarian frontier, which i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present Treaty.

The Soviet-Roumanian frontier is thus fixed in accordance with the Soviet-Roumanian Agreement of June 28, 1940, and the Soviet-Czechoslovak Agreement of June 29, 1945.

Article 2

The decisions of the Vienna Award of August 30, 1940, are declared null and void. The frontier between Roumania and Hungary as it existed on January 1, 1938, is hereby restored.

PART IV: WITHDRAWAL OF ALLIED FORCES

Article 21

1. Upon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present Treaty, all Allied Forces shall, within a period of 90 days, be withdrawn from Roumania, subject to the right of the Soviet Union to keep on Roumanian territory such armed forces as it may need for the maintenance of the lines of communication of the Soviet Army with the Soviet zone of occupation in Austria.
2. All unused Roumanian currency and all Roumanian goods in possession of the Allied forces in Roumania, acquired pursuant to Article 10 of the Armistice Agreement, shall be returned to the Roumanian Government within the same period of 90 days.
3. Roumania shall, however, make available such maintenance and facilities as may specifically be required for the maintenance of the lines of communication with the Soviet zone of occupation in Austria, for which due compensation will be made to the Roumanian Government.

For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V. MOLOTOV, A BOGOMOLOV

For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ERNEST BEVIN,
DUFF COOPER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AMES F. BYRNES, JEFFERSON CAFFERY

For Australia: JOHN A. BEASLEY

For the Byeloruss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K. KISSELEV

For Canada: GEORGE P. VANIER

For Czechoslovakia: JAN MASARYK, V. CLEMENTIS

For India: S. E. RUNGANADHAN

For New Zealand: W. J. JORDAN

For the Ukrai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I. SENIN

For the Union of South Africa: W. G. PARMINTER

For Roumania: GH. TATARESCO, L. PATRASCANO, S. VOITEC, GEN. D. DAMACEANO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권분쟁은 특징상 식민지배 처리과정이나 전쟁 후 점령지의 처리과정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로 역사적 근원이 주요한 쟁점이 되기 마련이고 이는 결국 역사는쟁과도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역사 관련 쟁점이 계기가 될 경우에는 국제법상 양 당사국 간 무력충돌 가능성도 더 커진다는 데 있다.

동북아 지역 내 영토문제 역시 식민지역사 또는 제국주의 침탈사와 무관하지 않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러·일 간 북방도서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정에서, 중·일 간 센카쿠(조어도) 도서 영유권문제는 청일전쟁 과정에서, 그리고 일본의 영유권 도전이 제기되고 있는 독도 역시 러일전쟁 과정에서 초래된 침탈사와 무관하지 않다. 식민침탈사로 초래된 영토문제의 바람직한 해법은 바로 침탈한 국가의 반성과 결단에 있으며, 이것이 21세기 지구촌의 보편적 해결모형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식민침탈로 인한 세계의 영토분쟁 사례들을 광범위하게 추출해내는 작업부터 선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서는 세계의 영토분쟁 데이터뱅크 ICOW를 통해 1816년 이래 서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생한 세계의 영토분쟁 413건을 대상으로 세계 식민지역사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여 도서 영유권분쟁 6건을 포함한 총 12건의 식민침탈 영토분쟁 사례를 추출해냈다. 본서에

서 다른 사례는 대부분 독도와 유사한 식민국가와 피식민국가 간 영토문제이면서 그동안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았던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일 간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00년대 초 피식민국가인 쿠바와 식민국가인 미국 간의 ‘후벤투드 섬’ 영유권분쟁의 경우, 미국은 1904년의 협정에서 쿠바의 영유권을 스스로 인정해주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1907년에는 ‘후벤투드섬 생산 담배의 관세 관련 관례’에서 미국 대법원조차도 후벤투드 섬은 쿠바의 영유권이 인정되므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하는 등 피식민국가 도서 영유권을 스스로 인정해주면서 되돌려준 사례이다. 특히 미국이 피식민국가인 쿠바의 도서 영유권을 인정해주면서 협정까지 맺었던 1904년 시점은 아이러니하게도 동양에서는 식민국가 일본이 피식민국가인 한국의 영토 독도를 불법 편입하려던 시점이었던 점에서 국제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식민국가인 영국과 피식민국가인 미국 간의 ‘산후안 섬’ 도서 영유권분쟁 사례를 들 수 있다. 이것은 1872년 제3자인 독일 빌헬름 1세의 중재로 식민국가인 영국이 피식민국가인 미국에게 ‘산후안 섬’ 영유권을 순순히 인정하고 영국의 군대까지 철수함으로써 식민국가의 결단으로 도서 영유권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된 사례이다. 이 역시 오늘날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순순히 인정하는 과거 식민국가 일본의 결단을 요구하는 귀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영토분쟁이 종결된 318건을 대상으로 분쟁종결 유형을 조사한 결

과 가장 많은 종결 유형인 ‘양자협정’ 다음으로 ‘도전국의 포기’ 유형이 71건으로서 두 번째로 많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도전하고 있는 일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독도 영유권 공고화 차원에서 도전국의 포기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을 밝혀내는 데 아주 유용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식민지배로 인한 외교권 박탈 상태에서 영유권이 부당하게 침탈당했다고 주장되면서 현재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계류중인 니카라과-콜롬비아 간 ‘산안드레스 섬’ 영유권분쟁과 루마니아-우크라이나 간 ‘셰르광 섬’ 영유권분쟁 역시 식민침탈 관련 그 결과가 매우 주목되는 사례들이다.

현재는 서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사례에만 한정되어 12건 정도만 추출되었지만 향후 아시아·아프리카·중동 지역 사례까지 데이터가 보완된다면 더 많은 식민침탈 영토분쟁 사례가 추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럴 경우 우리의 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보다 일반화된 심층분석과 연구결과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분쟁 사례 데이터 변수

| 변수 | 변수 해설 |
|-----------|--|
| name | 분쟁지역명 혹은 분쟁명 |
| chal | 최초로 영유권을 주장한 국가(도전국) |
| tgt | 도전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상이 된 국가(대상국) |
| begclaim | 분쟁이 시작된 연도와 월 |
| endclaim | 분쟁이 종결된 연도와 월(월에 '99' 표시는 데이터 수집 시 진행 중인 분쟁) |
| resolved | * 분쟁종결 유형 |
| midsiss | 분쟁에 군사충돌이 발생한 총 횟수 |
| attemptsp | 분쟁에 시도된 평화적인 해결 시도 총 횟수 |
| att3bind | 구속력 있는(binding) 해결 시도 총 횟수 |
| att3non | 구속력 없는(non-binding) 해결 시도 총 횟수 |

●● 분쟁종결 유형

| 변수 | 변수 해설 |
|---------|---|
| 변수 값 없음 | 데이터가 최종 업데이트된 200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진행 중(ongoing)인 분쟁 |
| 1 | 도전국의 분쟁지역 단순포기(Dropped by Challenger)로 분쟁종결 |
| 2 | 도전국 정부의 분쟁지역 공식 포기선언(Renounced by Challenger)으로 분쟁종결 |
| 3 | 제 3자의 개입으로 분쟁종결 |
| 4 | 양자 간 협정이나 조약으로 공식적인 분쟁종결 |
| 5 | 분쟁지역이 독립하게 되어 분쟁종결 |
| 6 | 대상국과 도전국 중 한 국가가 'COW interstate system'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분쟁종결 |
| 7 | 도전국의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적 점유로 분쟁종결 |

| 변수 | 변수 해설 |
|----|-------------------------------|
| 8 | 대상국의 분쟁지역 단순포기로 분쟁종결 |
| 9 | 대상국 정부의 분쟁지역 공식 포기선언으로 분쟁종결 |
| 10 | 분쟁지역의 국민투표를 통한 결정에 따름으로써 분쟁종결 |
| 11 | 분쟁지역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분쟁종결 |

● ICOW 영유권분쟁 데이터

| | name | chal | tgt | begclaim | endclaim | resolved | midsiss | attemptsp | att3bind | att3non |
|----|--------------------|------------|-------------|----------|----------|----------|---------|-----------|----------|---------|
| 1 | 49th Parallel | USA | UK | 181601 | 181810 | 4 | 0 | 1 | 0 | 0 |
| 2 | Acre | Peru | Brazil | 183901 | 190909 | 3 | 1 | 10 | 0 | 1 |
| 3 | Acre | Peru | Bolivia | 184801 | 191205 | 4 | 3 | 12 | 1 | 0 |
| 4 | Acre | Brazil | Bolivia | 184801 | 190911 | 4 | 1 | 4 | 0 | 0 |
| 5 | Aland Islands | Sweden | Russia | 185407 | 185603 | 1 | 0 | 1 | 0 | 1 |
| 6 | Aland Islands | Sweden | Finland | 191802 | 192106 | 3 | 0 | 6 | 1 | 2 |
| 7 | Alaska | Russia | UK | 182109 | 186703 | 2 | 0 | 6 | 0 | 1 |
| 8 | Alaska | USA | Russia | 182202 | 186703 | 4 | 0 | 11 | 0 | 1 |
| 9 | Alaska | UK | USA | 187208 | 190310 | 4 | 2 | 20 | 1 | 0 |
| 10 | Alsace-Lorraine | Germany | France | 187009 | 187103 | 7 | 2 | 3 | 0 | 2 |
| 11 | Alsace-Lorraine | France | Germany | 187512 | 191906 | 3 | 1 | 3 | 0 | 2 |
| 12 | Amapa | France | Brazil | 182601 | 190012 | 3 | 2 | 4 | 1 | 0 |
| 13 | Amazonas | Venezuela | Brazil | 184101 | 192807 | 4 | 0 | 5 | 0 | 0 |
| 14 | Amazonas-Caquet | Brazil | Ecuador | 190405 | 192203 | 3 | 0 | 0 | 0 | 0 |
| 15 | Antofagasta | Chile | Bolivia | 184801 | 188404 | 7 | 5 | 15 | 0 | 3 |
| 16 | Antofagasta | Bolivia | Chile | 188404 | 200199 | | 2 | 35 | 0 | 8 |
| 17 | Apa | Paraguay | Brazil | 184601 | 187411 | 4 | 5 | 4 | 0 | 0 |
| 18 | Apaporis | Brazil | Colombia | 183101 | 192811 | 3 | 0 | 7 | 0 | 1 |
| 19 | Aves (Bird) Island | Venezuela | Netherlands | 185403 | 186605 | 3 | 2 | 2 | 1 | 0 |
| 20 | Baarle Enclaves | Netherland | Belgium | 192210 | 194005 | 6 | 0 | 0 | 0 | 0 |
| 21 | Baarle Enclaves | Netherland | Belgium | 194506 | 195906 | 3 | 0 | 6 | 1 | 0 |
| 22 | Badenese Corridor | bavaria | Baden | 181601 | 183401 | 1 | 0 | 7 | 0 | 5 |

| | name | chal | tgt | begclaim | endclaim | resolved | mids/iss | attempts | att3bind | att3ron |
|----|-----------------------------|------------|------------|----------|----------|----------|----------|----------|----------|---------|
| 23 | Badenese Corridor | bavaria | Baden | 187010 | 187010 | 1 | 0 | 0 | 0 | 0 |
| 24 | Baja California & Sonora | USA | Mexico | 184701 | 186512 | 1 | 0 | 7 | 0 | 0 |
| 25 | Bavarian Palatinate (Pfalz) | France | Bavaria | 184911 | 187105 | 1 | 0 | 0 | 0 | 0 |
| 26 | Beagle Channel | Argentina | Chile | 190401 | 198505 | 3 | 19 | 22 | 1 | 4 |
| 27 | Belgium | France | Belgium | 186608 | 186704 | 1 | 0 | 0 | 0 | 0 |
| 28 | Belize | Guatemala | UK | 186801 | 198109 | 5 | 3 | 16 | 0 | 6 |
| 29 | Belize | Guatemala | Belize | 198109 | 200199 | | 5 | 12 | 0 | 9 |
| 30 | Bolsones | ElSalvador | Honduras | 189901 | 199209 | 3 | 2 | 18 | 1 | 9 |
| 31 | California & New Mexico | USA | Mexico | 183501 | 184802 | 4 | 2 | 6 | 0 | 0 |
| 32 | Canal Zone | Columbia | USA | 190311 | 192203 | 4 | 0 | 5 | 0 | 0 |
| 33 | Canal Zone | Pamana | USA | 192302 | 197910 | 4 | 0 | 12 | 0 | 0 |
| 34 | Cayo Sur - Media Luna | Nicaragua | Honduras | 199806 | 200199 | | 1 | 0 | 0 | 0 |
| 35 | Chaco Boreal | Bolivia | Paraguay | 187812 | 193810 | 4 | 19 | 33 | 1 | 20 |
| 36 | Chaco Central | Argentina | Paraguay | 184601 | 187811 | 3 | 1 | 6 | 1 | 2 |
| 37 | Chiapas | Guatemala | Mexico | 186801 | 188209 | 4 | 0 | 5 | 0 | 1 |
| 38 | Chincha Islands | Spain | Peru | 186404 | 186605 | 1 | 2 | 0 | 0 | 0 |
| 39 | Clipperton Island | Mexico | France | 189712 | 193401 | 3 | 0 | 2 | 1 | 0 |
| 40 | Conejo Island | ElSalvador | Honduras | 200004 | 200199 | | 0 | 1 | 0 | 0 |
| 41 | Cordillera del Condor | Ecuador | Peru | 194702 | 199810 | 3 | 13 | 10 | 1 | 7 |
| 42 | Cordillera Monte Cristo | Guatemala | El Savador | 193508 | 193804 | 4 | 1 | 3 | 0 | 0 |
| 43 | Corentyn/New River Triangle | Netherland | UK | 181601 | 196604 | 5 | 0 | 5 | 0 | 0 |
| 44 | Corentyn/New River Triangle | Netherland | Guyana | 196604 | 197511 | 5 | 0 | 3 | 0 | 0 |
| 45 | Corentyn/New River Triangle | Suriname | Guyana | 197511 | 200199 | | 2 | 9 | 0 | 2 |

| | name | chal | tgt | begclaim | endclaim | resolved | midssiss | attempts | at3bind | at3non |
|----|--------------------------------|-----------------|-------------|----------|----------|----------|----------|----------|---------|--------|
| 46 | Corsica | Italy | France | 193811 | 194307 | 1 | 0 | 1 | 0 | 1 |
| 47 | Cuba | USA | Spain | 184805 | 189812 | 4 | 1 | 9 | 0 | 0 |
| 48 | Eastern Greenland | Norway | Denmark | 192107 | 193304 | 3 | 0 | 5 | 2 | 0 |
| 49 | Ecrehos & Minquiers | France | UK | 188612 | 195311 | 3 | 0 | 6 | 1 | 0 |
| 50 | El Chamizal | Mexico | USA | 189509 | 196312 | 4 | 0 | 9 | 1 | 0 |
| 51 | Ellesmere Island | Canada | USA | 192201 | 192609 | 8 | 0 | 0 | 0 | 0 |
| 52 | Elten & Tudderden | GFR | Netherlands | 195505 | 196302 | 4 | 0 | 2 | 0 | 0 |
| 53 | Essequibo | Venezuela | UK | 184101 | 189910 | 3 | 2 | 13 | 1 | 0 |
| 54 | Essequibo | Venezuela | UK | 195100 | 196604 | 5 | 0 | 4 | 0 | 1 |
| 55 | Essequibo | Venezuela | Guyana | 196604 | 200199 | | 7 | 16 | 0 | 6 |
| 56 | Eupen & Malmedy | Belgium | Germany | 191706 | 191908 | 3 | 0 | 1 | 0 | 1 |
| 57 | Eupen & Malmedy | Germany | Belgium | 191908 | 194005 | 7 | 0 | 4 | 0 | 1 |
| 58 | Falkland Is. & Dependencies | Argentina | UK | 184101 | 200199 | | 4 | 55 | 0 | 20 |
| 59 | Finland | Sweden | Russia | 185407 | 185603 | 1 | 0 | 0 | 0 | 0 |
| 60 | Finnmark/ Varangerfjord | Russia | Sweden | 185106 | 185511 | 1 | 0 | 1 | 0 | 0 |
| 61 | Florida | USA | Spain | 181601 | 182102 | 4 | 1 | 3 | 0 | 1 |
| 62 | Fort Ross | Spain | Russia | 181601 | 182109 | 5 | 0 | 7 | 0 | 0 |
| 63 | Fort Ross | Mexico | Russia | 183101 | 184112 | 8 | 0 | 2 | 0 | 0 |
| 64 | Galapagos Islands | USA | Ecuador | 185409 | 185501 | 2 | 0 | 1 | 0 | 0 |
| 65 | Galapagos Islands | USA | Ecuador | 189208 | 190601 | 2 | 0 | 4 | 0 | 0 |
| 66 | German Reunification | GFR | GDR | 195505 | 197212 | 3 | 0 | 3 | 0 | 1 |
| 67 | Germersheim Frontage | bavaria | Baden | 183810 | 184004 | 1 | 0 | 2 | 0 | 1 |
| 68 | Gibraltar | Spain | UK | 181601 | 200199 | | 3 | 29 | 0 | 1 |
| 69 | Goajira | Venezuela | Colombia | 184101 | 192203 | 3 | 1 | 18 | 3 | 0 |
| 70 | Graham Island (Ferdinandea) | Two Sicilies | UK | 183108 | 183112 | 11 | 0 | 0 | 0 | 0 |
| 71 | Guantanamo Bay | Cuba | USA | 196009 | 200199 | | 0 | 0 | 0 | 0 |

| | name | chal | tgt | begclaim | endclaim | resolved | mids/iss | attempts | att3bind | att3ron |
|----|-------------------------------|--------------|-------------------|----------|----------|----------|----------|----------|----------|---------|
| 72 | Gulf of Fonseca Islands | El Salvador | Honduras | 189901 | 199209 | 3 | 1 | 4 | 1 | 2 |
| 73 | Hans Island | Canada | Denmark | 197101 | 200199 | | 0 | 1 | 0 | 0 |
| 74 | Heligoland (Helgoland) | Germany | UK | 188401 | 189007 | 4 | 0 | 4 | 0 | 0 |
| 75 | Hohenzollern | Wuerttemberg | Germany | 187011 | 187011 | 1 | 0 | 1 | 0 | 0 |
| 76 | Homburg-Upper Hesse | Germany | Hesse Grand Ducal | 186607 | 186609 | 4 | 0 | 1 | 0 | 0 |
| 77 | Isla de Pinos (Isle of Pines) | USA | Cuba | 190901 | 192503 | 4 | 0 | 0 | 0 | 0 |
| 78 | Jurad | USA | Colombia | 190103 | 190311 | 5 | 0 | 1 | 0 | 0 |
| 79 | Jussy | Switzerland | Italy | 181601 | 181603 | 4 | 0 | 1 | 0 | 0 |
| 80 | Karelia & Petsamo | Finland | Russia | 191804 | 192010 | 4 | 1 | 3 | 0 | 1 |
| 81 | Karelia & Petsamo | Russia | Finland | 193808 | 194003 | 3 | 1 | 4 | 0 | 1 |
| 82 | Karelia & Petsamo | Finland | Russia | 194105 | 194409 | 1 | 1 | 0 | 0 | 0 |
| 83 | Karelia & Petsamo | Russia | Finland | 194112 | 194409 | 4 | 1 | 3 | 0 | 2 |
| 84 | Karelia & Petsamo | Finland | Russia | 194509 | 194702 | 3 | 0 | 2 | 0 | 1 |
| 85 | Kulmbach-Gersfeld-Orb | Germany | Bavaria | 186607 | 186608 | 4 | 0 | 1 | 0 | 0 |
| 86 | Labrador | Canada | UK | 192001 | 192703 | 3 | 0 | 2 | 1 | 0 |
| 87 | Leipzig-Bautzen | Germany | Saxony | 186607 | 186608 | 1 | 0 | 1 | 0 | 1 |
| 88 | Leticia | Peru | Colombia | 193209 | 193509 | 3 | 2 | 4 | 0 | 4 |
| 89 | Limburg | Netherland | Belgium | 183012 | 183904 | 3 | 2 | 9 | 0 | 9 |
| 90 | Limburg & Zeeland Flanders | Belgium | Netherlands | 191812 | 192008 | 1 | 0 | 4 | 0 | 4 |
| 91 | Lombardy-Venetia | Italy | Austria-Hungary | 184803 | 186610 | 7 | 3 | 7 | 0 | 4 |
| 92 | Loreto | Peru | Colombia | 183901 | 192203 | 4 | 5 | 12 | 0 | 1 |
| 93 | Los Andes | Chile | Argentina | 189604 | 190405 | 3 | 1 | 3 | 1 | 0 |

| | name | chal | tgt | begclaim | endclaim | resolved | midsiss | attempts | at3bind | at3non |
|-----|--------------------------------|---------------------|-------------|----------|----------|----------|---------|----------|---------|--------|
| 94 | Los Monjes | Columbia | Venezuela | 195104 | 200199 | | 3 | 16 | 0 | 1 |
| 95 | Los Roques | Netherland | Venezuela | 185000 | 185604 | 1 | 0 | 1 | 0 | 0 |
| 96 | Luxembourg | Netherland | Belgium | 183012 | 183904 | 3 | 0 | 9 | 0 | 9 |
| 97 | Luxembourg | France | Netherlands | 186607 | 186705 | 3 | 0 | 3 | 0 | 3 |
| 98 | Machias Seal Island | USA | Canada | 197108 | 200199 | | 0 | 0 | 0 | 0 |
| 99 | Mangles (Corn) Islands | Columbia | Nicaragua | 190001 | 192803 | 4 | 0 | 2 | 0 | 0 |
| 100 | Mangles (Corn) Islands | Nicaragua | USA | 196501 | 197102 | 4 | 0 | 2 | 0 | 0 |
| 101 | Maroni | Netherland | France | 184900 | 197511 | 5 | 0 | 6 | 1 | 0 |
| 102 | Maroni | Suriname | France | 197511 | 200199 | | 0 | 1 | 0 | 0 |
| 103 | Mesilla Valley | USA | Mexico | 185012 | 185406 | 4 | 1 | 2 | 0 | 0 |
| 104 | Misiones | Argentina | Brazil | 184101 | 189510 | 3 | 1 | 9 | 1 | 0 |
| 105 | Modena | Italy | Modena | 184803 | 186003 | 10 | 0 | 0 | 0 | 0 |
| 106 | Mole St. Nicholas | USA | Haiti | 188903 | 191507 | 1 | 1 | 5 | 0 | 0 |
| 107 | Morteritos & Sabinos | St. Kitts and Nevis | USA | 188400 | 188400 | 2 | 0 | 1 | 0 | 0 |
| 108 | Mosquito Coast | Columbia | UK | 183101 | 186008 | 9 | 0 | 0 | 0 | 0 |
| 109 | Mosquito Coast | Columbia | Nicaragua | 190001 | 192803 | 4 | 0 | 2 | 0 | 0 |
| 110 | Navassa Island | Haiti | USA | 185901 | 191412 | 6 | 0 | 1 | 0 | 0 |
| 111 | Navassa Island | Haiti | USA | 193501 | 200199 | | 0 | 0 | 0 | 0 |
| 112 | Neuchatel | Switzerland | Germany | 184803 | 185705 | 3 | 1 | 3 | 0 | 3 |
| 113 | Neutral Moresnet (Altenberg) | Germany | Belgium | 184101 | 191906 | 3 | 0 | 6 | 0 | 1 |
| 114 | Nicaragua Canal | USA | Nicaragua | 190001 | 191606 | 4 | 0 | 4 | 0 | 0 |
| 115 | North Schleswig (Nord Slesvig) | Denmark | Germany | 191901 | 192004 | 10 | 0 | 1 | 0 | 1 |
| 116 | Northern Ireland | Ireland | UK | 192212 | 199805 | 3 | 0 | 37 | 0 | 2 |
| 117 | Oregon Country | USA | UK | 181601 | 184607 | 4 | 1 | 8 | 0 | 0 |
| 118 | Oregon Country | USA | Spain | 181601 | 182102 | 4 | 0 | 2 | 0 | 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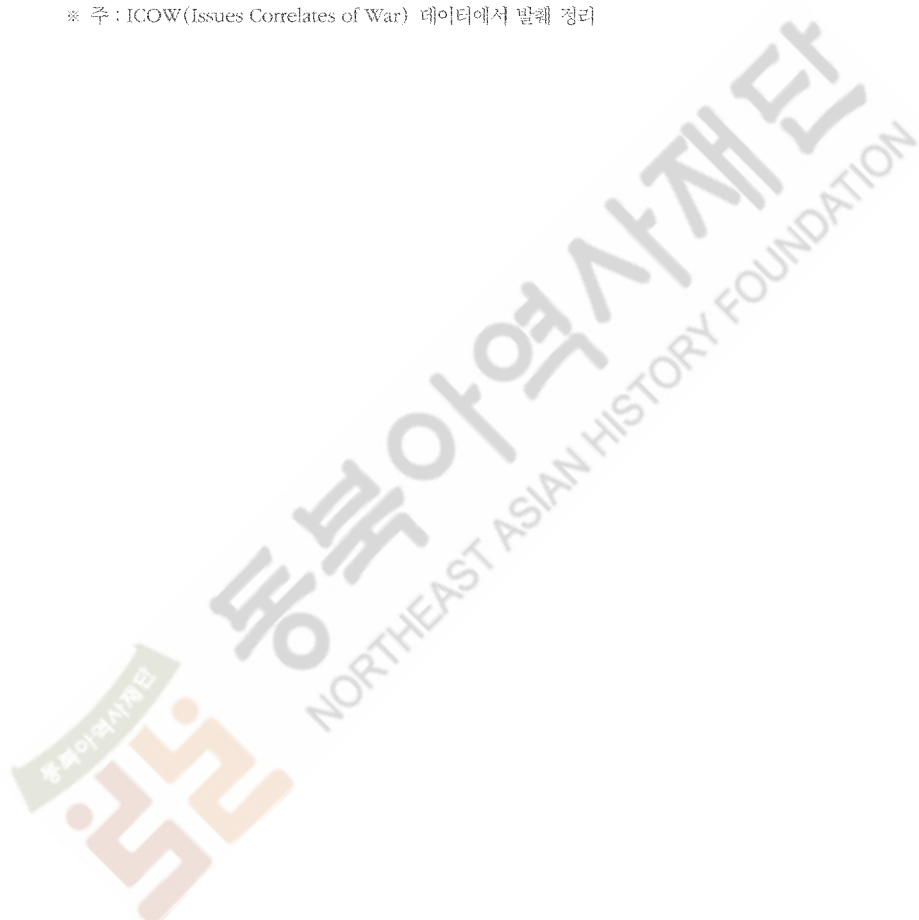
| | name | chal | tgt | begclaim | endclaim | resolved | mids/sss | attempts/p | att3/bind | att3/ron |
|-----|-------------------------------------|-----------|--------------|----------|----------|----------|----------|------------|-----------|----------|
| 119 | Oregon Country | Spain | UK | 181601 | 182102 | 2 | 0 | 0 | 0 | 0 |
| 120 | Oriente-Aguarico | Ecuador | Colombia | 185401 | 191907 | 4 | 1 | 11 | 0 | 1 |
| 121 | Oriente-Mainas | Ecuador | Peru | 185401 | 194503 | 7 | 16 | 17 | 2 | 4 |
| 122 | Palena/Continental Glaciers | Chile | Argentina | 190301 | 199812 | 4 | 0 | 10 | 3 | 0 |
| 123 | Papal States | Italy | Papal States | 185805 | 186010 | 7 | 1 | 0 | 0 | 0 |
| 124 | Parma | Italy | Parma | 184803 | 186003 | 10 | 0 | 0 | 0 | 0 |
| 125 | Passamaquoddy Bay | St. Lucia | UK | 181601 | 181711 | 4 | 0 | 1 | 1 | 0 |
| 126 | Patagonia | Chile | Argentina | 184101 | 190301 | 3 | 8 | 12 | 1 | 2 |
| 127 | Patos Island | Venezuela | UK | 185905 | 194202 | 4 | 1 | 2 | 0 | 0 |
| 128 | Pirara | Brazil | UK | 183808 | 192604 | 3 | 3 | 9 | 1 | 0 |
| 129 | Prussian Rheinprovinz | France | Germany | 184911 | 187105 | 1 | 1 | 2 | 0 | 0 |
| 130 | Puna de Atacama | Argentina | Bolivia | 184801 | 194102 | 4 | 1 | 11 | 0 | 0 |
| 131 | Quita Sueno- Roncador-Serrana | Columbia | USA | 189012 | 197209 | 4 | 0 | 2 | 0 | 0 |
| 132 | Quita Sueno- Roncador-Serrana | Nicaragua | USA | 190001 | 192803 | 1 | 0 | 0 | 0 | 0 |
| 133 | Quita Sueno- Roncador-Serrana | Nicaragua | Colombia | 190001 | 192803 | 4 | 0 | 1 | 0 | 0 |
| 134 | Quita Sueno- Roncador-Serrana | Nicaragua | Colombia | 197912 | 200199 | | 0 | 0 | 0 | 0 |
| 135 | Quita Sueno- Roncador-Serrana | Honduras | USA | 189901 | 192804 | 1 | 0 | 0 | 0 | 0 |
| 136 | Quita Sueno- Roncador-Serrana | Honduras | Colombia | 189901 | 192804 | 1 | 0 | 0 | 0 | 0 |
| 137 | Ranguana & Sapodilla (Zapotillo) | Guatemala | UK | 198103 | 198109 | 5 | 0 | 2 | 0 | 1 |
| 138 | Ranguana & Sapodilla (Zapotillo) | Guatemala | Belize | 198109 | 200199 | | 0 | 7 | 0 | 5 |
| 139 | Ranguana & Sapodilla (Zapotillo) | Honduras | UK | 198103 | 198109 | 5 | 0 | 0 | 0 | 0 |

| | name | chal | tgt | begclaim | endclaim | resolved | midssiss | attempts | at3bind | at3non |
|-----|----------------------------------|---------------------|-------------------------|----------|----------|----------|----------|----------|---------|--------|
| 140 | Ranguana & Sapodilla (Zapotillo) | Honduras | Belize | 198109 | 200199 | | 0 | 2 | 0 | 0 |
| 141 | Ranguana & Sapodilla (Zapotillo) | Honduras | Guatemala | 198109 | 200199 | | 0 | 0 | 0 | 0 |
| 142 | Rheinessen | France | Hesse Grand Ducal | 184911 | 187105 | 1 | 0 | 0 | 0 | 0 |
| 143 | Rio de La Plata | Argentina | Uruguay | 188201 | 197312 | 4 | 3 | 10 | 0 | 0 |
| 144 | Rio Grande Bancos | Mexico | USA | 188411 | 197200 | 4 | 0 | 7 | 0 | 0 |
| 145 | Rio Hondo | Mexico | UK | 183101 | 189704 | 4 | 0 | 5 | 0 | 0 |
| 146 | Rio Massacre | Haiti | Dominican Republic | 189401 | 191507 | 6 | 1 | 5 | 0 | 1 |
| 147 | Rio Massacre | Haiti | Dominican Republic | 193408 | 193502 | 4 | 0 | 1 | 0 | 0 |
| 148 | Rio Motagua | Honduras | Guatemala | 189901 | 193301 | 3 | 2 | 15 | 1 | 7 |
| 149 | Rio Paraguay Islands | Paraguay | Brazil | 187411 | 192910 | 4 | 1 | 1 | 0 | 0 |
| 150 | Rio Sixaola y Rio Coto | Costa Rica | Panama | 192001 | 194105 | 4 | 1 | 5 | 0 | 2 |
| 151 | Saar (Sarre) | France | Germany | 191701 | 192001 | 7 | 0 | 1 | 0 | 1 |
| 152 | Saar (Sarre) | Germany | France | 192001 | 193502 | 10 | 0 | 12 | 0 | 6 |
| 153 | Saar (Sarre) | GFR | France | 195505 | 195701 | 10 | 0 | 2 | 0 | 0 |
| 154 | Salzburg | Austria- Hungary | Bavaria | 181601 | 181604 | 4 | 0 | 1 | 0 | 0 |
| 155 | Samana Bay | USA | Dominican Republic | 189401 | 190404 | 1 | 0 | 1 | 0 | 0 |
| 156 | San Andres y Providencia | Nicaragua | Colombia | 190001 | 193005 | 4 | 1 | 2 | 0 | 0 |
| 157 | San Andres y Providencia | Nicaragua | Colombia | 197912 | 200199 | | 3 | 2 | 0 | 0 |
| 158 | San Juan Islands | USA | UK | 184607 | 187210 | 3 | 0 | 6 | 1 | 0 |
| 159 | Savoy & Nice | France | Italy | 184803 | 186003 | 4 | 0 | 2 | 0 | 0 |
| 160 | Savoy & Nice | Italy | France | 193811 | 194307 | 1 | 0 | 1 | 0 | 1 |

| | name | chal | tgt | begclaim | endclaim | resolved | mids/iss | attempts | att3bind | att3ron |
|-----|--------------------------------------|-------------|---------------------|----------|----------|----------|----------|----------|----------|---------|
| 161 | Schleswig-Holstein | Germany | Denmark | 186401 | 186410 | 7 | 1 | 2 | 0 | 2 |
| 162 | Schleswig-Holstein Hungary | Germany | Austria- Hungary | 186411 | 186608 | 4 | 1 | 6 | 0 | 1 |
| 163 | Serranilla Bank & Bajo Nuevo | Honduras | Colombia | 198201 | 198608 | 4 | 0 | 2 | 0 | 0 |
| 164 | Spitsbergen (Svalbard) | Russia | Norway | 194505 | 194702 | 1 | 0 | 1 | 0 | 0 |
| 165 | St. Croix Rivers | USA | UK | 181601 | 184210 | 4 | 1 | 5 | 2 | 0 |
| 166 | Sverdrup Islands | Canada | Norway | 192201 | 193008 | 4 | 0 | 1 | 0 | 0 |
| 167 | Swan Islands | Honduras | USA | 192105 | 197209 | 4 | 0 | 3 | 0 | 0 |
| 168 | Tacna-Arica | Chile | Peru | 187904 | 188403 | 7 | 2 | 3 | 0 | 2 |
| 169 | Tacna-Arica | Peru | Chile | 188403 | 192906 | 3 | 3 | 19 | 1 | 7 |
| 170 | Tacna-Arica | Bolivia | Peru | 188312 | 193609 | 4 | 0 | 4 | 0 | 1 |
| 171 | Teotecacinte | Nicaragua | Honduras | 190001 | 190612 | 3 | 0 | 3 | 1 | 0 |
| 172 | Teotecacinte | Nicaragua | Honduras | 191203 | 196108 | 3 | 2 | 12 | 3 | 7 |
| 173 | Texas | USA | Spain | 181601 | 182102 | 4 | 0 | 3 | 0 | 0 |
| 174 | Texas | USA | Mexico | 183101 | 184805 | 4 | 2 | 7 | 0 | 0 |
| 175 | Treaty Ports | Ireland | UK | 192704 | 193804 | 4 | 0 | 5 | 0 | 0 |
| 176 | Trentino-Alto Adige (South Tyrol) | Italy | Austria- Hungary | 186606 | 191909 | 3 | 1 | 6 | 0 | 6 |
| 177 | Trindade Island | Brazil | UK | 182601 | 189612 | 3 | 1 | 2 | 0 | 1 |
| 178 | Tumuc-Humac | Brazil | Netherlands | 185200 | 190605 | 4 | 0 | 2 | 0 | 0 |
| 179 | Upper Savoy (Haute Savoie) | Switzerland | Italy | 185906 | 186003 | 11 | 0 | 0 | 0 | 0 |
| 180 | Upper Savoy (Haute Savoie) | Switzerland | France | 186003 | 186012 | 1 | 0 | 0 | 0 | 0 |
| 181 | Val d'Aosta-Briga-Tenda | France | Italy | 194504 | 194702 | 3 | 0 | 2 | 0 | 1 |
| 182 | Vallee des Dappes | France | Switzerland | 181601 | 186212 | 4 | 0 | 1 | 0 | 0 |
| 183 | Virgin Islands | USA | Denmark | 186501 | 191703 | 4 | 0 | 4 | 0 | 0 |
| 184 | West Berlin | Russia | USA | 194803 | 197109 | 3 | 4 | 11 | 0 | 7 |
| 185 | West Berlin | GDR | Germany | 195805 | 197212 | 3 | 2 | 3 | 0 | 1 |

| | name | chal | tgt | begclaim | endclaim | resolved | midsiss | attemptsp | at3bind | at3non |
|-----|----------------|---------|--------|----------|----------|----------|---------|-----------|---------|--------|
| 186 | Wrangel Island | Canada | USA | 192205 | 192407 | 2 | 0 | 0 | 0 | 0 |
| 187 | Wrangel Island | Canada | Russia | 192205 | 192407 | 2 | 0 | 0 | 0 | 0 |
| 188 | Yaguaron | Uruguay | Brazil | 188201 | 200199 | | 0 | 4 | 0 | 0 |

※ 주 : ICOW(Issues Correlates of War) 데이터에서 발췌 정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세계의 영토분쟁 DB와 식민침탈 사례

초판 제1쇄 인쇄 2008년 3월 28일
초판 제1쇄 발행 2008년 4월 4일

지 음 배진수, 윤지훈
펴낸이 김용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 록 제 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전 화 02-2012-6065
팩 스 02-2012-6175
e-mail book@historyfoundation.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08

ISBN 978-89-6187-037-5 93980

-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